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 구현을 위한
「새 천년 국가환경비전」 추진계획

2001. 2

환 경 부

《 추진경위 》

- '99. 7월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는 연구단(5개 분과)을 구성,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수립에 착수
 - 2000. 4월 연구단에서 비전(안)을 마련, 10여 차례의 공청회,
토론회 및 국제세미나 등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비전 확정

- 2000 환경의 날(6. 5)에 대통령께서 「새 천년 국가환경
비전」을 선언
 -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기반
으로 새 천년에 걸맞는 선진 환경정책 패러다임(Paradigm) 제시
 - * 경제 5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계 환경경영헌장',
시민·환경단체의 '민간환경선언 2000'도 함께 발표

- 「새 천년 국가환경비전」을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계획을 마련
 - * 국가환경비전 추진계획은 '국민의 정부 제2기 국정운영과제'로
확정·추진 중

◆ 목 차 ◆

I.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추진계획의 의의

II. 환경관리 여건 및 전망

1. 국내적 여건 및 전망
2. 국제적 여건 및 전망
3. 분야별 환경문제

III. 국가환경비전의 목표 및 기본원칙

1. 국가환경비전의 체계
2. 목표 및 기본원칙

IV.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1. 환경윤리 정착 및 환경교육 강화
2. 경제·산업의 녹색화
3. 환경친화적·계획적인 국토관리
4. 기초생활환경 개선기반 확립
5. 환경과학기술의 발전
6. 지구환경보전에 적극 참여
7. 녹색정부체계의 구현

V. 부문별 단위사업 실행계획

1. 환경윤리 정착 및 환경교육 강화

1-1 환경윤리정착

1-2 시민참여에 의한 환경공동체 구현

1-3 평생 환경교육제도의 확립

2. 경제·산업의 녹색화

2-1 산업활동의 환경친화성 제고

2-2 환경친화적 가격 및 조세체계 확립

2-3 자원 수요관리 강화

2-4 환경규제의 합리화 및 선진화

3. 환경친화적·계획적인 국토관리

3-1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한 제도정비

3-2 지역별 자연생태 특성을 고려한 환경관리

3-3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현

3-4 연안역 환경관리체계 강화

4. 기초생활환경 개선기반 확립

4-1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4-2 깨끗한 공기질 확보

4-3 폐기물 발생억제를 통한 감량화

4-4 환경인프라의 정비·확충

4-5 환경기준 및 제도의 정비

5. 환경과학기술의 발전

5-1 환경과학기술의 육성

5-2 과학기술의 환경위해성 관리

6. 지구환경보전에 적극 참여

6-1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6-2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7. 녹색정부체계의 구현

7-1 국가 환경정책운영체계의 혁신

7-2 환경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추진

1. 새 천년 국가환경비전 추진계획의 의의

I.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추진계획의 의의

-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새 천년 국가환경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정부적 추진방안
 -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生命共同體)’ 구현이라는 「새 천년 국가환경비전」 목표를 사회 전 분야에 정착
 - 생명존중(生命尊重) 이념을 토대로 자원순환형(資源循環型) 사회·경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기업·시민사회의 실천과제 제시

-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기반 조성
 - 「생산적 복지사회(生產的 福祉社會)」 이념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대책 제시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원칙 하에서 각종 정책을 추진

-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환경규제 대응전략 마련
 - 기후변화(氣候變化), 오존층(Ozone-layer) 파괴 등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
 - 국제환경협약 및 무역·환경 연계 등 국제적 환경규제동향에 대한 적극적 대응전략 마련

II . 환경관리 여건 및 전망

Ⅱ. 환경관리 여건 및 전망

1. 국내적 여건 및 전망

▣ 우리나라는 국토, 인구, 지형, 강우형태 등 기본적 여건이 열악하여 환경관리에 어려움

- 좁은 국토에 과다한 인구를 부양하고 있으며 특히 총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首都圈) 및 6대 도시에 집중되어 도시 환경관리에 애로
- 전 국토의 2/3가 산지이며, 연간 강우량의 2/3가 하절기에 편중되어 환경압박요인으로 작용
-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대기 및 수질오염, 폐기물 문제 등 각종 환경문제 심화

※ 국토의 단위면적당 아황산가스(SO₂) 배출량이 OECD 국가 중 1위이고, 폐기물 배출량은 OECD 평균의 1.4 ~ 9배임

▣ 민주화·지방화의 진전과 함께 국민의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 및 분쟁 심화

- 소득과 여가 증대로 수질·대기 등 생활 환경질의 개선, 녹지공간(綠地空間) 확대, 생태계 보전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 증대
-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NIMBY 현상, 상하류 지역간 물이용 문제 등 환경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첨예화

2. 국제적 여건 및 전망

■ 기후변화(氣候變化), 생물종 감소 등 지구환경문제 심화

-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개발 및 자원이용으로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생물종 감소, 자원고갈 등 지구적 환경문제 야기

— < 주요사례 > —

- 화석연료 사용증대로 지구온난화 및 해수면 상승
(CO₂ 농도 '80년대 초 280ppm → '90년 363ppm)
- 최근 10년간 남극 상공의 오존층 50% 이상이 파괴
(남한 전체면적의 320배)
- 열대림 파괴, 사막화 등으로 생물종 다양성 급감
(식물 242천종의 14%, 포유류 4.4천종의 11%가 멸종위기)

■ 국제 환경규제를 통한 지구환경 보전의 필요성 제기

- 기후변화협약('97년 교토의정서), 바이오안정성의정서 등 국제 환경협약을 통한 선진국의 환경보호 압력 가중
-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환경 연계논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환경경영기준 등 국제적 환경규제기준 강화추세

■ 산성비 등 동북아권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접국가 및 남북한간 환경협력의 필요성 증대

- 중국, 몽고 등의 경제개발에 따라 산성비, 황해오염 등 동북아 지역의 월경(越境) 오염문제 심화
- 남북관계(南北關係) 개선에 따른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 추세에 따라 환경협력사업의 병행추진 필요

3. 분야별 환경문제 추세

▣ 자원고갈 및 에너지 위기 심화

- 자원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자원 부족 심화로 대체 에너지 개발,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 에너지의 통합관리(統合管理) 필요
- 특히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량 확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급증을 막기 위하여 친환경적 교통(交通)대책의 마련 시급

▣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

- 기후변화, 산림파괴 등에 따른 기상이변 및 자연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농업(環境農業), 생태관광(生態觀光), 산림(山林) 보호 등 적극적인 생태계 보전시책 요구
- 생물종(生物種) 다양성의 감소,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확산, 외래종(外來種) 유입 등 자연 생태계 위협요인 확대

▣ 생활환경 오염

- 저황유 보급확대 등으로 이산화황(SO₂), 일산화탄소(CO) 오염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차량 보급확대로 인한 질소산화물(NO_x), 오존(O₃),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농도는 증가추세
- 인구 및 산업활동 증가로 오·폐수량이 증가하고 물 사용량 증가로 수자원 부족 우려 및 지하수(地下水) 오염문제 심화
- 대량생산·대량소비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신기술 발전으로 생태계 교란물질(攪亂物質) 등 유해화학물질 확산

< 분야별 오염물질 배출전망(예시) >

구 분	1996	1998	2002
NO _x 배출량(천톤/년)	1,153	1,258	1,499
오·폐수 배출량(만m ³ /일)	1,977	2,244	2,377
폐기물 발생량(천톤/일)	300	268	330

Ⅲ. 국가환경비전의 목표 및 기본원칙

Ⅲ. 국가환경비전의 목표 및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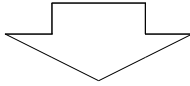
1. 국가환경비전의 체계

비전 목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친환경적인 여건을 정착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生命共同體)’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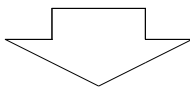
< 4대 기본원칙 >

1. 사후처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2.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환경행정
3.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운영
4.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공동노력



7대 정책부문

1. 환경윤리 정착 및 환경교육 강화
2. 경제·산업 부문의 녹색화
3. 환경친화적·계획적인 국토관리
4. 기초생활환경 개선기반 확립
5. 환경과학기술의 발전
6. 지구환경보전에 적극 참여
7. 녹색정부체계의 구현



실천계획

7대 분야 22개 중점추진과제(80개 단위사업)

2. 국가환경비전의 목표 및 기본원칙

□ 비전 목표 :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

-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自然)을 가꾸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의 혜택을 두루 누리는 「환경친화적 복지사회(環境親和的福祉社會)」 건설

□ 4대 기본원칙

- 사후처리에서 사전예방(事前豫防) 중심으로 전환
 - 각종 정책 및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事前評價)하여 그 시행여부 및 방법을 결정하는 「선 계획 - 후 개발」 원칙 정립
- 시장경제(市場經濟)와 민주주의(民主主義)에 입각한 환경행정
 - 시장원리(市場原理)에 의한 효율적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 및 보전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責任)과 보상(補償)을 적용
- 환경정책(環境政策)과 경제정책(經濟政策)의 통합운영
 - 국토 이용 및 산업 입지 등 국가의 정책과 계획에 환경요인이 사전 고려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 조화·연계
- 지구환경(地球環境) 보전을 위한 공동노력
 - 지구촌(地球村)의 구성원으로서 기후변화(氣候變化) 등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동참, 지구환경 보전 및 국가 위상 제고 도모

Ⅳ. 부문별 중점추진과제

IV.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1. 환경윤리 정착 및 환경교육 강화

- ◇ 환경위기의 근원인 인간중심적 환경관에서 탈피하여, 모든 사람이 환경권(環境權)을 향유하고 인간과 자연이 화해·공존하는 환경윤리 정착
- ◇ 시민 주도의 환경운동(環境運動)을 활성화하고 평생 환경교육(平生 環境教育) 제도를 확립

1-1 환경윤리(環境倫理) 정착

1-1-1 자연·생명존중의 환경윤리 정착

- 산업사회를 지배해 온 인간중심주의, 물질중심주의 세계관을 극복하고 자연환경 및 국토보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가치관 확립
- 생명존중의 환경윤리 정착
 - 야생생태계 서식지 보호, 야생 동식물의 불법 포획·채취 및 밀거래 근절 등 근본적인 생태계과피 방지대책 마련

1-1-2 환경정의(環境正義)의 구현

- 환경오염 방지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염자 부담원칙(汚染者 負擔原則)」을 확립하고 동시에 특별한 환경편익에 대하여는 수익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확대

- 「환경피해 책임보험 제도」 도입, 피해자의 환경정보청구권, 환경피해의 인과관계 입증기법 개발 등 환경피해 보상 확대 방안을 제도화하여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 강화
 - 환경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와 환경피해 유형별 인과관계 규명, 배상액 산정기법 개발 등을 통한 분쟁조정·알선기능 강화

1-2 시민 참여에 의한 환경공동체(環境共同體) 구축

1-2-1 환경행정의 투명성(透明性) 제고

- 오염 측정(測定) 자료, 환경산업 및 기술정보 등에 관한 환경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의 신속공개 및 교환체계 마련
- 깨끗한 공기 확보, 맑은 물 공급,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등 환경정책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환경행정 정보체계 구축

1-2-2 시민 참여의 환경운동(環境運動) 활성화

- 재활용제품 등 환경친화적 제품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 소비운동」 및 「녹색 생산자조합운동」 활성화
- '92년 리우선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제(地方議題) 21 실천계획을 내실화,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환경운동 활성화
 - ※ 2000년말 현재 177개 자치단체(광역 16개 포함)에서 지방의제 수립 추진
- 생태적으로 가치있는 지역을 매입·보전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National Trust)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강구
 - ※ 우리나라는 '99년부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서 추진중인 「무등산 땅 한평 사기 시민운동」 등이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의 대표적 사례임

1-2-3 민간단체의 환경운동(環境運動) 지원

- 지속가능발전위원회(持續可能發展委員會) 등 정부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정책결정에 민간참여 활성화
- 시민단체 관계자의 전문성(專門性) 제고를 위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시민단체에 대한 사업지원 방안 강구

1-3 평생 환경교육제도(平生 環境教育制度)의 확립

1-3-1 학교(學校) 환경교육의 내실화

- 초·중·고교 교과서(教科書)에 환경보전 관련 내용의 편성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환경 과목(環境科目) 선택학교 확대 추진
 - 각급 학교에 환경 전공교사(專攻教師) 임용 확대방안 강구
- 현장교육(現場教育)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 학교,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체험환경교육(體驗環境教育) 프로그램을 확대·내실화

1-3-2 사회(社會) 환경교육의 확대

- 교육대상 및 분야별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 교육 전문기관 육성방안 강구
 - 운영중인 민간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하고 환경교육 전문가 및 교육자료 지원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환경교육협의회(地域環境教育協議會)」를 구성하고, 사이버(Cyber) 환경교육을 강화
- 민간단체의 환경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協力體系) 구축 지원

2. 경제·산업(經濟·産業)의 녹색화

- ◇ 산업화 진전에 따른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저(低) 환경비용-고(高) 생산효율’의 자원순환형 경제구조로
개편할 필요
- ◇ 산업 분야별로 환경친화적 경영체계를 확대하고, 효율적
자원관리방안 강화

2-1 산업활동의 환경친화성 제고

2-1-1 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체계 정착·발전

- 비용 절감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환경회계(環境會計) 도입, 친환경적 설계(DfE) 및 전과정
평가(LCA) 등 환경친화적 경영체계 확립

2-1-2 산업계 자율환경관리의 확대

- 정부와 기업간 파트너십을 토대로 오염물질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자율환경관리제(自律環境管理制) 확대
- 「환경 홈닥터(Home doctor)제」를 도입, 사전오염 예방을
위한 생산공정 개선 및 오염방지기술 지원 등 협력체계 강화

2-1-3 환경친화적 영농체계 구축

-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저감, 축산분뇨의 퇴비화 촉진, 유기
농법의 확산 등 환경농업(環境農業) 활성화
- 집단·대형 유리온실의 표준화 등을 통한 사계절 수경농업
(水耕農業) 중점 육성

2-2 환경친화적 가격·조세체계 확립

2-2-1 환경친화적 자원 가격체계 구축

- 자원수급 및 환경관리에 영향이 큰 수자원, 에너지 등의 자원에 대한 가격의 단계적인 현실화
 - ※ “자원가격 현실화(現實化)”란 자원 사용으로 인한 오염정화 및 재사용 등을 위한 비용을 자원 가격에 내재화(內在化)하는 것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

2-2-2 환경친화적 조세제도 도입 및 오염유발형 보조금 폐지

-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현행 환경관련 부담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세(環境稅) 도입 검토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세체계를 정비
- 환경오염 유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보조금(補助金)을 단계적으로 감축·폐지 또는 개선
 - ※ 에너지 보조금, 농업보조금 등 검토

2-3 자원 수요관리(資源 需要管理) 강화

2-3-1 물 수요관리 시책의 강화

- 노후 수도관(水道管)을 전면 정비하여 현재 18%에 이르는 수돗물 누수율(漏水率)을 2010년까지 10% 이하로 개선
-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上水道 料金)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누진수도요금제(累進水道料金制) 실시
- 절수기기(節水器機) 설치를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중수도 시설(中水道 施設) 설치를 의무화

2-3-2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 고효율 에너지 사용기기 보급, 대체 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기반 조성
- ※ 에너지는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에너지 수요 관리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 도모

2-3-3 폐기물의 자원화

- 재활용산업(再活用産業)에 대한 세제, 금융 및 기술지원을 확대하여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 재활용제품(再活用製品)의 수요 확대를 위하여 폐자원 이용율 제고, 재활용제품 우선구매(優先購買) 확대 및 다량배출폐기물(건설폐재, 유기성폐기물 등)의 재활용기술 개발 추진
 - 폐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교환이용과 생산기술 보급·확대를 위한 「재활용정보시스템」 구축

2-4 환경규제(環境規制)의 합리화 및 선진화

2-4-1 환경규제체계의 합리적 개선

- 불합리한 환경규제절차 및 기준을 개선·보완
 - 기업의 자율성(自律性)을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不便)을 초래하는 실효성이 적은 규제부터 단계적으로 개선

2-4-2 환경규제의 선진화

- 환경질 유지를 위하여 환경규제기준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되, 민간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수단 강구
 - 직접규제(直接規制) 외에 경제적 수단과 자율환경 관리방안을 확대하고, 기술지도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기업 환경관리 지원

3. 환경친화적 · 계획적인 국토관리(國土管理)

- ◇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급증하는 국토개발 수요에 대하여 양적 팽창중심으로 대응함으로써 국토훼손 및 환경질이 악화
- ◇ 쾌적한 삶의 질을 확보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 계획-후 개발」 원칙에 의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체계의 확립

3-1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3-1-1 국토환경관리 기조(基調)의 재정립

-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의 수립·시행시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국토관련법령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
- 국토환경 및 자연생태계의 현황조사 등을 통한 국토보전 시책과 국토종합계획(제4차) 등을 토대로 환경과 개발이 통합된 국토관리체계 확립

3-1-2 자연환경(自然環境) 보전을 위한 제도 정비

- 국내 자연환경현황 및 여건 분석, 식생·생태계 조사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대책 마련
 -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추진
- 2003년까지 전 국토를 생태적 가치에 따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를 작성, 자연친화적 국토이용의 과학적 기반 마련
- 「국립공원 관리기본계획(Parks Korea 21)」에 따라 보전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國立公園)의 자연친화적 이용 및 관리체계 확립

3-1-3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대책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국립공원」, 「특정도서」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 지정확대 및 관리방안 강구
- 도시지역 소생태계(Biotop) 조성 등 훼손된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 추진
- 동강(東江)댐 건설 백지화에 따라 동강댐 주변지역 우수 생태계를 보전하고 「동강 의제 21」 추진
 - 자연환경 및 생태·문화유적지와 지역적 특성을 접목시킨 생태·관광상품을 개발, 자연환경 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1-4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성 검토 강화

- 도시계획, 수자원 개발 등 각종 개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시 사전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방안을 검증하는 사전 환경성 검토제(事前環境性 檢討制) 강화

※ 2000. 8. 17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개정, 개별법에 협의근거가 없는 농공단지 지정 등 10개 행정계획을 사전협의대상에 추가

3-1-5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戰略環境影響評價制度) 확대

- 국토이용, 에너지 수급 등 각종 개발관련 정책 또는 계획 등에 대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SEA :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확대방안 강구

3-2 지역별 자연생태 특성을 고려한 환경관리

3-2-1 도시 토지이용의 생태효율성 제고

-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도시환경(都市環境) 보전
 - 자연지형(自然地形)을 최대한 살리고, 녹지(綠地) 보전 및 경관(景觀)을 고려한 친환경적 도시 조성
 - 도시내 우수지(留水池) 확보와 자연친화형 하천(河川) 정비 및 효율적 우수(雨水) 관리방안 강구
- 불필요한 교통수요 감축을 위하여 직장·학교와 주거지역의 인접 배치, 열병합 발전시설 확대 등 에너지 절약적 토지이용
- 생태산업단지(生態產業團地) 조성
 - 자연생태계 순환법칙을 준용하여 한 공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폐수 등을 다른 공장에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순환형(資源循環型) 생산 협력기반 마련

3-2-2 농지(農地) 및 산림(山林) 보전

- 농지·산림의 보전 및 무분별한 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용 요건을 강화하고 환경성 검토(環境性 檢討)를 내실화
- 농지 및 산지를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개발대상 지역도 경관·수계·동물 서식공간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개발

3-2-3 생태관광(生態觀光)의 활성화

-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생태관광(Eco-tourism) 활성화
 - 국립공원, 갯벌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유적지를 함께 활용하는 환경·문화 연계 관광 활성화
 - 관광지 조성시 친환경적 개발원칙을 정립하고,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체험 환경교육 현장으로 활용

3-3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생태공동체(韓半島 生態共同體) 구현

3-3-1 접경지역(接境地域) 환경보전대책

- 146종의 희귀 동식물을 포함 약 2,8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남북 접경지역(接境地域)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관리대책 수립·시행
 - 75.5%가 산림인 비무장지대의 산림보호와 야생 동식물 보호를 연계한 환경관리대책 추진

3-3-2 백두대간(白頭大干) 복원·관리대책

- 남북 분단으로 단절된 한반도의 대표적인 자연생태지대인 백두대간(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약 1,400Km)의 복원·관리대책 마련
 - 도로건설사업 등으로 단절된 백두대간의 단절 방지대책(야생동물 이동통로 등)을 마련하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 ※ '97년 10월 이후 백두대간을 단절하는 도로 건설사업은 47건임 (진행중인 사업 포함)

3-4 연안역(沿岸域) 환경관리체계 강화

3-4-1 보호지역(保護地域)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

- 연안 생태계의 가치, 연안 주민의 환경권 및 생존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국 연안의 생태벨트(Bio-Belt) 구축 및 보호지역 관리대책 수립
 - 연안 생태계(沿岸 生態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밀 실태조사 실시
- 연안 생태계 보호지역의 지역주민과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연안 생태계 교육·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주도형 연안 환경운동 활성화

3-4-2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수립·추진

- 국토종합계획,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해양개발기본계획 등 각종 국가종합계획과 연계한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추진
 - 내륙지와의 연계기능, 토지개발 수요 분담, 환경용량 등을 고려한 연안역의 계획적 관리
- 연안지역에서의 보전·이용·개발행위시 계획단계부터 환경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연안의 보전과 개발체계 확립

3-4-3 환경친화적인 연안 친수(親水)공간 조성

- 연안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연안친수공간 (Coast-front) 확충
- 해안선 인근 시설물의 환경친화적 정비계획 수립·시행 및 기타 해수교환방과제 실용화기술 개발, 연안 준설토 재활용 방안 등 친환경적 해역관리 방안 강구

4. 기초생활환경(生活環境) 개선기반 확립

◇ 국민들이 느끼는 환경질 개선을 위하여 환경 인프라(Infra)를 구축하고, 환경기준 및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

4-1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4-1-1 전국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의 지속 추진

- 상수원 상·하류 지역간 공영과 협력을 토대로 수변구역·보안림 지정, 오염총량제 및 물이용 부담금제 도입 등 수질오염 예방 및 처리대책을 지속 추진, 주요상수원 수질 개선기반 확립

4-1-2 오염원 관리체계의 확립

- 생활오수 처리시스템 개선, 공장 및 축산폐수 오염원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설확충 등 수질오염원 관리체계 강화

4-2 깨끗한 공기질 확보

4-2-1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 청정한 천연가스시내버스(NGV) 보급 추진, 연료품질개선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등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시책 중점 추진

4-2-2 도시·공단지역의 대기질 중점관리

- 환경기준 초과 우려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중점 관리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오염생성물질 등 오염원 특성에 맞는 지역별 저감대책 추진

4-3 폐기물 발생억제를 통한 감량화

4-3-1 생활폐기물 감량화 기반 확립

- 1회용품 사용규제, 포장폐기물 감량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료화 촉진 등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시책 강화

4-3-2 폐기물 감량·재활용 체계 개선

-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의 단계적 확대·정착, 배출 최소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등 제품 전수명주기(LCA)를 고려한 폐기물 감량·재활용 촉진기반 확립

4-4 환경 인프라(Infra)의 정비·확충

4-4-1 환경기초시설(環境基礎施設)의 확충

- 하·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지역별로 완비하고 광역·지방상수도 시설 확충과 대체 상수원 개발 및 정수시설 선진화를 통해 안전한 먹는 물 공급
- 소각 및 위생매립시설, 재생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및 안전처리

4-4-2 환경오염 측정망(測定網) 정비·내실화

- 대기(소음, 산성비 포함)·수질·토양 등 환경 측정망(測定網)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체계화
- 원격 자동측정망(TMS) 등 환경관리 시스템에 정보화 개념을 도입, 환경질 상시 감시체계 마련

4-5 환경기준 및 제도의 정비

4-5-1 환경기준(環境基準) 및 제도의 선진화

-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기준 등 생활환경 관련 처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

4-5-2 생활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지도·단속(指導·團束) 효율화

- 반공익적 환경사범 근절을 위해 주요 상수원 지역에 「상설 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위반 등에 대한 자발적 감시·보상체계 마련

5. 환경과학기술의 발전

- ◇ 환경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환경산업을 21세기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 ◇ 과학기술의 잠재적 환경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환경위해성 평가(環境危害性 評價) 및 관리 강화

5-1 환경 과학기술의 육성

5-1-1 환경분야 과학기술 혁신체계(科學技術 革新體系) 구축

-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분야 과학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 혁신체계를 구축
- 환경기술의 선진화 및 실용화를 위하여 「국가환경기술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핵심 환경기술 개발 활성화
 - 민·관 파트너십을 토대로 기업들의 실용화가 용이하고 경쟁력이 높은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환경기술 개발 우선 지원

< 기술개발 단계 >

구 분	1 단 계 (’92~’94)	2 단 계 (’95~’97)	3 단 계 (’98~)
기본목표	기반기술 확보	핵심기술 개발 및 실용화 기반 구축	기술 실용화 및 종합환경관리체계
기술유형	사후처리 중심		사전예방 및 환경복원·창조
산업측면	환경기술의 자립		수출 전략산업화 및 벤처기업 육성

- 환경 신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환경 기술을 국가가 공인하는 「환경기술 평가제도(環境技術 評價 制度)」 활성화
 - 최신 환경기술 관련정보의 수집·관리 및 교류를 위한 「환경기술정보센터」 설치·운영
 -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한 성공불제(成功拂制) 도입 검토
- 지역별 대학·연구기관 합동으로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지역별 환경특화기술(環境特化技術) 개발을 지원

5-1-2 환경산업의 육성

- 환경산업(環境産業)을 21세기 수출전략산업(輸出戰略産業)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추진
 - 환경벤처 전용 fund 조성, 환경기술 개발 및 산업화 자금(환경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유망 환경벤처기업 중점 육성
 - 개도국 수출지원단(輸出支援團) 구성, 환경산업 국제박람회 참가 등 지원책 병행
- 환경건설팅업 기준 마련 등 국제기준에 맞는 환경산업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전문 환경산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입찰제도(入札制度) 개선

5-2 과학기술의 환경위해성(環境危害性) 관리

5-2-1 신기술 개발에 따른 환경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 신종 물질 개발에 따라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危害性)을 사전 평가하는 방안 강구

- “내분비계 장애물질”, “유전자 변형생물체” 등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체계 마련

※ 전 세계적으로 약 1,200만종의 화학물질이 존재하며 매년 2천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상품화되어 그중 200여종이 국내 유입

5-2-2 유해(有害) 화학물질의 관리 강화

- 화학물질(化學物質)의 유해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성 심사 대상물질을 단계적으로 확대(만성독성, 발암성 등 추가)
-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배출량 보고제(TRI) 확대 시행

-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석유화학, 정제업 등 7개 업종에 우선 적용하고('99년 시행) 단계적으로 확대

※ 미국에서는 화학물질배출량을 '88년 기준 '92년까지 33%, '95년까지 50% 줄이는 「33/50 Program」을 '91년 조기달성

5-2-3 환경위해성 정보의 유통관리 강화

- 신종 물질에 대한 제조 및 사용량, 환경위해성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위해성 정보(危害性 情報)가 효율적으로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활용한 위험교신체계(risk communication system) 구축

6. 지구환경 보전에 적극 참여

- ◇ 지구온난화(地球溫暖化), 오존층 파괴, 열대림 및 생태계 파괴 등 지구 환경문제에 능동적 참여
- ◇ 산성비(酸性雨), 황해오염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 해결 및 한반도 생태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 환경협력체계 강화

6-1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6-1-1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國際環境協約)에 대한 환경외교(環境外交) 강화 및 국내이행체계 마련
-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환경 연계동향 및 선진국의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환경규제 압력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체계 강화

※ 국제환경협약 200여개 중 무역규제조치를 포함한 협약은 23개

<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예시) >

협 약	규제대상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바젤협약	47종의 폐기물	- 재생용 플라스틱, 고무, 고철 등을 활용하는 산업에 영향
생물다양성협약	생물 및 유전자원	- 유전자원의 접근성 제약 등으로 농업, 축산업, 의약업 등 영향
기후변화협약	CO ₂ 등 온실가스	-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등에 영향

-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참여, 에너지 절약 등 기후 변화협약(氣候變化協約) 종합대책 수립·추진
 - 에너지 다(多) 소비형 산업체계를 개선하고 에너지 수요절감, 대체에너지 개발 및 유희토지 등을 이용한 신규 조림사업(造林事業) 확대 등 종합대책 추진

6-1-2 국제 환경동향에 대한 정보망(情報網) 구축

- WTO, OECD 등 국제기구의 환경동향, 동북아 및 주요 국가의 환경정책 및 환경기술 개발사례 등에 관한 종합적인 환경정보(環境情報) 수집·관리체계 구축

6-2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6-2-1 동북아(東北亞) 등 역내 환경협력 증진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활성화하고, 산성비·황사·해양 오염 등 월경성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공동조사 및 정보교류 등 환경협력 증진
- 동남아 국가와 환경협력협정 체결 등 국가간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환경산업 및 기술분야의 협력 증진방안 마련

6-2-2 남북한(南北韓) 환경협력 강화

- 비무장지대(DMZ) 생태계 공동조사 등 남북한 공동연구·교류사업의 활성화
- 대기·수질 오염 등 도시(都市) 환경문제, 환경정책 및 기준 등 환경분야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방안 모색

7. 녹색정부체계의 구현

- ◇ 환경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정부·기업·국민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同伴者 關係) 구축
- ◇ 지속가능한 발전이념(ESSD)을 토대로 정부구조·기능을 환경친화적 녹색정부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7-1 국가 환경정책 운영체계의 혁신

7-1-1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 대통령 자문기구로 정부, 산업계, 시민·환경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 개발과 환경보전관련 정책의 사전 조율 및 국제 환경규제에 전략적으로 대응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강문규 등 위원 33명)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6946호, 2000. 8. 5)」에 의하여 설립

7-1-2 ‘녹색 국민총생산(Green GNP)’ 및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 지속가능한 개발이 국가 정책 및 계획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오염을 고려한 국민소득(國民所得) 계정을 개발
 - ※ 현행 국민소득 계정은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재산상 손실 등을 반영하기 어려워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이 과다 계상될 우려
- 「지속가능발전지표(持續可能發展指標)」를 개발, 각종 정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환경친화성을 평가

7-2 환경친화적 지방자치행정(地方自治行政) 추진

7-2-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능력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환경성과 평가제도(環境成果 評價制度)를 도입하고,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 부여방안 강구

7-2-2 지방 환경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시민환경헌장(市民環境憲章) 제정, 민간 감시단 구성 등 주민 참여에 의한 환경행정 투명성 제고
- 투자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의 민자유치(民資誘致) 확대

7-2-3 계획적 지역환경관리와 환경감사제(環境監査制)의 활용

- 지역 환경정책 및 환경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쾌적성 평가 지표를 개발, 쾌적한 환경조성계획(Amenity plan)을 수립·추진
- 지방자치단체 환경감사(Environmental Audit)제도를 확립, 지역 환경관리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

7-2-4 지역환경분쟁의 사전예방 및 해결체계 강화

- 수자원 이용, 환경기초시설 입지 등을 둘러싼 지역환경분쟁(地域環境紛爭)을 막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환경기초시설의 교환사용 등 지자체 상호 협조체계 강화

V. 부문별 단위사업 실행계획

1. 환경윤리 정착 및 환경교육 강화

1-1 환경윤리 정착

단위사업명	1-1-1-① 자연·생명존중의 환경윤리 정착(야생동식물보호)		
작성기관	환경부(자연생태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생명존중의 환경윤리 정착
 - 야생생태계 서식지 보호, 야생동·식물의 불법 포획·채취 및 밀거래 근절 등 근본적인 생태계파괴 방지대책 마련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현재까지 조사된 국내 생물종은 약 29,828종의 생물종(동물 18,029종, 식물 8,271종, 미생물 등 기타 3,528종)임
-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생물종중 특별히 관리 보호하여야 할 생물 194종(전체생물의 1.1%)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등으로 지정·관리
 - 멸종위기야생동·식물(43종) : 호랑이, 늑대, 곰, 한라산, 나도풍란 등
 - 보호야생동·식물(151종) : 물개, 솔개, 올빼미, 별혹산호, 풍란 등

【 문제점 】

- 국토의 난개발에 따른 서식지 파괴, 농약 사용, 밀렵 등으로 많은 야생동식물이 멸종위기 또는 감소 위기 가속화
- 특히, 도시화와 산업화 등에 따른 개발용지의 계속 증가로 서식지의 훼손 가속화

-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등에 대한 국민 인식 부족
 - 야생동물을 보신·기호 식품으로 인식하여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연중 밀렵 성행
 - 최근 5년간 밀렵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 ※ '96년(69건), '98년(58건), '99년(407건), 2000.10(548건)

3. 실천계획

- 야생동식물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환경적·문화적·경제적 가치 평가·분석 홍보
 - 자연환경보전 교육용 비디오 제작, 교육기관 및 단체에 보급·활용
- 야생동식물 보호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합리적 운영
 - 불법 포획·채취·거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유해조수구제제도 개선 등
 - 검·경·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밀렵단속 실시
- 야생동식물 보호 민간단체의 활성화
 - 철새 도래지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보호, 밀렵·밀거래 감시, 기타 야생동식물보호활동 등에 대한 민간단체의 지원 확대
 - 자연보호 민간단체를 통한 자연사랑 범국민운동 전개
- 자연보전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의식수준 향상
 -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를 확대, 생태체험 및 교육의 장소로 활용
 - 주요 자연자산을 주제공원화하여 생태관광 및 교육장소로 활용
 - 생태계 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기반 조성
 - 생태계 보전에 따른 지역주민 손실 보상, 생태계 보전활동 지원책 마련

단위사업명	1-1-1-② 자연·생명존중의 환경윤리 정착(산림생태계 보전)		
작성기관	산림청(산림지원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자생식물 보전관리 체제 구축
- 산림생태계 보전·복원 관리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국가식물자원 정보망 구축('98~2000)
 - 외부적으로 식물의 자원화 및 식물자원 획득을 위한 경쟁치열
 - 식물자원의 보전실태를 정보화 하여 지속적인 보전관리와 자원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화된 국가 식물자원정보관리시스템 필요
 - 이에 따라 국가식물자원 정보망 구축 추진
 - 1차(1999년) 국가식물자원 정보관리 Intranet 구축(산림청 홈페이지내)
 - 2차(2000년) 국가식물자원 정보DB 구축 : 표본정보(166,811점), 식물정보(9,345개체), 4개 수목원(진주, 완도, 내연산, 강원도 화목원) 홈페이지 구축
- 우리나라는 지형 및 기후여건상 온대지역 국가 중 생물종다양성과 유전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함
 - 전체 식물 자원 8,894종 중 자생식물 4,158종

고등식물	자 생 식 물			외래식물	비 고
	소 계	특산식물	기 타		
4,594	4,158	407	3,751	436	자생식물중 종은 2,898종, 아종 이하는 1,260종

【 문제점 】

- 국제적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나, 아직까
지 생물종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온대지역의 풍부한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식물자원정보망 부재
- 식물자원의 해외유출 방지제도 미비
- 급속한 인구증가, 산업화 등으로 생물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3. 실천계획

- 식물유전자원 전쟁시대 도래 대비 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
 - 산림내 자생식물 종 조사단 구성, 지속적으로 지역별 식물자원 탐사
 - 국가 식물자원정보 관리시스템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정비
 - 3차(2001) 국가식물자원 정보DB 구축 : 표본정보(165,000종),
식물정보(12,300개체)
 - 식물종의 도입, 반출관리를 위한 실태정보의 확보
- 식물자원 정보 활용범위 확대 및 대국민 홍보
 - 신품종 육성지원을 위한 유관기관(유전공학, 생물산업 등)에 정보지원
 - 산하기관의 자원관리 및 식물정보 대민 지원
 - 관련 유관기관과 일반 국민에 대한 식물자원 정보 공유

□ 산림생태계 보전 및 관리체계의 강화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지역 확대
 - 백두대간을 축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보전지역 확대
 - 수목위주에서 산림생태계 유전자원, 토양미생물 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 보전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자연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태적인 산림관리 유도
-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대하여는 후계림 조성 등 산림사업 적기 실행

□ 산림식물 유전자원 보전·관리기반 강화

- 수목원 등 현지의 보전기관간 국가식물정보망 구축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채종림 등 현지내 보전지역 확대
- 희귀 및 특산식물 자생지 보호 및 복원
 - 생태숲 조성 및 서식지 분포도 작성

□ 생물종다양성 국제교류 강화 및 전문가 양성

- 국립수목원의 생물다양성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국제교류 협력 증진
- 신품종 육성 등을 통한 유용 외국식물자원의 수집
- 선진국의 파견 등을 통하여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확대

□ 산림식물자원의 현지의 보전기관 및 시설 확충

- 국립수목원을 주축으로 지방수목원 등 현지의 보전기관 확충
- 권역별 산림박물관 건립으로 산림환경교육 홍보 강화
- 수목원 조성·진흥 촉진과 자원화를 위한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정(2000. 11. 23 법률안 국회제출)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비고 (2006~)
총 계	90,568	25,051	16,580	16,580	16,580	15,777	
국가식물자원 정보망 구축	2,100	2,100	-	-	-	-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지역관리	285	57	57	57	57	57	계속
보호수 정비	1,710	342	342	342	342	342	계속
수목원 조성	62,875	12,575	12,575	12,575	12,575	12,575	계속
산림박물관 조성	16,000	8,000	2,000	2,000	2,000	2,000	계속
생태숲 조성	7,598	1,977	1,606	1,606	1,606	803	5,302

단위사업명	1-1-2 환경정의(環境正義)의 구현		
작성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협조기관	환경부, 행정자치부, 시·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업기간	2001~2005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환경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 및 환경피해 유형별 인과관계 규명기법, 배상액 산정기준 개발 등을 통한 분쟁조정기능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민의식이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환경분쟁의 요인도 다양화
 - 공사장이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 피해외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또는 운영에 따른 피해, 항공기 소음 및 도로소음으로 인한 피해, 일조권 침해 등이 분쟁의 원인으로 대두
-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 환경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조정업무를 수행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상설기구이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비상설임

【 문제점 】

- 환경오염피해는 그 양태도 다양하고, 기간의 경과에 따른 원인상황의 변화·소멸 등으로 인과관계 및 피해규모의 규명이 어려우며, 과학적으로 확립된 인과관계 규명기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도 미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이 곤란하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그 대부분이 비상설로 되어 있는등 분쟁조정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환경분쟁의 수적인 증가뿐 아니라 환경피해의 원인도 다기화됨에 따라 분쟁조정체제의 개선 필요성 대두

3. 실천계획

□ 인과관계 규명기법 및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개발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발생원별, 피해유형별 인과관계 규명 및 배상액 산정기준의 단계적 개발
 -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항공기 소음피해, 일조권 침해 등의 원인 및 피해정도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관계전문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 분야별로 권위있는 전문가를 풀(pool)로 구성하여 피해유형에 따라 적절히 활용

□ 환경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

- 상임위원 보강을 통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보강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추진 및 전문적 분쟁조정기능의 강화 도모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위원회 기능 확대
 - 중앙위원회에 신청된 소액의 단순·경미한 분쟁에 대하여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 조정토록 함

□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선 추진

- 환경정책기본법상 생활환경에 포함된 일조권 침해를 환경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의 범위에 포함
- 다수인이 관련되어 장기간 지속되는 분쟁 등을 직권조정 대상 범위에 추가하여 적극적인 분쟁해결 도모
- 조정위원 및 심사관이 우선 분쟁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여 분쟁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절차 도입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인과관계 규명기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 개발	325	35	50	65	80	95

1-2 시민참여에 의한 환경공동체 구축

단위사업명	1-2-1 환경행정의 투명성 제고		
작성기관	환경부(정보화담당관실)	협조기관	
사업기간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환경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환경정책수립에 시민 참여를 유도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환경정보 제공
 - 환경자료실, 위성자료, 유독물관리요령, 국내생물종분류자료, 자연환경문헌정보, 정수장 등의 DB와 유독물정보, 생물종정보,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등에 링크하여 분야별 환경정보 서비스
- 환경정책수립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 장관과의 토론마당, 사이버민원, 사이버포럼을 운영하여 국민의견 수렴

【 문제점 】

- 온라인으로 처리가능한 환경민원수가 제한적이며 민원처리 과정이 제공되지 못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투명성 미흡
- 소외계층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환경정보 접근성이 미흡하여 정보 불평등 해소노력 필요
-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증가하는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신 환경정보 지속제공 필요

3. 실천계획

- 각종 환경관련 민원의 사이버 접수·처리체계 구축
 - 전국 배출업소의 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인·허가, 승인 등의 환경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과정을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
- 고품질 환경정보 생산·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산업육성과 정책 결정지원 등에 본격 활용하고, 다양한 형태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지리정보시스템, 원격탐사, 모델링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로 정책수립 지원 및 웹서비스
 - 수계수질관리,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지도, 토지이용상태 등 환경 정책의 개발과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

4.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계	1,132	147	162	177	195	215	236	
환경행정전산 운영 및 기반 구축	307	40	44	48	53	58	64	
환경정보화사업	825	107	118	129	142	157	172	

단위사업명	1-2-2-① 시민참여의 환경운동 활성화(내셔널트러스트운동 활성화)		
작성기관	환경부(자연정책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생태적으로 가치있는 지역을 매입·보전하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National Trust)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강화
 - ※ 우리나라는 '99년부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서 추진중인 「무등산 땅 한평 사기 운동」 등이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대표적 사례임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생태적으로 우수한 동강에 대한 동강일대 매입운동 전개
 - 5년동안 50억원의 시민기금을 조성, 동강일대 약 20만평의 보전지역 확보를 목표로 추진
 - ※ 동강 내셔널트러스트운동 추진 현황

- 내셔널트러스트운동 법인 설립(2000.4.12)
 - 동강 내셔널트러스트운동 선포식(2000.8.7)
 - 사이버동강 땅 한평갓기 운동 전개(2000.8.5~)
 - 동강음악회, 동강사진 영상전 개최(2000.8.5~10.4)
 - 모금캠페인 전개(ARS모금캠페인, DM을 통한 모금활동 등)
 - 내셔널트러스트운동 추진 지원
 - 법인설립허가 : “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운동”
 - 모금활동 적극지원 및 동참 유도, 각종 행사 후원 등

【 문제점 】

- 주어진 사회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 대한 인식 및 참여 저조

-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 독립단체의 설립 : 가칭 “국민환경신탁(재)”의 설립
 - 효과적인 기금 확보 및 회원확충방안과 신탁방법의 다양화, 신탁의 영속적 관리방안 등
 - 재정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참여프로그램 개발 등)

3. 실천계획

-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활성화방안 모색 및 국내실정에 적합한 운동 발굴 지원
 - 동강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추진 성과를 분석, 향후 생태적으로 가치있는 지역의 매입·보전방안 강구 및 지원
 - 천수만 일대 등 철새도래지역 보전을 위한 토지 매입 등 지원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정책과 연계하여 내셔널트러스트운동 활성화 방안 마련

단위사업명	1-2-2-② 시민참여의 환경운동 활성화(해양정화운동 활성화)		
작성기관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협조기관	지자체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해양정화 활동에 시민단체 및 국민들을 적극 참여시켜, 해양오염의 심각성 홍보 및 해양환경 보전의식 제고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된 해양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 심각
 - 육상유입, 어업활동 등으로 발생된 폐기물이 다량으로 해양 유입
-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일반국민들에 의한 폐기물 해양투기가 꾸준히 증가
 - 레저활동 등에 의한 바다 이용시 폐기물 투기 등이 해양오염의 큰 비중 차지

【 문제점 】

- 정부의 지속적인 정화사업 추진에도 국민 관심도 저조 등으로 지속적인 해양폐기물 발생
- 해안가 폐기물의 경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수거 곤란
 - 전국 연안에 산재되어 집중적인 수거활동 곤란

3. 실천계획

- 민간 업·단체를 활용한 해안가 정화활동 추진
 - 연안 인근지역의 민간 업·단체에 일정구역의 정화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1사1연안가꾸기운동, SOS운동 등)
- 정화행사시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캠페인, 홍보 등을 병행 실시

단위사업명	1-2-3-① 민간단체의 환경운동 지원(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		
작성기관	환경부(민간환경협력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2001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민간환경단체와 협력 강화
 - 민간환경단체 및 종교단체 정책협의회의 내실화
 - 여성단체와 상설협의회 운영 방안 검토
- 민간환경단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정책토론회 개최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현재 환경보전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482개 단체로 파악되고 있으며,
 - 법인으로 허가받은 단체는 164개 단체이며,
 - 268개 단체는 자율적으로 환경보전을 하는 임의 단체이고,
 - 50개 단체는 고유의 설립목적과 병행하여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단체임

【 문제점 】

- 대부분 단체가 조직 및 재정이 취약하여 일회성 등 단편적인 활동에 치중하고 체계적인 활동이 미흡`
- 운영재정 부족으로 환경운동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미흡

3. 실천계획

- 민간환경단체 정책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 분기별 협의회 개최
 - 협의회에서 토의 및 논의된 안건은 정책에 적극 반영

- 종교단체 환경정책 실천협의회 내실화 추진
 - 분기별 협의회 개최
 - 종교단체 환경보전 실천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 종교단체의 모범적 환경보전 실천사례 발족·전파

-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워크숍·토론회 등 개최
 - 전국 환경단체 지원사업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 : 1회
 - 민간환경단체 정책토론회 : 1회
 - 종교단체 환경보전 실천토론회 : 1회

-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 (재)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기금 지원 : 585백만원

단위사업명	1-2-3-② 민간단체의 환경운동 지원(해양환경보전운동)		
작성기관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사업 지원을 통해 환경보전의식 및 자율참여 제고
 - 해양환경영화제 개최 및 청소년 해양체험기회 등 참여공간 마련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갯벌 환경교육 지원 등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의 환경운동에 대한 지원 증가 추세
 - 해양환경 영화제 및 갯벌 생태학교 운영 등 지원
 - 아직은 초보적 단계의 지원으로 일반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부족

【 문제점 】

-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지원체제 부족 등으로 자율적 환경보전 참여 저조
 - 일반국민, 바다이용자 등에 대한 체계화된 홍보수단 미흡
 - 각종 해양환경 보존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기반 미비

3. 실천계획

-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운동에 대한 단계적 지원 증대
 - 청소년 갯벌 생태학교 운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 들에게 해양 생활 체험 기회 부여
 -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
 - 해양환경영화제 개최 : 해수욕장 등 하계피서객을 대상으로 집중홍보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520	30	70	70	100	100	150	
해양환경영화제	360	20	50	50	70	70	100	
갯벌생태학교	160	10	20	20	30	30	50	

1-3 평생 환경교육제도의 확립

단위사업명	1-3-1-① 학교 환경교육의 내실화(학교 환경교육체계 구축)		
작성기관	교육인적자원부	협조기관	시·도교육청
사업기간	2001~계속사업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현장중심의 환경교육 강화
- 환경과목 채택 등 환경과목 이수기회 확대
-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현장중심의 환경교육 강화
 - 환경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 초등학교 : 관련교과 및 재량·특별활동을 통한 집중지도
 - 중 학교 : '환경'과목을 선택교과로 지정하여 매 학년에 주당 1~2시간
 - 고등학교 : '환경과학'과목을 교양선택으로 지정, 2학년 또는 3학년에서 주당 2시간 배당
 - 관련교과 및 계기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 학교주변 환경정화운동 전개, 자연보호활동, 수질개선사업 참여
 - 폐지·폐식용유 수집 및 재활용 등
 - 하천(강 포함) 관리 지정학교 운영
 - 초등학교 : 1,766교, 중학교 : 1,284교, 고등학교 : 482교

- 물 아껴쓰기 지도
 - 물부족 현상에 대한 심각성 인식 및 물절약의 생활화 교육
 - 환경교육 우수학교 및 교사선정 표창 : 1,073교 12,665명 시상(2000년)
 - 환경교육 및 물관리 관련 홍보
 - 각종 홍보 및 홍보물 제작·보급 : 가정통신문, 포스터, 스티커 등
 - 각종 학예행사 개최 : 글짓기, 그리기, 탐구보고대회 등
 - 환경소년단 활동 권장
 -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운영 : 26개교 운영
- 환경과목 채택 등 환경과목 연수
- 환경과목 선택학교 현황(2000.6.30 기준)
 - 중학교 283교(10.2%), 고등학교 301교(15.3%)
 - 환경교육 담당교사 확보
 - 환경교육 전공(부전공)교사 자격연수 : 매년 1,000여명 내외
 - 초·중·고교 환경부장 교사 연수 : 매년 80,000여명
-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환경윤리 및 환경교육관련 정책연구 추진 : 2000.12월말
 - 전국교사 환경교사 연구회 지원: 4천5백만원(10개 연구회)
 -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시·도교육청별 실정에 맞는 각종 홍보자료 및 교재개발·보급 권장

【 문제점 】

- 현장중심의 환경교육 강화
- 단위학교별 다양한 환경실천활동에 필요한 예산 부족
 - 환경보전에 대한 환경윤리교육의 사회·가정과 연계가 미흡
 - 환경교육의 계량적인 실적위주의 평가

- 환경과목 채택 등 환경과목 이수기회 확대
 - 단위학교별 환경교과 선택 미흡
-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환경관련 교구 및 교재개발에 따른 예산부족
 - 실천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부족
 - 현장견학 학습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3. 실천계획

- 현장중심의 환경교육 강화
 - 학교환경내용의 체계화
 - 교과서 개발시 환경교육내용 반영 : 2003년까지 연차별 추진
 - 교과교육 및 계기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강화
 - 학교주변 정화운동 및 각종 환경관련 학예행사 추진
 - 환경교육 우수학교 및 학생교사 선정 표창
 -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수립 추진 : 시·도교육청별 자체계획
 - 하천(강 포함)관리 지정학교 확대 운영
 -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계도활동 전개
 - 물 아껴 쓰기 적극 지도
 - 환경교육 연구활동 지원
 - 전국 환경교육 교사연구회 지원 :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 환경교육 및 물관리관련 홍보
 - 각종 홍보 및 홍보물 제작·보급
 - 각종 학예행사 개최
 - 환경소년단 활동 권장
 -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운영

□ 환경과목 채택 등 환경과목 연수

- 각급학교의 환경과목 선택 확대 권장
- 환경교육 담당교사 연수 강화
- 환경전공 순회지도교사제 운영 권장 : 시·도교육청별

□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환경윤리 및 환경교육관련 연수자료 보급
- 전국 환경교사 연구회 지원
-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시·도교육청별 실정에 맞는 각종 홍보자료 및 교재개발·보급 권장

4. 투자계획 : 시·도교육청별 자체 예산으로 추진

* 환경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 업무임.

단위사업명	1-3-1-②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환경연수 및 시범학교 운영 활성화)		
작성기관	환경부(민간환경협력과)	협조기관	교육인적자원부
사업기간	연중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학교교장·교감, 환경담당 장학관 환경연수 실시
 - 국립환경연구원 교육과정에 학교환경정책과정 설치
- 제9차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내실화
 - 국고보조금 지원확대, 사례집 발간 등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학교환경교육 관련 기관장 및 정책입안자 환경연수과정 전무
 -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장·교감 및 장학관의 환경마인드가 중요 관건
-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예산 및 관련자료 부족
 - 현재 시범학교 1개교당 연간 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유치원급을 제외하고는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례 등 자료도 부족함.

【 문제점 】

- 시범학교 운영예산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우며, 모범 운영 사례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하나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가 있음

3. 실천계획

- 교장·교감 및 장학관 대상 학교환경정책반 개설 운영
 - 국립환경연구원 연수과정에 개설, 지속적인 실시
- 환경보전시범학교 국고보조금 지원액 상향조정 및 관련자료 제작
 - 1개교당 연간 400만원→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지원
 - 제8차 시범학교 운영사례집 발간, 배포

4.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시범학교 국고보조		128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단위사업명	1-3-2-① 사회 환경교육의 확대(현장체험 환경교육 활성화)		
작성기관	환경부(민간환경협력과)	협조기관	교육인적자원부
사업기간	2001~계속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청소년 현장체험교육 활성화
 - 현장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
 - 「청소년 환경교실」 운영 활성화
- 『환경교육·홍보단』 운영 활성화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전국적으로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민간환경단체(450여개 단체), 교육·연수기관(40여개 기관)이 있으며, 이외에도 지자체, 기업체 등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민방위 대원(1시간), 군장병(2시간 이상/분기)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
- 반사회, 부녀회 등을 통한 환경교육·홍보 실시

【 문제점 】

- 이제까지의 환경교육은 이론위주의 강의식 교육으로 국민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향상에는 기여하였으나 이를 실천하는 실천력제고에는 미흡
 - 일선학교와 지역사회(민간환경단체, 지자체 등)가 연계된 현장체험 학습 체제구축 미흡

- 체험중심의 환경교육을 하기 위한 지도자, 교육시설, 운영비 등의 절대부족으로 현장체험교육 활성화 미흡
-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받지 못한 기성세대들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교육 기회제공 미흡

3. 실천계획

- 현장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
 - 전국 일선학교, 민간단체, 지자체 등의 우수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공모)사업 추진
 - 현장체험환경교육 교재 제작 보급
- 청소년 체험환경교육 기회 확대 제공
 - 「청소년 환경교실」 추진 : 년 300개교 지원
 -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 년 1회
- 「환경교육·홍보단」 운영
 - 강사단의 전문성 확보 : 현재 220명으로 구성된 홍보강사단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재 등 개발·배포
 - 강사지원 대상 기관 확대 : 교육·연수기관 기존 교육기관에 반상회, 부녀회 등 소규모 모임까지 강사 지원

4.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사회환경교육 확대	5,750	1,150	1,150	1,150	1,150	1,150

단위사업명	1-3-2-② 사회 환경교육의 확대(시민참여 해양보전 활성화)		
작성기관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인터넷상에 시민참여형 해양환경보전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상시 해양 환경에 대한 홍보 및 교육실시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일반국민들에 의한 폐기물 해양투기가 해양오염의 큰 비중을 차지
 - 해양에 무단투기시 육지와는 달리 해저에 가라앉는 등의 사유로 폐기물 투기흔적이 없어짐에 따라 무의식적인 투기행위 발생
- 해양환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홍보 등 미흡
 - 학교의 환경분야 교육은 육상환경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해양환경 분야는 교육과정에 단편적, 부분적 서술에 불과
 - 민간부문의 해양환경교육도 갯벌 및 연안생태계 등 습지교육 위주

【 문제점 】

- 정부의 지속적인 정화사업 추진에도 지속적으로 해양폐기물 발생
 - 휴가철, 레저활동 등에 의한 바다 이용시 무분별한 투기행위 빈발
 - 육상폐기물 처리비용에 비해 해양폐기물 처리비용 과다 소요
 - 전국 연안에 산재되어 집중적인 수거활동 곤란
- 환경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비해 해양환경분야 관심 저조

3. 실천계획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해양환경분야 사회교육 실시 및 홍보
 - 도메인 확보
http://lovesea.or.kr, http://lovesea.org,
http://바다사랑.or.kr
 - 주요개재내용
 - 해양보전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 시민참여 모니터링 시행상황
 - 해안대청소행사 등 주관
 - 해양폐기물 데이터베이스 관리
 - 국가의 해양환경정책 관리 및 제언
 -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캠페인, 홍보 등을 병행 실시
 - 운영
 - “바다사랑 시민연대” (제3섹터형 민관 공동기구) 설립 운영
 - 설립시기 : 2002년까지

- 해양보전활동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워크숍 개최
 - 시 기 : 2001년 2월중
 - 주요의제 : “바다사랑 시민연대 설립 방안

2. 경제 · 산업의 녹색화

2-1 산업활동의 환경친화성 제고

단위사업명	2-1-1-① 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체제 정착·발전(환경회계 및 환경성적표지제도 도입)		
작성기관	환경부(환경경제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2001~)	사업구분	예산사업

1. 실천계획의 목표

- 환경회계 도입기반 마련
-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소비 활성화
 -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DfE) S/W 및 지침서 개발
 - 환경성적표지제도(TypeⅢ) 시행

2. 현황 및 문제점

- 미국·유럽 등에서 정부의 권고 또는 공인회계사 중심의 보급 활동으로 많은 기업들이 환경회계를 도입·시행 중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DfE 및 TypeⅢ의 국제규격화를 추진
 -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비관세무역장벽화에 대비 필요
 - 환경상품의 생산·소비 활성화로 사전환경오염 예방 필요

3. 실천계획

- 환경회계정책연구회 구성·운영
 - 기업환경회계의 도입 및 적용가능성 분석, 장·단기 시행방안 마련 등
- 환경친화적인 제품설계기법(DfE) 개발·보급
 - 제품설계단계에서 제품 전과정의 환경에의 영향을 고려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S/W 및 일반지침 개발

□ 환경성적표지제도(TypeⅢ) 시행

- 제품 전과정의 환경성을 수치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제도를 2001.2.4 부터 시행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2,263	463	450	450	450	450	
환경회계 도입 기반마련	13	13	100	100	100	100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	1,750	350	350	350	350	350	
환경성적표지제도	500	100	100	100	100	100	

단위사업명	2-1-1-② 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체계 정착 발전(ISO 14001시리즈 확산)		
작성기관	산업자원부(산업입지환경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산업활동의 주체인 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을 촉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이를 위해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환경친화적 제품설계(DfE), 전과정평가 등 환경경영 체계의 보급·정착 유도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ISO14001 국제규격 인증사업장의 점진적 증가
 - '96.10에 도입된 ISO 14001(EMS) 인증제도는 지난해 10월 현재 인증획득 사업장수가 462개로 증가(우리의 무역규모와 비슷한 세계 10위 유지)
- 선진 환경경영기법 개발·보급 추진
 - 제품의 환경성평가(LCA), 기업 활동의 환경성과평가(EPE), 환경친화적 제품설계(DfE) 등 선진 환경경영기법 개발중
- 국가 기간산업 환경경영 데이터베이스 구축중
 - 전력, 석유화학, 철도 등 Public sector의 환경 database 산출 및 국가 D/B 구축

【 문제점 】

- 환경경영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규제완화 등 실질적인 유인제도 병행 필요
 - ISO 14001(EMS)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유인책 강구로 사업장 환경경영체제 구축 촉진 필요
 - 특히,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환경경영체제 인증 확대를 통한 민간부문에의 도입 확산 기대

3. 실천계획

- 환경경영체제(ISO 14001) 인증 획득 확산을 위한 공공부문의 관련 사례 등 발굴, 보급(2001)
 - 중앙 및 지방자치체(서울시 등)의 ISO 14001 도입 등 분위기 확대
- 제품 전과정평가(LCA,2003년), 환경친화적 제품설계(DfE) 환경성과 평가(EPE) 등 선진환경경영기법 개발·보급 확대(계속)

단위사업명	2-1-2 산업계 자율환경관리 확대		
작성기관	환경부(정책총괄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기업의 자율적 의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환경진단 및 개선을 함으로써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 미국, 일본, 네델란드, 독일 등 선진국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협약 추진

2. 현황 및 문제점

- '99.12월 자율환경관리 추진계획 및 지침서 확정 이후 2000.12월 현재 180개 배출업소가 자발적 협약 체결·시행중
 - 자치단체 171개소(인천 27, 울산 128, 경북 6, 부산 10), 환경관리청 120개소(낙동강청 114, 영산강청 6)
 - ※ 111개소는 울산시와 낙동강청이 공동 명의로 협약 체결
 - 자율환경관리기업에는 지도점검을 실태진단으로 전환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자금의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기업의 인식 부족, 인센티브 미흡, 절차 복잡성 등으로 자발적 참여가 저조함
 -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으로 인하여 자율환경관리를 기업발전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시설 개보수, 기술 도입 등에 의한 새로운 부담으로 인식
 - 협약 체결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원단위 조사, 환경개선목표 설정 등에 상당한 비용·인력 소요

3. 실천계획

-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 업종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 협약 체결을 활성화
 - 시멘트 산업의 NO_x, 철강산업의 미세먼지 등을 중심으로 기업관계자,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환경개선 추진

- 기업의 자발적 협약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자금 지원 확대, 환경정보의 주기적 제공, 협약 체결 절차 및 요건 완화 등

단위사업명	2-1-3 환경친화적 영농체계 구축		
작성기관	농림부(친환경농업과)	협조기관	지자체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사업

1. 실천계획의 목표

-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저감,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 유기농법의 확산 등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생산의 지속성 유지

2.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해온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
- 농업분야의 환경친화적 생산·소비체계 정착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2001~2005) 계획」 마련·시행(2001.1)

2. 실천계획

- 농경지·농업용수 등 농업자원의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보전·이용체계 확립, 농산물안전성 조사강화 등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주요작물별 친환경농업표준기술, 작물양분·병해충종합관리기술 등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 친환경농업기술시범포 설치운영, 농협 토양검정센터 설치·운영 확대, 농업인교육훈련 강화 등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 경종·축산·임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자연순환 농업이 확산되도록 농토배양 및 축산분뇨 자원화
- 친환경농업직불제, 논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지구 및 시범마을, 친환경 가족농단지 등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추진
-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 및 구매자금 지원확대, 소비자 홍보 강화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2,896,036	448,250	537,820	600,742	636,419	672,805
친환경실천기반 조성	242,063	20,130	39,688	51,350	63,356	67,539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28,870	4,996	5,479	5,882	5,989	6,524
친환경농업기술 보급	220,640	37,080	41,934	43,510	47,208	50,908
농토배양·축산 분뇨 자원화	644,108	110,487	129,237	131,608	134,604	138,172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1,434,695	234,457	273,222	307,492	309,762	309,762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325,660	41,100	48,260	60,900	75,500	99,900

2-2 환경친화적 가격 및 조세체계 구축

단위사업명	2-2-1-① 환경친화적 자원 가격체계 구축(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 평가)		
작성기관	환경부(자연정책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2001년 이후	사업구분	예산사업

1. 실천계획의 목표

- 자연자산의 사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개념 정립으로 자연보전과 개발에 대한 논쟁 해결의 이론적 토대 마련
- 경제발전을 위한 경쟁적인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자연자산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산발적·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학술연구 차원이나 특정목적에 위해 행해지고 있어 아직 객관적이고 일반화된 평가방법론 부재
- 우리나라의 전 국토는 물론 일부 지역의 자연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사례가 없음

【 문제점 】

- 자연자산 가치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측정방법론 개발 및 적용없이는 지속가능개발의 이론적 토대 마련 불가
- 자연자산별 평가범위 및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객관적인 지침마련을 위하여 상당한 시일과 예산지원 필요

3. 실천계획

- 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 측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특정용도 지역별 자연자산 가치의 측정방법론 정립
- 정립된 측정방론의 현장에의 시범 적용 및 단계적 보완·적용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자연자산 가치측정 방법론 개발	25	25					
가치측정시범 적용 및 보완	1,000		100	100	200	200	400

단위사업명	2-2-1-② 환경친화적 자원 가격체계 구축(에너지가격 적정화)		
작성기관	산업자원부(자원정책과)	협조기관	재정경제부
사업기간	2001.1.6~2006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에너지원간 담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수송용은 선진국 수준으로 유종에 따라 차등을 두고 조정
 - 가정용은 수송용으로의 전용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적정폭 인상
 - 산업용은 산업경쟁력, 환경보호 등을 고려하여 소폭 인상

2.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에너지가격은 산업경쟁력 지원 및 물가안정이 중시되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자원배분 왜곡 및 에너지 소비절약 동기부여 미흡
 - 에너지소비는 세계 10위, 석유소비 6위(수입 4위)
 - 1인당 에너지소비(3.87toe)는 이미 일본 수준(4.03toe)에 근접
 - 휘발유 가격은 높은 반면, 경유·LPG 가격은 낮은 세금으로 인해 지나치게 저가

3. 실천계획

- 2001.7월 ~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적정화 추진
 - 소비세제법, 석유사업법시행령 등 관계법령 정비 완료

단위사업명	2-2-2 환경친화적 조세제도 도입 및 오염유발형 보조금 폐지		
작성기관	환경부(환경경제과)	협조기관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각종 환경관련 부담금의 환경오염 저감 유인효과를 제고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활용을 강화
- 환경친화적 조세체계 구축 기반 마련
 - 환경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환경오염 저감효과 분석 및 환경친화적 조세 개편(Green Tax Reform) 기본방향 수립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예치금 및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5종의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운용
 - 현재 운용중인 각종 원인자부담제도는 본래의 오염원인자 부담원칙(3P원칙)에 충실하지 못하여 오염억제 효과를 유발시키는 동기 미흡
-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응하여 OECD회원국, 스웨덴·노르웨이 등 북구 유럽국가 등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조세 개혁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도모

3. 실천계획

-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경제적 유인제도 개발과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방안 검토
 - 환경오염 유발행위에 대한 세금 신설·증대 및 환경친화적 행위에 대한 세금 감면, 현재 에너지에 부과하고 있는 교통세·특소세 등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반영하여 통합하는 방안 등
 - OECD, 미국 등 선진국에서 검토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주행세 등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현행 부담금제도의 개선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효과 제고
 - 중수도시설 등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및 부담금 산정기준 합리화
 - 배출시설물에 대한 부과금제도(기본, 초과)를 통합, 배출부과금으로 일원화
 - 오염원, 오염부하정도, 과학적인 측정자료 확보 등 환경통계체계가 확립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배출총량 규제체제로 전환 필요
 - 생산자자율재활용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회수·처리하는 체계가 확립될 경우 동 품목에 대하여 예치금을 감면(사후적으로 재활용부과금 부과)

2-3 자원 수요관리 강화

단위사업명	2-3-1-① 물 수요 관리시책의 강화(물수요관리 종합대책)		
작성기관	환경부(수도정책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노후 수도관을 전면 정비하여 현재 18%에 이르는 누수율 누수율을 2010년까지 10%이하로 개선
-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누진 수도요금제 실시
- 절수기기 설치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중수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우리나라는 수자원이 부족하여 UN에서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
 -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1,470톤에 불과, 중동의 리비아, 이집트 등과 함께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
- 물 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1인당 물 사용량은 1일 388ℓ로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으로 물 낭비 심각
 - ※ 선진국 급수량(ℓ/일) : 독일 132, 덴마크 246, 프랑스 281
- 댐 건설에 의한 공급위주의 물 수급정책이 한계에 이르러 물 수요관리 정책의 강화 필요
 - 댐 건설 적지 감소,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신규 댐 건설 곤란

【 문제점 】

- 수도관 노후로 누수율이 18.1%에 이르러 연간 10억톤이 누수, 5,000억원 손실 초래
 - 수도관 노후로 수돗물의 공급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되는 등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불신 초래
- 수도요금의 생산원가의 74% 수준에 불과, 물 낭비를 조장
 - 특히, 가정용의 경우 현실화율이 51.5%(원가 535원, 요금 276원)에 불과, 물 절약에 대한 국민 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기존 건물의 절수기 설치 및 대규모 건물의 중수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물 절약 시설 설치확대 지연
 - 절수기는 '98.3월부터(수도꼭지는 2000.1부터) 신축 건물에 한하여 설치를 의무화
 - 중수도는 일정 규모이상의 대형 건물에 한하여 설치를 권장

4. 실천계획

-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추진
 - 2011년까지 노후수도관 42,757km를 전면교체, 누수율을 12%로 개선
 - 2001년에는 2,400억원을 투입, 2,515km 교체
 - ※ 1997년부터 2000년까지 9,137억원을 투입, 9,082km 교체
- 수도요금 현실화 및 절수형 수도요금제 도입
 - 상수도 시설 감가상각기한 축소 조정 등 수돗물 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고, 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 수도요금 산정시 소량 사용자는 효율 인하, 다량 사용자는 누진요율을 확대하는 누진요금체계 강화
 - ※ 상수도공기업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수도요금 원가산정 및 요금부과체계 개선 요청(2000. 1)

□ 절수기 및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화

- 숙박·목욕·골프장업 등 물 다량 사용업소는 기존 건물인 경우에도 절수기 설치 의무화
- 건축연면적 6만㎡이상의 호텔·백화점, 1일 폐수배출량 1,500톤 이상의 공장 등에 중수도 설치 의무화

※ 절수기 및 중수도 설치 의무화를 위해 수도법 개정안 국회 제출(2000.11.20)

□ 기존 주택에 절수기 무상 설치사업 추진

- 공공근로예산을 투입, 2004년까지 기존 주택의 70%인 1,163만 가구에 절수기 무상 설치
 - 2001년에는 148억원을 투입, 227만 가구에 절수기 설치

※ 1999년부터 2000년까지 175억원을 투입, 324만 가구에 절수기 설치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노후수도관 교체	2,907,900	240,000	230,000	230,000	230,000	230,000	1,747,900
절수기 설치	59,200	14,800	14,800	14,800	14,800	-	-

단위사업명	2-3-1-② 물 수요관리시책의 강화(광역상수도요금 현실화)		
작성기관	건설교통부(수자원정책과)	협조기관	재경부
사업기간	1998~2001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광역상수도 요금현실화를 통한 물 절약 유도 및 수자원개발 투자재원 확보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공급은 생산원가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음

구 분	생산원가(2000년 기준)	현행단가	현실화율
광역상수도	226.24원/m ³	168.70원/m ³	75%
댐 용 수	34.03원/m ³	25.54원/m ³	75%

【 문제점 】

- 낮은 물값은 모든 물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음
 - 물의 낭비를 유발하여 물부족 문제 초래
 - 수자원시설 투자재원 조달 어려움으로 정부재정부담 가중
 - 하폐수 증가에 따른 하천수질 악화 초래 등

3. 실천계획

-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물값을 현실화시키기로 함

연차별	1999년	2000년	2001년
현실화 수준	85~85%	90~95%	100%

주) 물관리종합대책(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98.5)

단위사업명	2-3-2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작성기관	환경부(대기정책과, 교통공해과, 생활폐기물과)	협조기관	산업자원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

* 동 과제는 산업자원부 주관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시책과 통합 작성 예정

1. 실천계획의 목표

- 고효율 에너지사용기기 보급, 대체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절약시책의 지속추진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기반 조성
 -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대체에너지 개발에 협조 강화
 - 환경부 주관으로 저공해·저연비 자동차 개발, 자동차 공회전 저감, 에너지 절약 홍보 및 폐기물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을 중점 추진

2.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의 급증으로 대기오염 중 자동차 공해비중이 증가
 - 서울의 경우 전체 대기오염 중 자동차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 80.6%('95) → 82.2%('96) → 83.8%('98)
- 자동차 출발전 장시간 공회전 하는 습관으로 인해 불필요한 연료소비 및 대기오염 배출 가중
- 에너지원의 다변화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98년 기준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1%에 불과한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을 확대 필요

3. 실천계획

- 저공해·저연비 자동차 개발·보급
 - 소형고속디젤엔진과 축전지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 2000.7월부터 2002.7월까지 총 사업비 30억(정부10억)을 투자하여 직렬형 하이브리드 버스(20~25인승) 개발 지원
 - 2003년부터 기존에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승합차 또는 소형버스 등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체하도록 차량구입비 보조 등 대책 추진
- 자동차 공회전 규제 실시
-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규제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2001년 중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
 -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터미널, 차고지 등 공회전이 빈발하는 지역에 공회전을 규제하도록 조치
- 폐기물 매립가스자원화사업 추진
- 2001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시설(50MW 발전시설) 설치
 - 2004.6월 준공 예정, 시설투자비 686억원 민간투자로 시행
 -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
- 대기오염저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방안 홍보 지속 실시
- ‘실내온도 1℃ 줄이기’,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고효율 에너지기기 사용하기’ 등 시민실천사항 홍보 지속 추진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저공해·저연비 자동차 개발·보급	47,500	500	-	2,000	5,000	10,000	30,000
매립가스 자원화 조사용역비	900	-	900	-	-	-	-
수도권 매립가스 자원화시설(민간투자)	68,600	68,600 (2001-2004)			-	-	-

단위사업명	2-3-3 폐기물의 자원화		
작성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산업자원부(산업입지환경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재활용산업(再活用産業)에 대한 세제, 금융 및 기술지원을 확대하여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 재활용제품(再活用製品)의 수요확대를 위하여 폐자원 이용을 제고, 재활용산업 우선구매(優先購買) 확대 및 다량배출폐기물(건설폐재, 유기성 폐기물 등)의 재활용기술 개발 추진
 - 폐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교환이용과 생산기술 보급·확대를 위한 「재활용정보시스템」 구축
- 산업부산물의 교환·재활용 및 재활용산업의 지원·육성을 통해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를 구축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폐자원 수집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10/110)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공제대상폐자원(11종) : 고철, 폐지, 폐유리병,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유, 폐섬유,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 재활용기계의 수입시 관세감면(50%)
 - 근거법령 : 관세법 제28조의7
 - 대상기계(24종) : 국내생산이 곤란한 아스팔트재생기, 협잡물제거기, 흡입장치, 자동선별기, 세척기, 여과기, 탈수기등

- 영세한 재활용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저리융자 지원(2000년 500억원)
- 영세하고 자체 기술력제고 능력이 없는 국내 재활용업체들을 대상으로 학계, 연구계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경험 및 인력을 활용 기술지도 실시(업체당 15백만원 이내)
-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망 구축·운영
 - 대한상공회의소에 “산업부산물 교환정보망” 구축·운영(99.10)
 - 기술표준원에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재활용기술정보·특허정보 등 재활용 정보 D/B구축·보급('98.7~)
-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GR마크 운용 활성화
 - 2000년말 현재 113개 품목에 대한 인증규격 제정

【 문제점 】

- 재활용업체에 대한 세제·금융·기술상의 지원이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영세 재활용업체의 영업기반을 확대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
- 재활용제품은 품질이 열악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 수요기반을 확대하는데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의무구매 대상인 공공기관 등은 현행 저가입찰방식에서는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비싼 재활용제품의 구매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
 - 소비자도 동일한 품질인 경우 원재료로 사용한 신제품을 선호하고 유통업체도 재활용제품 판매에 소극적·형식적으로 대응

3. 실천계획

- 재활용시설의 설치, 신기술 상용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국고지원 실시

- 폐자원의 재생이용 및 재이용을 위한 공동 노력 활성화
 -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한국컴퓨터재활용협회, 한국재생연합회 등
-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 GR 등 인증품목을 우선구매품목으로 확대(GR의 경우 2000년 113개에서 2003년 220개로 확대예정)
- 폐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교환이용과 생산기술 보급·확대를 위한 「재활용종합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4.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재활용산업육성자금	4,950	600	650	800	900	1,000

2-4 환경규제의 합리화 및 선진화

단위사업명	2-4-1 환경규제체계의 합리적 개선		
작성기관	환경부(행정관리담당관실)	협조기관	
사업기간	2년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환경규제는 강화하되, 환경개선효과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큰 비효율적인 규제는 정비·개선
- 과도한 절차, 중복규제, 법령 미근거 규제 등 국민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환경부 소관 규제는 2001.1월말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등 31개 법률의 총 612건임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환경분야 총 463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현재까지 415건의 과제를 정비

【 문제점 】

-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으나 아직 규제내용중 절차상의 문제, 유사중복성 규제, 상위법령 미근거 규제 등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신설규제의 도입으로 규제 총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음

2. 실천계획

-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자체규제심사 강화
 -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 규제총량제, 규제일몰제 등 규제개혁위원회 확정 규제개혁 방향에 부합되도록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심사를 강화하고 규제영향분석에 철저를 기함
 - 환경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심사시 동 규제개혁 방향에의 부합여부를 중점심사

-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
 - 불필요하거나 근거가 미약한 규제는 폐지토록 하고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관련 상위법령에 명확히 명문화
 - 고시·훈령 등 각종 하위규정의 제·개정시 엄격한 심사를 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조치

단위사업명	2-4-2 환경규제의 선진화		
작성기관	환경부(행정관리담당관실)	협조기관	
사업기간	5년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강제적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경제적 유인제도와 자발적 협약 등 민간의 역할증대를 통한 규제의 선진화 추진
- 민간자율 확대를 통해 경제와 환경규제의 상호균형 및 조화를 도모

2.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환경부 소관규제는 사전규제 34%, 사후규제 61%, 경제적 규제 5%로 사전규제는 배출업소 인·허가, 사후규제는 벌과금 및 행정조치, 경제적 규제는 부담금 등임
- 환경규제는 사회규제로서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 강제적 규제 위주로 되어 있음

【문제점】

- 동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적 유인과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정책을 점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3. 실천계획

- 시장·소비자 등이 주체로 참여하는 자율적 환경규제 확대
 - 종래의 정부주도 일변도의 환경규제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자율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한 자율적이면서 효율적인 환경규제 유도

- 폐가전제품, 폐형광등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 시범실시
- 「자율환경관리협약」 확대(현 201개 사업장)를 통해 지도·점검 완화 및 기술지원 실시
- 전국 환경친화기업 네트워크를 구성, 환경개선사례 활용을 촉진하고 ISO 환경경영체제 인증 중소기업·서비스업의 환경친화기업 참여를 확대

□ 선진규제제도 도입·적용을 위한 과제발굴 지속추진

- 매년 기존의 규제내용 중 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선진규제로의 전환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 추진
 - 규제의 품질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된 「21세기 환경규제 합리화방안 연구(2000)」 결과를 토대로 선진규제제도 도입 추진
- 신규 규제도입시 선 지원 후 규제방식 도입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3. 환경친화적 · 계획적인 국토관리

3-1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한 제도정비

단위사업명	3-1-1-① 국토환경관리기조의 재정립(환경법령 정비)		
작성기관	환경부(국토환경보전과)	협조기관	건설교통부
사업기간	2000~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환경법령정비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 국토환경보전종합계획, 환경정보망 등 국토환경보전정책의 법제화 추진
 - 기대효과
 - 개발과 보전의 제도적 통합화 및 지속적·체계적인 국토환경관리 추진체계 확보

- 국토환경보전정책 추진체계 구축
 -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국토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추진
 - 과학적·체계적인 친환경적 국토관리정책 추진체계 확립
 - 국토환경조사, 토지의 환경성평가, 환경정보망, 토지의 환경친화적 개발기준, 생태적 계획기법개발보급 등
 - 기대효과
 - 국토의 난개발방지 및 쾌적한 국토환경조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제고

2. 현황 및 문제점

- 국토환경보전정책분야의 과학성·전문성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 예산부족

- 토지의 환경성평가, 환경친화적 개발기준 등 친환경적 국토관리 정책의 과학적·객관적인 기준정립 곤란

□ 국토환경용량의 과학적 기준정립 및 계량화 곤란

□ 국토환경보전정책 강화 및 입법추진에 대한 개발부처와의 갈등우려

3. 실천계획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추진

○ 추진방향

- 환경정책기본법을 국토환경보전 및 제반환경정책의 기본법체계로 개편

○ 주요내용

- 국토환경보전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개발계획수립시행 체계 확립

- 국토환경조사, 토지의 환경성평가, 국토환경지도작성, 환경정보망, 토지의 환경적 개발기준, 생태적 계획기법개발 보급 등

○ 추진일정

- 개정안 초안작성 및 입법예고 : 2001. 1/4분기

- 개정법안 성안 및 국회상정 : 2001. 상반기

- 개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작성 등 : 2001. 하반기

□ 국토환경보전정책의 과학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사업 추진

○ 토지의 환경성 평가 : 2000. 12

○ 국토환경정보망 구축, 생태적 계획기법개발보급 : 2001. 1/4분기

○ 국토환경보전 종합계획 : 2001. 하반기

○ 국토환경조사, 환경지도, 환경친화적 개발기준 : 2002. 상반기

□ 연구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국토환경보전정책의 세부실천계획 수립·추진

4. 투자계획(연구용역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년도	계	2001	2002	2003이후
계	1,120	120	1000	
국토환경정보망 구축	60	60		
생태적 계획기법 개발 보급	60	60		
국토환경보전종합계획	120		120	
국토환경조사	500		500	
국토환경지도	300		300	
토지의 환경 친화적 개발기준	80		80	

단위사업명	3-1-1-② 국토환경관리 기초의 재정립(국토관련 법령의 환경친화적 정비)		
작성기관	건설교통부(국토정책과, 토지정책과)	협조기관	농림부, 환경부
사업기간	2001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의 수립·시행시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국토관련법령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
- 국토환경 및 자연생태계의 현황조사 등을 통한 국토보전시책과 국토종합계획(4차) 등을 토대로 환경과 개발이 통합된 국토관리체계 확립

2. 현황 및 문제점

- '94년 도입된 준농림지역 제도는 토지공급과 지가안정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소규모·산발적 개발로 인한 난개발의 부작용도 발생
-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국토이용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필요

3. 실천계획

- 국토계획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기존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가칭 「국토기본법」으로 확대·개편
 - 법률의 주요내용
 - 국토관리이념 명시 및 국토계획의 실천력 강화
 - 국토계획체계를 일원화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지침적 기능 강화
 - 국토계획에 대한 정기적(5년)인 평가·보완체계 구축 등

○ 법률 제정 추진일정

- 공 청 회 : 2000. 8.18
- 입법예고 : 2000.10.16
- 법제처 제출 : 2000.11.25
- 국회 제출 : 2001 상반기

□ 국토이용관리체계를 개편하여 현행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는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을 제정

○ 법률의 주요내용

- 국토도시계획의 수립을 전국토로 확대
- 준농림지역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관리지역으로 편입하여 엄격히 관리
-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여농제 도입
- 개발행위허가제를 전국토로 확대
- 체계적인 개발수단으로 특별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등

○ 법률 제정 추진일정

- 공 청 회 : 2000. 8.18
- 입법예고 : 2000.10.13
- 법제처 제출 : 2000.11.24
- 국회 제출 : 2001 상반기

단위사업명	3-1-1-③ 국토환경관리 기초의 재정립(건설환경관리)		
작성기관	건설교통부(건설환경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2001~2005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자연환경 보전, 쾌적한 생활환경 창조,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건설의 실현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시책강구 의무화
- 건설환경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 공공건설사업의 사전환경성 조사·검토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국제환경규제강화와 국민의 쾌적한 환경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건설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설환경종합시책 미비
- 건설환경관리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기술개발·예산 등이 미비하여 건설사업 전단계에서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시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문제점 】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지연 등 환경보전과 개발의 대립현상이 심화되고 정부정책에 혼선이 초래 되고있음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비 확보 등이 미흡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정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정비·복원 미흡

3. 실천계획

- 제도정비·시책수립·친환경적 건설기술개발 등을 기반구축과 추진 전략마련 시행
 -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정비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공포(2001.1.16)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01.6)
 - 건설환경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 건설환경중장기기본계획(안) 관계부처협의 및 방침결정(2001.4)
 -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시행계획 작성지침 마련 시달(2001.6)
 - 건설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의무화
 - 건설환경관리비 세부산정기준 작성 시달(2001.6)
 - 사업의 타당성조사 등 초기단계에 환경성 조사·검토 강화
 - 환경성조사·검토 표준화 절차 및 작성지침 마련 시달(2001.10)

4. 투자계획(연구비 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2,600	1,000	1,000	600				
공공건설사업의 환경성 확보를 위한 절차 및 지침 연구	400	200	100	100				
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 기술개발	600	200	200	200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200	100	100					
건설공사의 생애주기비용(LCC) 평가방안 연구	200	100	100					
폐콘크리트로부터 재생골재의 품질향상기술 및 재활용기술개발	700	200	200	300				
친환경 요인을 고려한 SOC공사에 시공간적 3차원 통합영향평가 연구	500	200	300					

단위사업명	3-1-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정비		
작성기관	환경부(자연정책과, 자연생태과, 자연공원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국내 자연환경현황 및 여건 분석, 식생·생태계 조사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대책 마련
 -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추진
- 2003년까지 전 국토를 생태적 가치에 따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를 작성」, 자연친화적 국토이용의 과학적 기반 마련
- 「국립공원 관리기본계획(Park Korea 21)」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국립공원(國立公園)의 자연친화적 이용 및 관리체계 확립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21세기 자연보전정책 발전방향 마련 추진
 - 각종 국내외 정책방향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발전방향 제시
 - 21세기 자연환경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2000.8~2001.3)
- 생태자연도 작성 추진
 - 전국 자연환경조사가 완료('97~'99년, 전국의 42%)된 지역에 대하여 「생태자연도」 작성 완료(2000.12)
 - 「생태자연도」 작성에 포함될 특정 생물종 선정 확정(2000.6)
 - 전국생태자연도 완성이전까지 활용할 기초생태자연도 작성 추진

-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려한 자연경관지이며, 자연생태계 보고임
 - 산악공원 16개소, 해상 2개소, 해안 1개소, 사적 1개소 등 총 20개소 6,473km²(전국토의 6.5%, 육지면적대비 3.8%)

【 문제점 】

-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국토의 난개발에 따른 자연생태계 파괴 가속화
 -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생태계 관리는 아직도 사후적, 수동적이어서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이 어려움
-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자연환경분야 협의·평가지 자연환경의 훼손을 판단할 수 있는 자연환경종합평가기준 미비
- 국립공원은 보전보다는 이용위주의 공원관리,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의 이해와 협조체계 미비
 - 공원관리가 개발과 이용위주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아직도 관광유원지화 경향
 - 공원내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의 생활불편 및 재산상의 불이익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공원관리행정에 불만

3. 실천계획

- 21세기 자연환경정책 발전방안 마련
 - 전국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
 - 자연보전과 시책의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작성, 관련부처 및 지자체 시달
 - 자연환경보전 지침 작성

□ 생태자연도 작성 추진

- 자연환경조사, 식생도, 동식물분포도, 임상도를 종합하여 등급화한 생태자연도 작성('00~'03)
- 기초생태자연도의 작성 추진
 - 전국생태자연도 완성이전(2003년)까지 국토의 난개발 방지, 국토 이용체계 개편시 의견제시 등 자연환경보전지침으로 활용

□ 자연친화적인 국립공원 관리 추진

-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공원자원 보전·관리 강화
- 생태탐방, 분산이용 등을 통한 자연탐방지로서의 기능 확대
- 공원보전 기능강화 및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공원제도 개선
- 친환경적 공원시설 설치·관리

4.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이후	
국립공원사업	28,505	800	1,100	1,600	2,200	300	19,805	

단위사업명	3-1-3-①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대책(생태계보전·관리)		
작성기관	환경부(자연정책과, 자연공원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국립공원」, 「특정도서」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 지정 확대 및 관리방안 강구
- 도시지역 소생태계(Biotop) 조성 등 훼손된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 추진
- 동강(東江)댐 건설 백지화에 따라 동강댐 주변지역 우수 생태계를 보전·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생태계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대한 보전지역 지정 확대 및 관리 강화
 - 제주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지역 지정, 독도 등 48개 도서의 특정도서 지정
 - 대암산 용늪 등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일반인 출입금지 등 훼손생태계 복원 추진
 - 사유지 매입, 감시원 배치 등 생태계 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 추진
- 국립공원구역의 합리적 조정
 -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기준안 확정 : '99.7월
 - 2000.6월말에 시안을 발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및 조정하기 위해 구역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

□ 동강환경보전대책 추진

- 댐건설 백지화 : 환경의 날 대통령 선언('00.6.5), 국무총리실 발표 (6.13)
- 동강보전을 위한 “동강환경보전종합대책” 연구 추진(강원도)
- 민간단체 결성 : 내셔널트러스트운동('00.8), 동강의제21('00.12)

【 문제점 】

□ 생태계보전지역 등 생태계우수지역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어려움

-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시 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
- 보호지역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유지 매입 및 관리시설 부족과 전문관리인력 확보 어려움
- 보전지역에 대한 탐방객 등 이용객 증가로 급격한 훼손 우려

□ 국립공원구역조정 추진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 제한 해제 요구 과다

- 국립공원구역조정시안에 대하여 관련 주민의 재산권 제한 등으로 인한 불만 및 주민요구 과다

□ 동강지역의 댐 건설 백지화에 따른 보상대책 요구, 동강보전대책 추진에 대한 주민·행락객 등의 자율적인 참여 및 협조 미흡

3. 실천계획

□ 생태계우수지역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 강화

- 생태계우수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확대하여 생태계보전지역·습지 보호지역·특정도서로 추가 지정
- 보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대책 마련, 복원공사 실시
- 연안지역중 생태계가 우수한 사구 등에 대한 보전대책 추진
- 천수만 등 우수한 자연환경의 보전·관리대책 마련

□ 국립공원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 공원능선 반대편 등 자원성이 높은 지역중 국·공유지 위주 신규 편입
- 경계부에 위치한 대규모 취락 등을 해제하여 주민불편 해소
- 공원계획상 불필요한 시설계획을 해제하고 자연보존지구를 확대하며 배후도시가 발달된 집단시설지구 축소

□ 도시 소생태계(Biotop) 확충

- 국토 자연 생태축과 연결되도록 도시 녹지축 및 생물서식지(Biotop) 조성방안 마련
- 옥상·벽면 녹화 확대 보급대책 추진
- 생태연못 조성, 생태연못 및 도시 소생태계 조성 가이드라인 작성·보급

□ 동강환경보전대책 추진

- 동강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관리하는 등 환경보전대책 수립 추진
 - 연구결과에 따라 “동강보전 종합대책” 수립(강원도 추진)
 - 하수처리시설 등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 래프팅 및 탐방객 통제 관리, 오염행위 단속
 -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연환경 훼손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 실시
- 민간단체 동강 환경보전 활동 지원
 - “내셔널트러스트운동”과 “동강의제21” 활동 적극 지원

단위사업명	3-1-3-②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대책(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작성기관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협조기관	환경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습지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보호지역 지정 확대 및 관리
 - 갯벌생태계 조사결과('99~'03)에 기초하여 2001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2001년 : 강화도 남단갯벌 등 3개소)
 - 해양생태계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2002년부터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추진(※ 2002년 : 제주도 문섬 등)
- 자연환경 및 생태·문화유적지와 지역적 특성을 접목시킨 생태·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
 - 갯벌생태관광 및 해양생태관광 모델을 개발·운영하여 보호지역 인근 주민의 자발적 보호활동 유도 및 자연자원을 주민소득으로 연결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갯벌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해양생물의 서식지로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한 핵심 지역
 - 어류 200여종, 갑각류 250여종, 연체동물 200여종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갯벌에 서식
 - 연안생물의 60%이상이 해안생태계에서 생육·번식하며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수조류 170여종 중 120여종이 연안습지에서 발견

- 수산물 남획, 연안개발, 육상오염원의 유입 등으로 인해 수산자원 고갈 등 해양생태계에 위협
 - 각종 매립·간척 등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난 10여년간 약 810km²의 갯벌이 훼손
 - ※ '98년 현재 갯벌면적 : 2,393km²
 - 육상기인 오염원은 해양오염의 주원인(80%)

【 문제점 】

- 기초조사자료 미흡
 - 해양에 관한 관심과 투자부족으로 갯벌 등 해양생태계에 관한 기초 연구성과 미흡
 - 갯벌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99년부터 추진 중
 - 해양생태계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조사 부재
 -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자료확보에 어려움
- 지역주민들의 반대
 - 각종 보호지역 지정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 보호지역 지정시 주민참여 결여, 보호지역에 대한 오해, 보호지역 지정으로 발생하는 재산권 손실에 대한 낮은 보상 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에의 편입 반대
 -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와 적극적인 홍보 필요

3. 실천계획

- 갯벌생태계 기초조사와 습지보호지역지정
 - 개요
 - 기간 : 5개년('99 ~ '03)

- 예산 : 8,200백만원
- 대상 : 전국 갯벌을 단위구역으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조사

○ 주요내용

- 생물상, 지질학적 특성 등 갯벌생태계 기초조사
- 갯벌 지리정보시스템(GIS) D/B 구축 및 갯벌생태지도 제작
- 갯벌의 기능, 환경교육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해양생태계 조사와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지정

○ 개요

- 기간 : 5개년(`02~`06)
- 예산 : 2,500백만원
- 대상 : 기존연구결과 분석 후 후보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조사

○ 주요내용

- 기존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후보지역 선정
- 후보지역에 대한 집중조사(생물종 분포 등)
-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지정
- 장기모니터링 및 D/B 구축·운영

□ 습지보호·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반발 해소

- 습지보호·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추진시 사전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주민 지자체 의견 수렴
- 습지보호·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 규정 마련(습지보전법 개정 추진)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10,700	600	4,300	4,300	500	500	500
갯벌생태계 조사	8,200	600	3,800	3,800			
해양생태계 조사	2,500	-	500	500	500	500	500

단위사업명	3-1-4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성 검토 강화		
작성기관	환경부(국토환경보전과)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해양보전과)	협조기관	자연보전국, 지자체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난개발의 방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정계획에 대하여 계획의 초기단계에 서부터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성을 고려토록 함

친환경적 개발 도모

-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산림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환경민감지역내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인·허가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무화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사전환경성 검토의 법제화

- 종전 총리훈령 및 개별법에 의한 사전협의제도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법제화
 - '99.12.31 법률 개정, '00.8.17 시행령 개정
 - 39개 행정계획 및 20개 환경민감지역내의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 협의기관 및 기간 등을 정함

□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반구축

-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에 따른 인력 확충
 - 환경부 본부에 국토환경보전과 신설('00.10.16, 정원 9명)
- 사전환경성검토전문위원회 설치·운영
 - 사전환경성검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00.8.21)
 - 본부 및 7개 지방환경청에 환경·도시계획·토목건축·생태분야의 학계·연구기관·환경단체 등 관계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
 - 사전환경성검토서 검토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자문
- 사전환경성 검토 업무편람 작성 및 관계자 교육 실시
 - 사전환경성 검토절차, 검토방법 등 담당공무원이 알아야 할 내용을 수록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청, 개발부처 등 유관기관에 배포('00.8.25)
 -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청, 개발부처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00.8.25 ~ 8.30)

【 문제점 】

□ 담당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 부족

- 지방환경청의 담당인력은 청당 1~2명으로 업무량(청당 연 250건 예상)에 비해 부족
- 환경·도시계획 및 생태분야 등에 관한 종합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음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일부누락

- 온천지구 지정, 산업입지 공급계획 등 일부 행정계획,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내 개발사업, 산림법상 공익임지의 산림에서의 5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사업이 대상에서 제외

□ 실효성 확보수단의 결여

- 사전환경성 검토 미협의를, 협의의견 미이행, 사전환경성검토서 부실작성 등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등 제재수단이 없음

3. 실천계획

□ 담당인력의 확충 및 전문교육과정 신설

- 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 전담부서(국토환경관리과) 신설
- 환경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사전환경성검토반을 신설하고, 지방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강화(연 2회, 1주)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확대

-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는 검토대상에 새로 추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
 - 온천지구의 지정, 산업입지 공급계획, 녹지지역내 개발사업, 공익입지의 산림에서의 3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 등

□ 사전환경성검토의 실효성 확보

- 사전환경성 검토 이행실태 정기점검
 - 분기 1회 정기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언론 등을 통해 공개
- 개발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이행실태 감사강화
- 장기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개별법에 의한 사전협의 등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통합하고,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 마련

□ 사전환경성검토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 사전환경성검토전문위원회의 확대 개편

-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관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추가위촉(전문위원회별 10명 내외)
 - 사전환경성검토전문위원회 합동 토론회 정례화
 - 상·하반기 각 1회(5월, 11월)
 - 사전환경성 검토사례, 제도의 발전방안 등 위원회간 정보교류 활성화
 - 현장확인 강화
 - 주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무원, 전문위원 합동으로 현지확인 실시
- 해역이용 협의시 환경성 검토를 위한 제도 강화
-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 내용 개선·정비
 - 사업지의 선정시 해역이용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의시기의 조정
 - 해역이용협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개별법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와 동등한 내용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명시
 -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지침서 개발 및 관련 담당자 교육
 - ※ 제도개선을 위한 해역이용 협의기준 및 절차 연구용역 추진(2000.11 ~ 2001.10)

단위사업명	3-1-5 전략환경평가제도의 확대		
작성기관	환경부(국토환경보전과)	협조기관	환경평가과
사업기간	계속사업(장기검토과제)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개념 정립
 - Project 이전단계인 Policy, Plan, Program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의 개념을 정립
- 사전예방기능의 강화로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연계강화로 사전예방정책의 효율성 제고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사전환경성 검토의 법제화
 - 종전 총리훈령 및 개별법에 의한 사전협의제도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법제화('99. 12. 31 법률 개정, '00. 8. 17 시행령 개정)
 - 39개 행정계획에 대하여 Project 이전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토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개념을 도입
 - 개발제한구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등 20개 환경민감지역내의 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성을 검토토록 하는 약식환경평가 개념을 도입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정

- 환경, 교통, 재해, 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을 주축으로 통합법 제정('99.12.31 통합법 제정, '00.12.31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 동일한 환경영향권역내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 부실·허위평가서 작성 근절장치 마련
 - 사후 환경관리 강화

□ 전략환경평가 기법개발 및 중점평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수행('00.4 ~ 9월, 용역비 4천만원)
 - 전략환경평가,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의 차이점
 - 전략환경평가서 작성주체,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 제도운영 system 구축
 - 전략환경평가서 작성방법 및 검토방법 등에 대한 지침
 -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 운영실태 및 사례 조사 등

【 문제점 】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혼합적 성격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전략환경평가(행정계획)와 약식환경영향평가(소규모 개발사업)가 혼합된 형태
- 전략환경평가의 확실한 개념이 정립되지 아니하여 본격적인 전략환경평가의 추진에 한계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이원적 법체계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교통·재해등영향평가법 등 각각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어 연계 운영에 한계

3. 실천계획

□ 전략환경평가개념의 정립, 평가기법 및 평가기준의 개발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중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전략환경평가대상, 환경영향평가대상, 약식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분류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대상 행정계획 및 개별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행정계획)은 전략환경평가의 대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은 약식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재분류
-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략환경평가서 작성방법, 검토항목, 검토방법 및 검토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발·보급

□ 법체계의 일원화

- 장기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규정을 통합 영향평가법으로 일원화
 -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약식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상호 연계 운영

3-2 지역별 자연생태 특성을 고려한 환경관리

단위사업명	3-2-1-① 도시 토지이용의 생태효율성 제고(친환경적 도시 계획 유도)		
작성기관	환경부(국토환경보전과)	협조기관	각 실·국, 지방청
사업기간	2000~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친환경적 도시계획 수립 지원
 - 도시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도시계획 수립방안」을 연구하여 보급
 -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개발에 우선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토지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
- 도시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 강화
 - 도시계획수립 및 환경성검토 협의시 자연지형, 녹지,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 경관 등을 최대한 보전
 - 자연친화형, 직(職)·주(住) 근접형, 자원절약과 재이용형의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사업 적극 유도
-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조성 유도
 -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하여 폐자원(폐기물, 폐열, 폐수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도시계획제도의 전면적인 개편('99.9~'00.9, 건교부 : 환경부 협조)

- 도시계획 수립시 환경성검토제 도입, 관계행정기관간 협의절차 마련, 도시계획위원회에 민간환경전문가 참여 등 도시계획법령 개정
 - 도시계획 수립시 환경성검토와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추가 등 도시계획 수립관련 지침보완 등 환경적 측면 대폭 보강
- 도시계획 수립시 관계행정기관간 협의(도시계획법)
- 건교부장관이 승인·결정하는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간에, 시·도지사가 승인·결정하는 사항은 지방환경관서 등과 사전 협의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관계행정기관간 협의(산업법)
- 협의방법은 도시계획 수립시의 경우와 같음

【 문제점 】

- 도시계획에 대한 환경적 건전성확보 기반 미흡
- 최근 도시계획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으나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수립 및 환경성검토에 관한 경험·정보·전문성 등이 부족한 실정
 - 토지의 환경적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이 없고, 도시개발압력 가중으로 녹지, 하천 등 자연생태계 훼손 가속화 우려
- 토지공급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 그간 산업단지는 토지공급과 분양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열, 폐수 등의 자원화·감량화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미흡

3. 실천계획

- 친환경적 도시계획수립 지원(2000 ~ 2001)

- 친환경적 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보급 : 2001.1월
- 토지의 환경적 가치평가기준 마련 연구 : 2000.12 ~ 2001.6월
- 연구결과를 지자체와 건교부(도시계획수립기관), 지방환경관서(환경성검토 협의기관) 등에 보급함으로써 친환경적 도시계획수립을 지원

□ 도시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 강화(2000 ~ 계속)

- 자연지형, 녹지, 하천 등 자연생태계 교란·훼손 최소화 도모
-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의 보전, 공원·녹지체계 및 물순환체계 구축
- 토지자원과 에너지 절약형 토지이용 도모(職·住 근접배치,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열 재활용, 에너지 집단공급 등)
- 친환경적 도시개발사업 도모(자연친화적 하천정비, 경관을 고려한 건축, 개발밀도 조정 등)

□ 생태산업단지 조성 유도(2000 ~ 계획)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입주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열, 폐수 등을 자원화, 순환 이용하는 방안 고려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협의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조성·운영을 유도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0	2001	비 고
합 계	55	27	28	
친환경적 도시계획수립방안 연구	27	27		
토지의 환경적 가치평가 기준 연구	28		28	

단위사업명	3-2-1-② 도시 토지이용의 생태효율성 제고(생태도시 조성)		
작성기관	건설교통부(도시정책과)	협조기관	환경부
사업기간	1999~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생태적으로 건전한 도시의 모델 제시
-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계획기준 및 기술개발
-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 현황 및 문제점

- 종전에는 물량공급 위주의 무절제한 난개발로 인해 생태계의 훼손 초래
- 앞으로의 도시개발과 관리는 선계획-후개발의 원칙하에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론은 있으나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

3. 실천계획

- 생태도시조성 핵심기술 개발
 - 기존 도시의 생태적 문제점 파악
 - 생태도시 조성 및 평가를 위한 계획지표의 개발
 -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기준 정비
 -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및 관리기법 제시
- 생태도시조성 협력체계 구축
 - 도시의 계획적 개발·관리에 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참여 확대

-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도시평가를 실시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제도의 활성화
-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시범생태도시」를 지정·육성
- OECD등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도시분야 교류협력 확대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생태도시조성 핵심기술개발	550	350	200				
시범생태도시 지정·육성	(미정)						

단위사업명	3-2-2-① 농지 및 산림 보전(농지 및 산림의 환경성검토 강화)		
작성기관	환경부(국토환경보전과)	협조기관	자연보전국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농지 및 산지의 무분별한 전용의 최소화
 - 농지 및 산지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성 검토의 강화 및 내실화
- 개발대상 농지 및 산지의 친환경적 개발 도모
 - 농지 및 산지의 친환경적 개발 유도를 위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방법 및 기준의 개발 보급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농지 및 산지내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
 - 환경정책기본법령을 개정하여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산지에서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인·허가 또는 승인전에 환경성을 검토하도록 법제화
 - 농림지역내 7,500㎡ 이상, 준농림지역내 10,000㎡ 이상, 공익 임지내 10,000㎡ 이상, 기타 임지내 50,000㎡ 이상인 개발사업 (민간부문의 사업도 포함)

【 문제점 】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범위의 제한
 - 공익임지외의 산지에서의 개발사업 중 사업계획면적이 50,000m² 이상인 것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 '98년부터 '00.9월까지 허가받은 1,141건의 채석 또는 토사채취사업 중 사업면적 50,000m² 미만인 사업이 1,026건(전체의 89.9%)

- 개발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시 원상복구 불가능
 - 대부분 노천개발로 추진되는 채석, 토사채취사업의 경우 산림과 자연경관의 훼손이 심각하나 수직절개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3. 실천계획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범위 확대
 - 공익임지외의 산림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면적을 현행 50,000m² 이상에서 30,000m² 이상으로 확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 : '00.6월)

- 채광·채석 허가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조
 - 산림청과 협의하여 산림법의 관련규정 개정
 - 산림형질변경 허가면적을 30,000m² 이상으로 상향조정
 - 채석지의 계단식 복구, 조림 등 친환경적 복구기준 마련
 - 복구비 예치금의 현실화(ha당 3천만원 → 8천만원)

- 사전환경성검토의 내실화

- 농지 및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방법 및 기준의 마련
 -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수변구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억제
 - 개발대상지역도 산림축 및 자연생태계 단절여부 등 환경과 경관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면적으로 제한
- 협의의견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엄중조치 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단위사업명	3-2-2-② 농지 및 산림 보전(농지보전제도 강화)		
작성기관	농림부(농지과)	협조기관	건설교통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농지·산림의 보전 및 무분별한 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용 요건을 강화하고 환경성 검토를 내실화
- 농지 및 산지를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개발대상 지역도 경관·수계·동물 서식공간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개발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99년말 농지면적 1,899천ha중 논면적은 1,153천ha(60.7%), 밭 면적은 746천ha(39.3%)로서, '68년 2,319천ha 이후 420천ha 감소
 - 국토면적 9,943천ha중 농지는 1,899천ha(19%), 산림은 6,430천ha(65%), 기타 하천과 도로·주택 등 도시적 용도의 토지는 1,614천ha(16%)를 차지
- 농업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농림지역)내 농지는 1,008천ha(53%), 농업진흥지역 밖(준농림지역, 도시지역 등) 농지는 891천ha(47%)

【 문제점 】

- 준농림지역 등 개발가능 지역에 전체농지의 약 절반이 위치해 있어 보전에 어려움 발생
 - 준농림지역 등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개발유보지로 인식하여 개발 압력 증대
 - 지방자치단체 개발욕구 및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이해관계 일치로 농지에 대한 개발수요 증대

-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의 존재 등으로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이 여전히 많은 수준
 - 최근 5년간 농지는 매년 약 27천ha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3. 실천계획

- 국토이용체계 개편시 준농림지역·도시지역내 농지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건설교통부 협조사항)
 - 용도지역은 토지의 기능·기능 적성에 따라 국민이 알기 쉽게 구분
 - 준농림지역내 농지는 가급적 보전용도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
 - 국토관리 원칙의 하나로 국토환경보전 및 국민식량의 안정적 기반인 농지의 보전원칙을 국토기본법에 규정

- 농지의 타용도 전용 최대한 억제
 - 농업환경훼손 등 농지전용심사 강화
 - 농지 잠식이 큰 도로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실시하여 기존도로, 농지외곽 활용 유도 등 농업환경보전 강화
 - 음식점·숙박시설 등 농촌경관 훼손시설 설치시 심사 강화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활성화
 - 신규 경지정리하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고,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감소되는 면적이상의 농업진흥지역 대체 지정
 - 농지의 불법전용 단속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 시·도별 특별교차단속 실시 : 매년 1회이상 실시
- 농지보전에 대한 국민적 이해 확산
- 농지관리위원, 농업기반공사, 농협 등 농업관련기관의 농지보전 역할 활성화
 - 농지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이해 확산

단위사업명	3-2-2-③ 농지 및 산림 보전(산림보전제도 강화)		
작성기관	산림청(산지관리과)	협조기관	건설교통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
 - 무분별한 산지개발에 따른 환경피해 최소화
 - 산지의 타용도 전용억제 대책 강구

- 채광·채석제도개선
 - 채광·채석허가 및 사후관리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산림법상 산지개발 인·허가(개별법상 협의포함)는 '80년부터 도입된 산지이용체계상의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에 따라 차등 적용
 - 보전임지 : 임업생산, 공익기능 증진목적으로 최대한 보전목적 (4,977천ha, 77%)
 - 허가체계 → “보전임지 전용허가(협의)”
 - 준보전임지 : 임업생산 등 이외 산업용지에 공여목적으로 인·허가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1,455천ha, 23%)
 - 허가체계 → “형질변경허가”

□ 인구증가·산업발전에 따라 산지의 타용도 전용은 증가 추세

〈 연평균 산지전용 실태('94~'99 평균) 〉

(단위 : ha)

구 분	계	농 지	초 지	택 지	공 장	도 로	골프장 (스키장)	기 타
계	8,028 (100%)	793	419	1,103 (14%)	1,041 (13%)	1,670 (21%)	574	2,428
보전임지	2,519 (31%)	229	214	74	200	663	299	840
준보전임지	5,509 (69%)	564	205	1,029	841	1,007	275	1,588

□ 채광·채석현황

┌ 석회석 : 허가면적(3,035ha), 광산(254개소)

└ 석 재 : 허가면적(3,131ha), 채석장(772개소)

【 문제점 】

□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설정과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개발 허용되는 등 제도 불비

-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서는 산림종류, 산림상태, 토질, 경사, 수원함양 및 재해위험 등에 대한 명확한 인·허가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나 현재 이러한 제도가 없음

※ 특히 수도권지역의 아파트건립, 택지개발 등으로 최근 난개발 문제 초래

- 산지는 농지 등에 비해 지가가 저렴하여 일시에 많은 면적이 개발용이(연평균 8,028ha의 산림면적감소, 10년이면 산림면적 6,432천ha의 1.2%씩 감소)

□ 채광·채석은 산업원료로서 공급이 불가피하나 대부분 노천채취로 경

관혜손을 수반하는 공해산업에 해당

- 채광의 경우 별도의 형질변경허가 기준이 없어 임상에 관계없이 채광하는 사례
- 부실채석업체가 많아 공사중단 상태로(142개소, 전체의 18%) 경관저해 우려
- 단위면적당 복구비 부족으로 경관복구에 어려움

3. 실천계획

□ 산지전용의 타당성검토 제도도입

- 산지전용허가(타 법률 등에 의한 협의포함)를 하기 전에 평가인자(경사·토질·임상·재해위험도·상수원과의 이격거리 등)에 의한 전용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 일정면적 이상의 산림을 전용하는 경우에 사업별 기준에 따라 산림·토목분야 전문가가 검토토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 또는 산림청훈령 등에 정하도록 함
- 추진일정 : 2001년 상반기에 산림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2년 시행

□ 새로운 개발 수요는 가급적 준보전임지에서 충당하고 보전임지 전용은 최대한 억제

- 임업생산, 공익기능증진 목적의 보전임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개발용지에 편입되는 보전임지 비율을 당해 시·군 산림면적의 보전임지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
 - 2001년 상반기 산림청훈령 개정(보전임지관리및대체조림비등의 부과에관한규정)

□ 백두대간 마루금 주변 등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 확대

- 대상 : 명승지·유적지·유원지 및 백두대간 마루금 주변 등
- 형질변경 제한지역에 대한 고시권자 상향 조정으로 형질변경 억제 (기 조치)
 - 시장·군수 → 시·도지사('99.8.6 산림법시행령 개정)

□ 채광·채석허가 및 사후관리 강화

- 형질변경허가 기준이 없어 울창한 산림에서도 채광이 가능하고 채광 행위는 일반형질변경과 달리 채석과 같은 유형의 산림훼손임에도 채석허가 제한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 수직절개면 형성으로 채석 후 녹화가 어려워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채광을 위한 형질변경기준 및 채석허가기준을 마련
 - 산림형질변경허가기준마련(산림법 제90조제8항 개정)
 - 채석허가기준마련(산림법 제90조의2 제6항 개정)
 - ※ 시행일 : 2001년 상반기
- 사후관리강화
 - 복구설계승인기준 마련으로 경관복구 가능
 - ha당 복구비 예치기준 상향(ha당 평균 4,500만원 → 8,000만원 내외)

단위사업명	3-2-3-① 생태관광의 활성화(생태관광보호시설 조성 등 생태관광 활성화 체계 마련)		
작성기관	문화관광부(관광개발과), 환경부(자연정책과)	협조기관	지자체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생태관광(Eco-Tourism) 활성화
 - 국립공원, 갯벌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적지를 함께 활용하는 환경·문화 연계 관광 활성화
 - 관광자원 조성시 친환경적 개발원칙을 정립하고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체험 환경교육 현장으로 활용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전국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생태계 자원 풍부
 - 철새탐조, 갯벌 및 바다속, 동굴, 동·식물 군락지 등
-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
 - 정부는 개발비용 보조지원 및 자문

【 문제점 】

- 생태계 자원에 대한 관광자원화 부족
 -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인식 미약 및 개발기간 부족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광개발 마인드 부족
 -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단순한 지역개발 일환으로 인식
 - 가시적 개발성과에 집착하여 환경을 고려한 개발의식 부재

- 국민의 생태 및 환경자원에 대한 보호의식 미약
 - 동·식물 군락지 황폐화(일시방문) 등

3. 실천계획

- 관광개발 예산의 생태자원 보호시설 조성에 대한 우선 지원
 - 동·식물 보호시설 및 생태자원 주변의 공공편익시설 조성 등

- 생태관광자원개발 예산의 점진적 확대
 -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위주 예산편성 탈피
 - 생태 및 레포츠관광자원사업의 개발과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 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 담당공무원 교육강화 및 생태보호 홍보
 - 연찬회 및 수시 회의개최 등

- 친환경적 생태관광 도입을 위한 지침마련 및 생태관광 또는 생태탐방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
 - 생태관광의 개념 및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관광 유형 및 실천프로그램 개발

4.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강화 갯벌관광 개발	2,016	300					
하의 갯벌체험공원 조성	4,500	300					
시흥 하버갤러리 건립	52,810	1,200					
영양 반딧불동굴 조성	4,500	900					
철원 철새탐조관광 개발	2,500	500					

단위사업명	3-2-3-② 생태관광의 활성화(해양생태관광 활성화)		
작성기관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협조기관	기획예산처 등
사업기간	2001~2005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자연보전을 통해 생태관광자원의 자연성 확보, 환경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 지역참여로 경제적 편익도모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소득수준 향상, 갯벌의 유용성 등에 대한 재인식으로 갯벌 등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관광이 활성화

【 문제점 】

- 갯벌의 수용력, 해양생물보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생태체험관광이 성행
 - 보고 즐기는 관광이 아닌 채취·포획하는 대량관광으로 생태계 훼손
- 습지보호지역, 생태계보존지역 등의 지정으로 발생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대체할 수 있는 소득원 확보 필요

3. 실천계획

- 생태관광모델 개발 및 지침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기타 습지지역에서 생태관광의 추진시 생태계 보전을 도모할 수 있는 모델 제시
 - 생태관광 관련주체(행정당국, 여행객, 여행업체 등)에 대한 지침서 작성

- 민간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민간단체 재정 및 교육자료 지원

- 습지보호지역 및 보전시설 이용료 징수제도 및 습지생태안내인제도 도입
 - 이용료징수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습지보전지역 및 시설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활용
 - 생태관광을 추진하는 경우 관광가이드와 습지생태계 보전을 계도할 수 있도록 습지생태안내인제도 도입

-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습지보호시설 설치 등	510	10	50	100	150	200	-

단위사업명	3-2-3-③ 생태관광의 활성화(산림생태 관광 활성화)		
작성기관	산림청(국유림경영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생태관광(Eco-tourism) 활성화
- 산촌종합개발 사업 수행시 친환경적 개발원칙을 정립하고, 생태산촌 탐방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산림체험 및 환경교육의 현장으로 활용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낙후된 산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지자체 및 산촌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또한, 산촌종합개발 사업지역의 인구 및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어 산촌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문제점 】

- 산촌의 생활환경에는 기여하였으나 소득증진에는 다소 미흡
-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발방향이 뚜렷하지 않아 마을별 특성을 찾아보기 어려움.
- 산촌의 수려한 산림, 지역문화 등 자연친화적인 자원을 활용한 도시와의 교류 증진사업 등 추진이 미흡

3. 실천계획

- 녹색관광 개념을 산촌활성화 전략으로 도입·추진
 - 도시와 산촌마을간 교류사업 활성화
 - 도시수요자와 산촌공급자간 DB 구축 등 상호 연결, 산촌의 청정 농림산물에 대한 직거래 체제 구축
 - 생태산촌 체험관광, 텃밭 가꾸기, 아름다운 산촌사진전 등 개최

- 산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친환경적 시설 설치 및 유기농업 확대 보급
 - 생활환경정비 사업은 자연친화형 하천정비 및 수초 등 자연정화시설의 설치 유도
 - 산촌의 특성을 살리고 문화와 전통을 알릴 수 있는 너와집, 토담집 등 전통주택개량 사업의 도입
 - 산촌의 랜드마크 형성 작업, 민박시설의 확충 등
 - 산림의 대규모 훼손을 지양하고 소규모 자연친화적 시설 설치 권장
 - 산촌농업은 저농약, 저비료를 투입하는 유기농업 적극 지원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비고 (2006~)
산촌종합개발	150,700	20,500	28,000	28,000	32,200	42,000	계속

3-3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현

단위사업명	3-3-1-① 접경지역 환경보전대책(접경지역 자연생태계 보전)		
작성기관	환경부(자연정책과)	협조기관	통일부(북한인권환경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146종의 희귀 동식물을 포함 약 2,8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남북 접경지역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관리대책 수립·시행
 - 75.5%가 산림인 비무장지대의 산림보호와 야생 동식물 보호를 연계한 환경관리대책 추진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접경지역지원법(2000.1) 및 동법 시행령(2000.8) 제정·공포
- 접경지역 환경보전대책 수립(2000.9)
 - 자연환경 및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별 구분 및 관리방안, 정비지역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등
-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지침(안)에 대한 검토(2000.11)
 - 접경지역의 종합적 이용과 주민복지 증진, 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기본계획

【 문제점 】

- 남북교류협력의 완충적 역할과 전초지역으로서 입지적 중요성 증대 및 지원시책으로 개발 가속화 우려
 - 경의선, 경원선 등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축의 복원과 남북간 자원의 공동 이용 등 동북아 관광거점 및 남북협력지역으로 개발 증대
 - 국고보조금 인상 및 조세 감면,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택지·산업 단지 조성 가속화 예상

- 자연생태계 보전 등 환경적 측면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산업 육성간의 갈등 심화
 - 접경지역을 백두대간과 연계하여 동일 생태권역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 우려
 -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엄격한 토지이용상의 규제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과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심리 욕구 증대

3. 실천계획

- 접경지역지원법 관련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대책 수립
 - 접경지역에 대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접경지역 종합계획(행자부), 연차별 사업계획(시·도) 수립에 반영

- 자연환경조사 결과에 따른 생태자연도 작성
 - 2000년 접경지역 자연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 권역의 구분 관리
 - 보전지역(I 등급), 준보전지역(II 등급), 정비지역(III 등급)

- 향후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비무장지대 자연생태계 공동조사 및 남북공동협력 제의

단위사업명	3-3-1-② 접경지역 환경보전대책(접경지역 산림보전)		
작성기관	산림청(임업연구원 산림생태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비무장지대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수립
 -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내 생물의 종 구성과 입지환경 파악
 - 통일 후 비무장지대 토지이용 및 산림자원 보전·관리방안 수립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비무장지대 생태계조사 실시
 - 대상지역 :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91천ha) 중 남측지역
 - 조사기간 : 1996 ~ 2000(5개년간)
 - 조사분야 : 7개 분야
 - 식물상, 입지환경, 산림자원, 곤충, 야생동물, 미생물, 종합분석
 - 조사계획 대 실적

구분	계 획	조 사 실 적						2000
		소 계	'95	'96	'97	'98	'99	
조사지역			전지역 개략조사	중동부 산악	중서부 내륙	한강하구· 임진강	동부산악 및 해안	보완조사 종합보고
면 적 (천ha)	91	80	-	20	20	20	20	11

- 주요조사내역
 - '96년도 : 한국특산식물 517종, 천연기념물 59종
 - '97년도 : 희귀식물 550종, 천연기념물 85종
 - '98년도 : 한국희귀식물 500종, 멸종위기 10종
 - '99년도 : 세계적 희귀식물 900종, 천연기념물 182종

【 문제점 】

- 비무장지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
 - 핵심지역에 대한 남북 공동 학술조사 필요
 - 비무장지대 조사시 부처간 역할 분담 조정 필요

3. 실천계획

- 종합대책 수립
 - 조사지역 보완조사 및 종합보고서 작성
 - 동 자료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 남북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보전대책 마련

단위사업명	3-3-2-① 백두대간 복원·관리대책(자연생태계 복원·관리)		
작성기관	환경부(자연정책과)	협조기관	통일부(북한인권환경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백두대간 『생태축』 보호 및 복원계획 마련('99.7)
 - 백두대간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양측 수평거리 700m를 생태축으로 지정
 - 생태축에 대하여는 각종 개발사업 제한(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 백두대간 보전대책 마련을 위한 3개년(2000~2002)연구사업 실시
 -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인문·지리적 사항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임상도·GIS 등을 이용하여 관리대상 범위 설정(1차년도, 100백만원)
-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등 훼손된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 지리산 및 오대산에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시범사업 실시
 - 국도 및 지방도의 경우 관계부처에서 설치토록 협의(건교부, 행자부)

【 문제점 】

-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범위와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 미흡
 - 백두대간의 개념 및 관리대상 범위의 설정,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제정 등 제도적 장치 필요

- 도로 및 임도 개설로 생태계 단절 및 야생동·식물 서식지 단편화
 - 생태계를 단절하는 28개소의 도로와 약 80개의 임업도로 개설
- 최근 남북교류사업 등으로 인한 개발계획(대규모 관광·위락단지 조성 등) 증대로 백두대간 개발압력 가중
 - 설악-금강권 관광개발사업(문화관광부, 강원도 등) 수립·용역 추진 등

3. 실천계획

- 현재 실시중인 전국자연환경기초조사를 백두대간 지역에 대하여 우선 실시
 - 자연환경기초조사('01.12) 및 생태자연도 작성('02) 추진
 -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리산, 설악산 등에 대하여는 정밀조사 추진 (2001~2002)
-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차별 연구용역 실시
 - 관리범위 설정, 권역별 관리계획 수립,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 관계부처와 협의, 훼손된 생태계 복원 추진
 -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백두대간에 대한 복원 사업 추진	25,000	-	2,000	3,000	5,000	5,000	10,000

단위사업명	3-3-2-② 백두대간 복원·관리대책(산림 복원·관리)		
작성기관	산림청(산림보호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보전 강화
 - 산림의 타용도 전용억제
 - 현행 산림법상 산림유전자원보호림(천연보호림) 지정확대
 - 마루금 주변 산림을 산림형질변경제한 구역으로 추가 고시
 - 훼손·단절된 산림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적 경영 강화
 - 대규모 산림훼손지 또는 개발중지 된 곳의 산림복구 복원 적극·추진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산악단체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지리인식체계로서 백두대간의 존재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됨
-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와 보전의 필요성이 강조됨

【 문제점 】

- 백두대간의 효율적 보전·관리 미흡
 - 백두대간의 범위 등 실체규명이 미흡한 단계
 - 일부 지역은 별도로 구역을 지정 개별적으로 관리하여 보전 협력 부족
 - ※ 산림유전자원보호림(천연보호림), 자연공원,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호구역 등

3. 실천계획의 목표

- 백두대간 마루금 주변 산림에 타용도 전용억제
 - 산림형질변경제한 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 추진
 - 백두대간상 14개소 12,000ha에 대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천연보호림) 지정 추진

3-4 연안역 환경관리체계 강화

단위사업명	3-4-1 보호지역(保護地域) 지정을 통한 연안관리		
작성기관	해양수산부	협조기관	환경부, 지자체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전국 연안의 Bio-Belt 구축 및 연안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실태조사 실시
 - 생태계의 가치, 국민의 환경권, 어민의 생존권 및 미래세대의 생태향유권을 고려한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관리
 - 연안생태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호구역의 효과적인 지정을 위한 연안생태계 정밀실태조사 실시
- 보호지역 지정과 연계한 연안생태계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운영
 - 연안생태계 보호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과 보호지역의 관리주체로서의 지역주민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생태적·경제적·심미적 가치가 높은 갯벌의 감소
 - 우리나라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이며,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지이자 어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높으나 대규모 매립 등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도서생태계 및 철새도래지 위협요인 증가
 - 희귀야생 동·식물의 서식·번식처이며, 생태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도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소홀함

【 문제점 】

- 각종 개발사업으로 갯벌감소 및 철새도래지의 파괴 가속
 - 지난 10년간 대규모 매립으로 전체갯벌의 33.8%인 약 810km²가 상실
 - 관광압력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증가, 관광객의 부분별한 채취·밀렵 등으로 생태계 훼손 심감
- 연안생태계 관리체계의 허술
 - 연안생태계의 급속한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보전장치 미약
 - 전국적으로 갯벌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지역 지정사례 전무

3. 실천계획

-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의한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습지보호지역 : 9개 갯벌지역
 - 특정도서 : 15개 도서
 - 조수보호구 : 14개 지역
 - 생태계 보전지역 : 23개 지역
- 환경관리해역의 확대지정 및 해역별 관리대책 수립·추진
 - 시범해역(시화호·가막만)에 대한 해양환경관리 모델 정립후 다른 해역으로 확대 시행(2005년까지 14개 지정)

※ 환경관리해역 지정(2000. 2)

· 환경보전해역(4) : 가막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

· 특별관리해역(5) : 시화호·인천연안, 울산연안, 부산연안, 마산만, 광양만

□ 해양환경의 과학적·체계적 감시관리체제 구축

- 해양환경측정을 원격감시체제로 대체하고, 낙동강 하구연, 시화호 등에 해양오염 자동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2001.12)

□ 해양환경교육 및 홍보강화

- 해양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
- 갯벌생태학교 등 민간환경단체 해양환경 보전활동 지원

단위사업명	3-4-2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수립·추진		
작성기관	해양수산부(연안계획과)	협조기관	지자체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연안의 보전과 이용·개발질서의 확립
 -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을 통하여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를 조정·통제함으로써 [선(先)계획, 후(後)개발] 체제 확립

- 연안개발수요의 계획적 관리
 - 기존의 국토확장 지향적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토지이용수요의 충족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정해진 연안관리 정책방향을 감안하여 78개 연안 시·군·구 주관 하에 자체적으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유도함으로써 연안개발과 연안보전의 조화 도모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연안을 대상으로 한 각종개발계획의 수립·추진중
 - 서해안 개발사업계획, 각 권역별 개발계획(7개권역) 및 단위별 개발계획 등 1,000여개를 상회하는 연안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구상중

□ 개발수요의 연안집중

- 2011년까지의 연안개발 수요는 전국 신규토지수요(3,500~4,000 km²)의 약 50%를 상회하는 2,000km²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
 - 간척농지 320km², 임해공업용지 188km², 임해도시 1,648km², 관광지 등 68km² 추정

□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한 연안보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연안의 무질서한 개발에 따른 갯벌 등 해양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2000.8.23)

【 문제점 】

□ 연안에 대한 각종 개발계획 수립 · 추진으로 연안 난개발 우려

- 환경용량을 능가하는 연안개발계획 추진은 필연적인 연안 환경오염 및 생태계 교란 등 환경파괴 문제 야기

□ 연안에 대한 개발 · 보전의 이해상충 심화

- 시화호, 새만금, 금강하구, 순천만 등과 같이 연안의 개발과 보전의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됨으로서 이해관계의 조정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

3. 실천계획

□ 공유수면매립계획의 전면 재검토

- 현행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반영된 지역 중 61개 지역의 매립계획을 폐지하고, 기타지역은 연안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매립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수익성 등을 재검토

- 연안개발계획 수립시 관계기관 협의를 의무화하여 연안개발계획 통제
 - 현재 구상중인 사업 및 장래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환경영향 등에 대한 협의를 의무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추진

-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지역적으로 실현하는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유도
 - 78개 연안시·군·구가 주관이 되고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전문가가 참여하여 관할 연안관리방향을 정하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에 의한 난개발 통제효과 유발

단위사업명	3-4-3 연안 친수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		
작성기관	해양수산부(연안계획과)	협조기관	지자체
사업기간	2000~2009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예방위주의 연안보전을 통하여 연안재해를 극복함으로써 안전한 연안 축 구축
 - 연안시설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와 붕괴·노후시설의 계획적 정비
 - 사후복구 위주의 연안 방재로부터 예방중심의 연안보전 추진

- 연안의 생태적 가치증진과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연안 창출
 - 연안환경의 개선·복원을 통하여 연안의 자연생태적 가치 증진
 - 환경친화적인 연안시설의 조성·정비를 통하여 연안 친수공간 창출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연안의 구조적 재해 취약성과 방재기능의 미비
 - 연안재해에 있어 근본적인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대비노력 저조
 <연안재해발생현황 및 투자실적('89~'98)>

발생건수		피해액(억원)		투자비	
연안	전국	연안	전국	정비	개발
383회 (41.7%)	918회	1조3,040억 (22.5%)	5조8,002억	9,865억 (12.5%)	7조8,655

- 연안에 대한 개발압력 집중과 환경 훼손·오염 심화
 - 인구·산업의 연안집중과 간척·매립 및 준농림지역의 난개발로 연안환경의 훼손 및 연안생태계 파괴
- 친환경적 연안보전·이용 및 개발 결여
 - 연안개발 및 방재방식의 미숙으로 환경친화적 연안시설물 확보 미흡

【 문제점 】

- 연안환경 훼손과 연안접근권 제한
 - 준농림지역의 규제완화로 인한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무질서한 연안입지로 백사장소실 등 해양환경 악화와 연안경관 훼손
 - 항만, 산업단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연안입지로 시민의 연안접근권이 제약되고 있고 시민들의 친수활동 욕구에 대한 대처 미흡
-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지원 및 투자 미흡
 - 경제적 효율성의 시각에서 연안개발에 치중하여 정비는 상대적 소홀
 - 지난 10년간('80 ~ '98) 연안정비관련 투자는 연안개발사업비의 약 11.1%
 - * 연안개발관련 사업비 : 8조8,520억원, 연안정비관련 투자비 : 9,865억원
- 사후 방재시설 설치중심의 연안정비 및 친수성 부족
 - 각종 연안재해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연구 등 사전재해예방 대책이 미흡하고, 사후복구자원의 대증요법적 연안정비에 치중
 - 방재목적 위주의 직립식 시설설치로 연안환경 및 경관과 조화되는 시설물 확보 미비 및 연안접근성의 제약 초래

3. 실천계획

- 연안관리법에 의거 수립·고시(2000.6.29)된 연안정비계획 추진
 - 2000~2009년간 총590개소(9,762억원 규모)의 연안정비사업 시행
 - 1단계(2000~2004) 대상사업 : 201개소 2,415억원
 - * 2000년(22개소 93억원 투입), 2001(약 30개소, 150억 투입 예정)
 - 2단계(2005~2009) 대상사업 : 389개소 7,347억원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안정비사업	976,289	30,000	65,000	65,000	70,000	80,000	663,709

4. 기초생활 환경개선 기반 확립

4-1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단위사업명	4-1-1 전국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의 지속 추진		
작성기관	환경부(수질정책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1998~2005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기본목표

- 2005년까지 모든 상수원의 수질을 II급수(BOD 3mg/ℓ이하)이상으로 개선
 - 전국 하천을 195개 구간으로 구분 121개는 I 등급, 49개는 II 등급, 기타 25개 구간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정도로 개선
 - 주요 40개 호소를 관리대상으로 선정, 33개소는 I 등급으로 개선하고 나머지 7개소는 II~III등급 유지
- 하수도보급률 : '98년 65.9% → 2005년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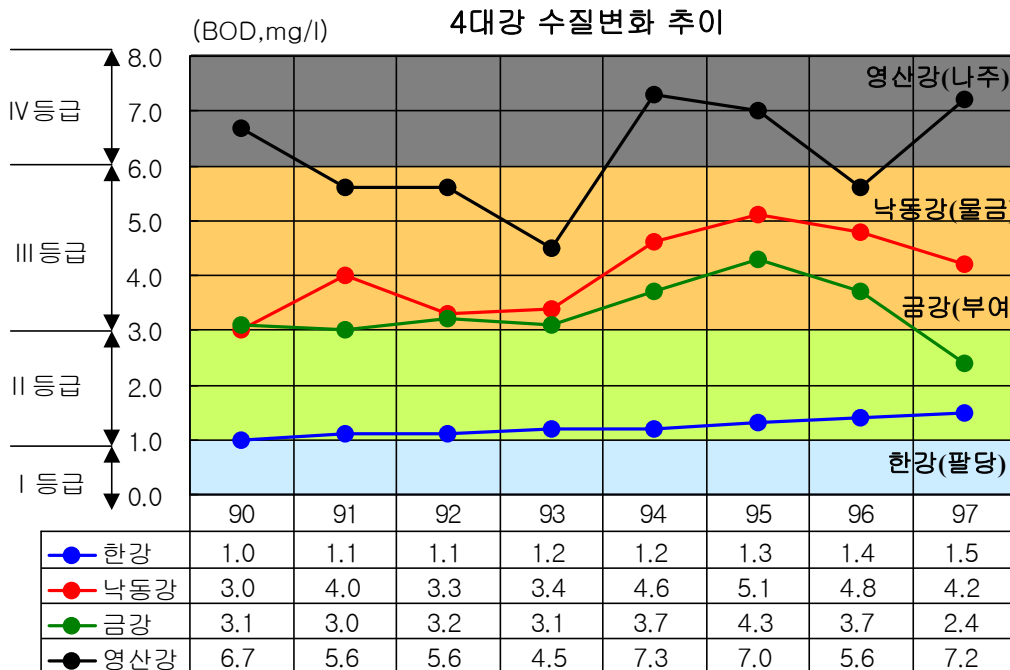
□ 4대강 대책별 수질개선 목표

		<u>수질현황</u>	→	<u>개선목표</u>
한강대책 ('98)	팔 당	II 등급 BOD1.5mg/ℓ ('9	→	I 등급 BOD1.0mg/ℓ 이
낙동강대책 ('99)	물 금	III 등급 BOD3.1mg/ℓ ('9	→	II 등급 BOD3.0mg/ℓ 이
금강대책 (2000)	대청호	III 등급 COD3.2mg/ℓ ('9	→	II 등급 COD3.0mg/ℓ 이
영산강대책 (2000)	나 주	IV 등급 BOD6.8mg/ℓ ('9	→	II 등급 BOD3.0mg/ℓ 이

2. 현황 및 문제점

- 맑은물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나날이 증대하고 있는 반면, 그간 「맑은 물공급종합대책」 등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은 미흡

⇒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



- 토지구제 완화, 수질오염을 둘러싼 상하류간의 갈등 심화 등으로 수질관리 여건악화

⇒ 특단의 대책 필요, 특별종합대책 수립·추진

3. 실천계획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

- 대책 주요내용

- 오염예방대책(수변구역, 보안림, 오염총량제 등)
- 오염삭감대책(환경기초시설 확충, 오폐수정화기준 강화 등)

- 주민지원대책(물이용부담금 부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 유역관리체계 확립(한강수계관리위원회 설치)

□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추진('99.11.20)

○ 대책 주요내용

- 수질개선대책

- 2002년부터 낙동강유역 전역에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적 도입
- 주요 상수원보호구역 시·도지사 직권지정제 도입
- 낙동강유역에 수원함양림 집중 조성
- 산업단지 완충저류조 설치 의무화
- 하수처리장 266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288개소 신설

- 수자원 및 물 수요관리 대책

- 2008년까지 낙동강 갈수기 하천유량을 2배로 증대
 - ※ 조사팀을 구성, 기존댐 운영방식 변경, 수자원 수요관리, 갈수댐 건설방안 등 검토
- 낙동강하류지역(부산, 마산, 창원, 김해, 진해)에 대한 취수원 다변화
 - ※ 조사팀을 구성, 강변여과수·원수전처리·청정수원 개발 등 검토

- 유역 공동체 건설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설치, 유역문제 공동의사 결정
- 물이용부담금제 도입, 유역관리비용에 충당

□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추진('00.10.24)

○ 대책 주요내용

- 수질오염 예방대책

- 수변구역 지정·관리하여 수변구역내에는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등의 신규설치 금지, 기존시설은 오수배출 기준 강화

※ 대청호 상류의 호소 및 하천분류구간, 1차지천 : 하천양안 300-1km

- 산림의 수원함양기능 강화
-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 ※ 대청호 상류, 만경·동진강권역 시급이상 : 2004년부터
 - 대청호 상류 기타지역 : 2008년부터 시행
- 수질오염 삭감대책
 - 환경기초시설 신설 및 확충
 - 방류수기준 강화(현행 20ppm → 10ppm)
- 수질오염 감시단속
 - 현행 환경감시대를 발전적으로 개편
- 상류지역 지원대책
 -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
 - 물이용부담금으로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과 대청호유역 자치단체에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영산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추진('00.10.24)

○ 대책 주요내용

- 수질오염 예방대책
 - 수변구역 지정·관리하여 수변구역내에는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등의 신규설치 금지, 기존시설은 오수배출 기준 강화
 - ※ 주암호, 수어호, 동복호 상류 : 하천양안 500m이내
 - 산림의 수원함양기능 강화
 -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 ※ 주암호 상류 시급이상 : 2004년부터, 기타지역 : 2008년부터 시행
- 수질오염 삭감대책
 - 환경기초시설 신설 및 확충
 - 방류수기준 강화(현행 20ppm → 10ppm)

- 수질오염 감시단속
 - 현행 환경감시대를 발전적으로 개편
- 상류지역 지원대책
 -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
 - 물이용부담금으로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과 대청호유역 자치단체에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4.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시설별	소계	비율(%)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합계	175,489		49,724	43,712	31,729	27,100	23,224	
비율(%)	100.0	100.0	28.33	24.91	18.08	15.44	13.23	
시설 투자	소 계	167,001	95.2	48,428	42,330	30,022	25,168	21,053
	구성비	100.0		29.0	25.3	18.0	15.1	12.6
	하 수	103,494	62.0	34,056	28,467	18,331	13,606	9,034
	하수관거	50,502	30.2	11,370	10,845	9,059	9,218	10,010
	분 노	2,123	1.3	528	662	465	282	186
	축 산	1,826	1.1	262	359	434	448	323
	산 폐	3,763	2.3	1,269	776	622	562	534
	오염하천	3,300	2.0	541	595	654	719	791
	녹조방지	1,993	1.1	402	626	457	333	175
원리금상환	8,488	4.9	1,296	1,382	1,707	1,932	2,171	

※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부문(원리금상환 포함)이 전체 예산의 92.5%

단위사업명	4-1-2 오염원 관리체계의 확립		
작성기관	환경부(생활오수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2001~2008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축산폐수 오염원의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설확충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 및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생활오수 처리시스템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설치사업 추진
 - 2000년말 현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44개소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 32개소는 운영중, 12개소는 설치중임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 현황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1999-128호) 및 건축물의 용도별 단독정화조의 처리 대상인원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1999-129호)에 의거하여 건축물에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 산정
 -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변경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현지확인이 포함된 준공검사(처리기간 5일)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현황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관리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등록되지 않은 오수처리시설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는 자에 대하여 200만원이하 벌금 부여

【 문제점 】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

- 현행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고시 등은 지역적 고려가 없으며, 누락된 용도가 있으며,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가 개별 고시로 되어 있어 오수량 산정시 불편
- 준공검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민원 유발 및 현지확인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로 실제 오수처리시설 등의 지도·점검에 투자되는 시간이 적게 됨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 상습적인 관리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시 적정관리를 위한 조치 미흡
- 미등록 오수처리시설 등의 판매에 대한 벌칙이 약함

3. 실천계획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1개소 설치사업 추진(2008년까지)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고시 개정(2001.하)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배출원단위 연구용역 완료(2001.8)
- 관련 고시 개정(2001.12)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 개정(2002)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2001.하)

- 개정안 마련 및 부처 협의(2001.2)
- 입법예고(2001.3)
- 규제심사(2001.5)
- 법제처 심사(2001.6)
- 국회 제출(2001.9)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02)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이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263,200	52,300	35,000	38,000	40,000	42,000	55,900

4-2 깨끗한 공기질 확보

단위사업명	4-2-1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작성기관	환경부(교통공해과)	협조기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지자체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천연가스버스 보급

-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도시지역 경유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 보급(버스2만대, 충전소 400기)
- 2002년까지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5,000대(충전소 100기) 보급
 - 보급계획

구 분	계	2000	2001	2002	2003~2007
버 스(대)	20,000	1,100	1,254	2,646	15,000
충전소(기)	400	30	38	32	300

□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연료품질 개선

- 휘발유 자동차는 미국의 초저공해자동차(Ultra Low Emission Vehicle) 수준으로, 경유자동차는 유럽 선진국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
- 자동차용 연료는 향후 보급될 저공해 자동차에 적합한 수준으로 품질을 강화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

□ 운행차 관리강화

- 운행차배출가스 검사를 현재의 정기검사외에 배출가스만을 정밀검사하는 중간검사제도 도입
- 운행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내 결함여부를 확인하는 결함확인검사 제도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자동차 공해현황

-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도시 대기오염 비중이 계속 증가(서울 : 52%('90)→85%('99))하고 있으며, 이 중 29%의 경유차가 50%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대책 추진이 시급
 - 특히 전체 자동차의 3%에 불과한 버스·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가 전체 자동차 공해의 35% 이상을 차지
 - 자동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의 80%, 미세먼지(PM)의 100%를 경유차가 차지
- 2002년 월드컵 개최를 대비하여 주요 대도시의 대기질 개선이 요구됨
 - 서울 등 개최도시의 대기오염이 일본보다 심각
(미세먼지($\mu\text{g}/\text{m}^3$) : 서울 68, 요코하마 30)

□ 천연가스버스 보급 추진

- 대도시 대기오염의 조속한 개선 및 쾌적한 2002 환경월드컵 개최를 위하여 2000년부터 천연가스버스 보급 추진
 - 천연가스버스는 매연이 전혀없고 질소산화물 등 오존생성물질도 70% 이상 저감되어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됨
 - 관련업계의 참여촉진을 위한 경유버스와의 가격차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2,250만원/대), 충전소 설치비용의 국고융자 지원(7억원/기), 각종 세제지원 및 법령정비 등을 통하여 천연가스버스 보급 기반 구축
- ※ 2000년에는 천연가스버스 1,100대, 공급시설 30기 보급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이며, 12월 현재 버스는 전량 구매신청되었으며, 919대가 운행 또는 계약(충전소는 28기 가동 또는 공사중)

- 2002년 이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연료품질기준 강화 추진
 - 휘발유 자동차는 2002년 7월부터 미국의 저공해자동차(Low Emission Vehicle)기준을 도입하고, 중·소형 경유자동차는 2002.7월부터, 대형경유차는 2003년부터 유럽의 3단계(EURO 3) 수준으로 강화
 - 2002년부터 차기 휘발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된 저공해차(Low Emission Vehicle)에 적정한 수준의 기준 달성
 - 휘발유의 경우 황 함량기준은 200ppm에서 130ppm이하로, 벤젠 기준은 단계적 강화 (2% 이하→ 1.5%(2002)→ 1%(2005))
 - 경유의 황함량(무게 %)은 0.05% 이하 → 0.043% 이하, 밀도 기준을 신설(815~845@15℃, kg/m³)

□ 운행차 관리제도

- 현행 운행자동차 배출가스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시 안전검사와 병행 실시
 - 안전검사 위주의 24개 검사항목 중 1개 항목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무부하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
- 인증을 받고 생산되어 운행중인 차량에 대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내 배출허용기준 유지여부를 검사
 - 차종별 예비검사 실시후 불합격시 10대의 차량에 대하여 본검사 실시
 - 본검사 실시결과 불합격시 제작사에 결함시정명령

【 문제점 】

□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기반 취약

- 충전소 설치부지 확보 곤란
 - 대부분의 시내버스 차고지가 도심내에 위치해 있고 규모가 협소하며, 공동주택, 학교 등의 보호시설과 인접하여 있어 부지 확보에 애로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보호 시설과의 안전거리 충족 곤란
 - 공영주차장 등 건설기간의 장기소요 및 설치비용 확보 곤란

- 충전소 설치업계의 사업참여 기피
 - 충전소 설치비용 과다소요(7억원/기) 및 회수기간 장기화(15년, 50대 충전용량 기준)로 사업참여 소극적
- 유류가격 구조 불안정
 - 경유 / 천연가스간 연료가격차 불안정
 - 경유버스와 천연가스버스와의 가격차액(3,100만원)중 일부(2,250만원/대)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850만원)은 연료가격차로 보전토록 하고 있으나, 국제유가 변동으로 경유와 천연가스 가격차 불안정
- 기준 강화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 소극적 대처
 -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환경 악화로 기술개발 투자에 미온적임
 - 연료품질 기준 강화에 따른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
-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검사 미흡
 - 현재의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안전검사의 일부분으로 시행되고 있어 검사내용이 미흡하며 검사방법이 차량의 실제 주행상태를 반영하지 못함
 - 또한 대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검사가 실시되고 있어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도시의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관리 미흡
 - 운행차에 대한 결함확인 검사대상 차량이 적어 대표성이 부족하며 대상차종 선정시 사전 모니터링제도 미흡

3. 실천계획

- 천연가스버스 보급 지속 추진
 - 2000년에 구축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연초부터 보급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추진

- 2001년에는 천연가스버스 1,254대 보급 및 충전소 38기 설치
 - 상반기까지 2000년 사업물량(버스 1,100대, 충전소 30기) 보급에 주력하고, 하반기부터 2001년 사업량 보급에 주력

〈 2001년도 시·도별 천연가스버스 보급계획 〉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북	경남
버 스(대)	1,254	513	121	100	100	80	80	100	80	30	50
충전소(기)	38	21	3	2	2	2	2	2	2	1	1

- 관련업계 및 지자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
 - 버스보조금(대당 2,250만원) 및 충전소용자금(기당 7억원) 지속 지원(정부 407억원, 지자체 141억원 확보)
 - 단기적으로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 인하, 장기적으로는 경유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천연가스가격을 경유가격 보다 낮게 유지하여 버스업계 연료비 부담 완화
 - ※ 2006년까지 휘발유대비 경유가격을 75%(현행 49%)까지 인상
 - 충전소 시설투자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시설 용자금 이자율(현행 7.5%) 인하
 - 사업추진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 2007년까지 소요될 충전소 예정부지 타당성 조사실시
 - 산단지역, 시유지, 개발제한구역 등을 중심으로 충전소 설치 추진 및 지역별 공영차고지 건설 조기 추진 독려
- 충전소 안전성 및 천연가스버스의 친환경성 중점 홍보
 - 팸플렛, 비디오 등 홍보물을 제작, 언론매체·환경단체 등에 배포
 -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 천연가스버스의 외부를 친환경적으로 디자인

□ 한국형 Auto-Oil 사업 추진

- 중장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최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용 연료품질과 엔진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연료의 제조기준과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방향 및 체계를 구축
 - 외국의 Auto-Oil 프로그램 실시사례, 시험결과 분석 및 평가
 - 연료품질과 배출가스 성분과의 상관관계 및 분석기법 조사
- 2006년 이후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및 연료품질기준(안) 설정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제도 개선

- 운행차 배출가스만을 정밀 검사하는 중간검사제도 도입(2002)
 - 실제의 도로 주행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부하검사방법 도입
 - 일정차령 이상 노후차량을 중심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중 특히 대기오염이 우심한 수도권지역부터 시행한 후 점차 확대 시행
- 운행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제도 강화 시행(2003)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결과 및 정비·점검내역 분석 등 결함확인대상차종선정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제도 강화
 - 결함확인검사 대상차량 확대 및 결함확인검사 수행기관(자동차공해연구소) 기능 강화 추진
 - 사전 모니터링결과 문제차종에 대하여 제작사에 자발적 리콜을 요구하는 제도 도입 추진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508,460	33,375	40,867.5	52,467.5	76,050	76,050	76,150	153,500
천연가스 버스 보급	225,000	12,375	14,107.5	29,767.5	33,750	33,750	33,750	67,500
천연가스 공급시설설치	280,000	21,000	26,600	22,400	42,000	42,000	42,000	84,000
Auto-Oil 사업	3,460 (10,300)	-	160 (400)	300 (900)	300 (1,000)	300 (1,000)	400 (1,000)	2,000 (6,000)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천연가스버스보급 예산 225,000백만원 투자

※ Auto-Oil 사업 중 ()내는 민간부문 투자액임

단위사업명	4-2-2 도시·공단지역의 대기질 중점관리		
작성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감축 필요성이 큰 오염물질의 집중적인 관리강화
 - 오염물질 전체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강화 보다는 오염부하량이 큰 오염물질 및 도시지역 오존(O₃)생성의 원인이 되는 미규제 오염물질 등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강화 방식의 효율적인 오염물질 감축
 - 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 신규물질 추가규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규제방식 정착

- 오염물질 배출의 상시감시체제 구축으로 과학적인 사업장 관리
 -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관리강화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상시감시체제 구축
 - 전국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원격감시체제(TMS)를 통하여 상시감시

- 오염우심지역 주민의 악취 등 생활민원 발생저감
 -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 주민의 악취 등에 의한 오염피해의 불만해소
 - 악취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근원적인 악취 발생저감 추진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대기환경 여건의 변화

- 연료전환정책의 추진 등으로 아황산가스 등 기존의 1차 오염물질의 오염은 현저히 저감하고 있으나, 오존(O₃) 생성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및 질소산화물(NO_x) 등의 저감이 요구됨
- 도시화의 확장 등으로 공장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함에 따라 악취 등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폭되고 있음

□ 강화된 2005년 배출허용기준의 엄격한 적용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규제 강화

- 오염저감 효과가 큰 오염물질을 집중 강화한 2005년 적용 배출허용기준을 2000.10.30 개정 공포
- 오염우심지역인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 중 6개 업종은 2000년까지, 석유정제업 출하시설 및 주유소 등은 2004년까지 오염물질 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

□ 굴뚝원격감시체제(TMS) 구축

- 사업자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파악하여 공정개선을 할 뿐 아니라 전국 4대 권역별 관제센터를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상시 감시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3종 이상 사업장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1종 사업장은 2001년까지, 전국의 3종 이상 사업장은 2005년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연차별·규모별로 감시체제 구축

□ 산단지역 등 악취관리 강화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및 생활악취시설의 악취물질 관리 지속적인 강화 추진
 - 시화, 인천 등 문제지역을 중심으로 악취상황실 운영, 악취예고제 실시, 민·관합동 집중단속 및 시설개선 등 추진
 - 악취유발 배출시설·소형 소각시설의 규제 신설 및 생활악취시설 규제확대·처분 강화 등 추진
- 「악취물질발생원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인천지역 악취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사업을 토대로 장기적인 악취관리 방안대책 수립·추진

【 문제점 】

□ 신규 도입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관리체제의 보완·발전 필요

-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농도 측정장비 등 관리장비 부족
- 규제대상 시설·물질의 분류 및 지정이 아직까지 미흡하며, 배출허용기준, 방지효율기준 미설정 등 관리체제 미흡

□ 원격감시체제(TMS) 구축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정비 및 운영체계 개선 필요

- 측정기기 의무화시점이 도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측정기기 미부착 사업장 과다(부착률 : 약 43%)
 - 사업장 상시감시에 따른 부담감 및 설치비용 등으로 조기설치 기피
- 굴뚝자동측정기의 측정값의 신뢰성 확보가 아직까지 일부 미흡
- 주요시설 위주로 측정대상을 고시하여 부착대상 시설수 저조

□ 악취발생 특성상 민원저감에 한계

- 불특정한 공정 및 기상여건 등에 크게 좌우되는 악취발생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시설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제기
- 오염부하량이 큰 공장밀집지역에서는 단순한 시설개선 등만으로 민원 해결에 한계

3. 실천계획

□ 감축대상 오염물질 위주의 집중적인 오염물질 관리 추진

- 2005년 시행 배출허용기준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기업 투자상황 및 기술개발 등의 지속적인 파악·독려(2001~2004)
 - 장기적으로는 2005년 적용 배출허용기준 이후의 새로운 기준설정을 검토하고, 배출허용기준 위주의 현행관리체계에 기술규제방식 등을 포함하는 관리체제로 전환 검토(2005)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및 정밀 측정을 위한 전용 측정분석기기 확충
 - 특별대책지역 등을 중심으로 G.C 등 분석기기 구입 및 휴대용 VOC 측정기 추가 구입(2001~)
- 규제대상시설의 분류체계 개선, 방지시설 효율기준을 규제기준으로 전환 및 규제대상물질의 확대 등 과학적인 관리체계 확립(2003)

□ 굴뚝원격감시체제(TMS) 구축효과 극대화 추진

- 단계별 부착의무화 이전까지 지속적인 부착점검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조기부착 완료 유도(2001~2004)
- 측정기기에 대한 충분한 통합시험, 상대정확도시험 등을 통한 신뢰성 확보 및 관제센터별 기술검토위원회 구성운영(2001~)
- 부착대상시설, 측정항목 등 확대 및 부착완료신고제도 도입 등 제반 규정 정비

□ 악취관리체계 개선

- 「악취물질 발생원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2000~2001)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악취관리제도 개선(2002)
 - 악취 규제대상물질 확대 및 측정방법 개선
 - 악취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등
- 악취오염 우심지역 관리강화
 - 환경부, 지자체, 전문기술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화·반월 대기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합동단속 및 기술지원 등 추진(2001)
 - ※ 2001년 운영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연장 및 타 문제지역 확대 검토
 - 「인천지역 악취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사업(2000~2001) 결과를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대책 마련 추진
- 악취오염 모니터링체계 도입·구축 및 세부물질별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2003~)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58,879	6,200	6,943	5,104	4,803	4,803	31,026
배출허용기준(안) 마련 용역	500	-	-	300	-	-	200
VOC 관리	850	50	200	200	200	200	-
TMS 구축	51,229	5,850	5,843	4,104	4,103	4,103	27,226
악취관리개선	6,300	300	900	500	500	500	3,600

4-3 폐기물 발생억제를 통한 감량화

단위사업명	4-3-1 생활폐기물 감량화 기반 확립		
작성기관	환경부(폐기물정책과, 생활폐기물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1회용품 사용규제, 포장폐기물 감량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료화 촉진 등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시책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 1회용품 안쓰기 및 과대포장 줄이기가 생활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업계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동기부여 미흡
- 1회용품규제 및 포장폐기물발생억제규정 제제수단 미약
 - 위반시 3개월 범위내 이행명령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폐기물의 약 26%(11천톤/일)로 발생량이 많으며, 수분함유량이 많아 매립 또는 소각처리에 따른 침출수 등 2차 오염물질을 발생

3. 실천계획

- 시민·업계의 자발적 동참 유도프로그램 개발·추진
 - 장바구니 사용고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장바구니 전용계산대 보급확대 등

- 포장표시권장제의 지속적 추진으로 포장폐기물 사전억제
 - 과대포장이 많은 화장품·완구류·주류·가공식품의 생산업체와 협의 포장공간비율·포장재질 등을 표시토록 하여 제조단계에서의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 1회용품 규제 및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관련규정 보완
 - 현행은 3개월 범위내에서 이행명령후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위반시 곧바로 과태료 부과 추진
 - 1회용 비닐식탁보 등 규제대상을 추가검토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
 - 200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1일 1만톤이하로 줄이고, 재활용량을 '97년 9.8%에서 6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98~2002)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가구를 770만 가구로 확대('99년도 489만가구)
 - 사료·퇴비화 등 자원화시설 233개소(5,200톤/일) 확충('98년도 167개소, 3,178톤/일)

4.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합계	'98까지	'99	2000	2001	2002이후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2,165	320	378	372	437	658

단위사업명	4-3-2 폐기물 감량·재활용 체계 개선		
작성기관	환경부(폐기물정책과, 자원재활용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신규사업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생산자책임재활용제」의 단계적 확대·정착, 배출 최소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등 제품 전수명주기(LCA)를 고려한 폐기물 감량·재활용 촉진기반 확립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회수·처리비를 예치하게 하고, 재활용 실적에 따라 반환해 주는 폐기물예치금제도 운영('92년~)
 - 생산자에게 자신이 생산·판매한 제품과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목표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 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목표량 부과

【 문제점 】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산자의 역할 미흡
 - 생산자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이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적인 소재선택·구조개선 등에 소홀
 - 재활용이 가능한 많은 폐기물이 자원화되지 못하고 매립·소각처리되고 있는 실정

3. 실천계획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기반 마련

○ 시범사업실시

- 가전3사·형광등 생산자들과 체결한 협약에 의거, 폐가전제품과 폐형광등에 대한 생산자 재활용사업 추진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등 개정

- 생산자의 재활용목표량, 미이행 부과금 등 근거 마련(2001. 2월 현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중)

4-4 환경인프라의 정비·확충

단위사업명	4-4-1-① 환경기초시설의 대대적인 확충(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의 확충)		
작성기관	환경부	협조기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사업기간	1996~2005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96년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물관리 종합대책을 기본으로 한강('98), 낙동강('99) 및 금강·영산강 대책(2000)에 따라 '96~2005 기간중 하수처리장 420개소 완공 및 하수관거 44천km 정비

〈 물관리종합대책기간중 하수도사업 계획 〉

구 분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사업량		420개소(20,242천톤)	43,786km
사업비	계	165,735억원	96,043억원
	국 고	93,730억원	44,759억원
	지방비	72,005억원	51,284억원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96~2000년까지 10조 1,29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00개소 완공 및 하수관거 20천km 정비추진
- 2001~2005년까지 16조 483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320개소 확충 및 하수관거 24천km 정비

【문제점】

- 2001~2005년까지 계획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설치비용 160,483억원중 51,759억원 부족 예상
 - 이중 지방양여금은 30,850억원 부족

3. 실천계획

- 2001년도에 25,397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256개소 설치 및 하수관거 4,124km 정비사업 추진
- 부족한 지방양여금의 조달을 위해 지방양여금 배분비율 조정 등 재원조달방안 강구

4.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160,483	25,397	37,836	27,953	23,692	45,605
하수처리장 확충	102,510	15,402	28,357	18,126	13,303	27,322
하수관거 정비	57,973	9,995	9,479	9,827	10,389	18,283

단위사업명	4-4-1-② 환경기초시설의 대대적인 확충(분뇨처리시설의 확충)		
작성기관	환경부(생활오수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2001~2008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분뇨처리시설의 확충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설치사업 추진
- 2000년말 현재, 183개소의 분뇨처리시설이 운영 중에 있음

【 문제점 】

- 없음

3. 실천계획

-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의 추진(2008년까지)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연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이후
분뇨처리시설	390,299	62,200	66,545	68,509	69,827	123,198

단위사업명	4-4-1-③ 환경기초시설의 대대적인 확충(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작성기관	환경부(생활폐기물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국토의 단위면적당 쓰레기 부하량이 높은 우리의 국토여건을 고려할 때 적정한 소각시설을 확충하여 매립지 사용연한을 확대하고 위생매립 시설을 확보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 행정을 수행
- 금년에 수립될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서 2002년 이후의 소각 처리 목표율이 확정하여 장기적인 소각시설 확충기반을 구축
- 2001년도에 38개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69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21개의 위생매립지 건설을 위해 263억원의 국고를 지원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구 분	2000년 말까지		국고보조 금액	2001년 계획		
	운영중인 시설	공사중인 시설		개소		
				계	신규	계속
계	330	124	1,643	122	70	52
소각시설	19	14	690	38	15	23
매립시설	40	22	263	21	9	12
음식물 자원화시설	233	51	131	16	16	-
비위생 매립지	-	-	364	34	25	9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38	37	195	13	5	8

【 문제점 】

- 설치를 추진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반대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 부담 과중등을 이유로 시설설치에 소극적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설치승인을 받지않은 읍·면 단위의 소규모 매립시설 운영으로 환경에 위해요인 대두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국고보조율(30%)이 낮아 설치 지연

3. 실천계획

- 광역처리시설 설치촉진 방안 강구
 - 광역처리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 확대를 지속 추진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지침 제정
 - 대형소각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적정운영비 및 중·소형 소각시설의 운전방식, 시간등 가동률 제고 방안을 위한 기술지침 수록
- 매립지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읍·면 단위의 소규모 매립시설 90개소에 대하여는 조기폐쇄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유도
- 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제정
 - 지진 발생에 따른 매립시설의 붕괴 방지를 위해 매립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기준 제정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국고보조율 상향조정(50%)협의 및 민자유치

4.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1	2002년 이후	비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국고지원	2,194	690	1,504	
위생매립시설 설치 국고지원	1,382	263	1,119	

단위사업명	4-4-1-④ 환경기초시설의 대대적인 확충(폐수처리시설의 확충)		
작성기관	해양수산부(유통가공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시설 의무화 사업(700m²)에 대한 폐수처리시설 지원으로 해양오염 방지 및 주민생활 환경악화 방지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연안오염 방지로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인의 생활터전인 해양의 생산력 제고를 위하여, 산지 위판장에 대한 폐수처리시설 지원(지원조건 보조 30%, 용자 40%, 자담 30%)

【 문제점 】

- 위판장 폐수처리시설은 수익 미창출 시설로 운영비용이 과다하여 사업대상자들이 동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음

3. 실천계획

- 폐수처리시설 의무화 대상인 산지 위판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실시로 지속적인 폐수처리시설 건립 추진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위판장 폐수처리시설	3,080	280	280	420	420	280	1,400	

단위사업명	4-4-2-① 환경오염측정망(測定網) 정비·내실화(대기·소음 측정망의 정비)		
작성기관	환경부(대기정책과, 생활공해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대기(산성비 포함)·소음 환경측정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체계화

2.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오염 측정망 】

- 현재 대기오염측정망은 지역대기측정망 등 314개를 설치·운영 중
< 측정망 종류 >

계	지역대기	산성우	중금속	배경(국가,지역)	도로변	지구대기
314(101)	152(54)	97(37)	39(4)	9	16(6)	1

※ ()는 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측정망

- 대기오염측정망은 설치·운영의 주체에 따라 국가측정망과 지자체 측정망으로 구성(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2000.10.30)
 - 국가측정망(6) : 지역배경, 국가배경, 유해대기, 광화학오염물질, 산성강하물, 지구대기
 - 지자체측정망(4) : 지역대기, 도로변, 중금속, 시정거리
- 이에 따라 현재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대기측정망 등 141개소를 지자체에 이관중
- 그러나 측정망 이관에 따른 각 시·도의 예산 및 인력 미확보로 측정망 이관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

【 소음측정망 】

- 전국적인 도시지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4개 도시, 121개 지역 605개 지점의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소음·진동규제법제3조 제1항)
- 시·도는 13개 도시, 135개 지역, 657개 지점 운영(소음진동규제법제3제2항)

3. 실천계획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계획
 - 2005년까지 29,760백만원을 투자하여(국가 15,870, 지자체 13,890) 213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 2001년도 사업계획
 - 국가측정망(10개) 설치 : 광화학평가 4, 유해대기 4, 지역배경 2
 - 지자체측정망(6개) 설치 : 지역대기 4, 도로변 1, 시정장애 1
 - 연도별 확충계획

구 분	계	기설치	연 도 별 확 충 계 획							
			소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457	244	213	17	59(16)	47	38	28	24	
국 가 측 정 망	소 계	142	37	105	12	31(10)	25	17	10	10
	지역배경	26	4	22	2	7(2)	7	6	-	-
	국가배경	6	5	1	-	1(-)	-	-	-	-
	유해대기	33	-	33	4	10(4)	6	5	4	4
	광화학평가	38	-	38	4	8(4)	8	6	6	6
	산성강하물	38	27	11	2	5(-)	4	-	-	-
지구 대기	1	1	-	-	-	-	-	-	-	
지 자 체 측 정 망	소 계	315	207	108	5	28(6)	22	21	18	14
	지역대기	215	152	63	4	17(4)	14	12	10	6
	중금속	60	39	21	-	7(-)	4	4	3	3
	도로변	34	16	18	-	3(1)	3	4	4	4
	시정장애	6	-	6	1	1(1)	1	1	1	1

※ ()는 2001년도 확보예산

□ 소음측정망 확충 및 관리강화

- 월드컵 개최도시 도로교통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추진
- 환경소음도 분석·평가 및 자료의 공유화를 통한 소음저감대책 추진
 - 환경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환경소음도 측정자료 수집·관리(2000.12~)와 지역별 환경소음 실태 파악 및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강구
 - ※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관리 및 평가업무 일원화 계획 수립·시행(2000.5)
- 2001.1월 이후부터 소음측정 자료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매분기 분석·평가하여 지자체와 자료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

단위사업명	4-4-2-② 환경오염측정망의 정비·내실화(토양측정망의 정비)		
작성기관	환경부(토양보전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토양측정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체계화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토양측정망 운영체계
 - 전국망과 지역망으로 구분하여 총 4,500지점의 측정망 운영
 - 전국망은 토지용도별로 구분하여 1,500지점 운영(각 지방청)
 - 지역망은 오염원별로 구분하여 3,000지점 운영(각 지자체)

【 문제점 】

- 측정망 운영을 통한 토양오염지역 색출에 한계
 - 4,500지점의 측정망 운영결과 29개 지점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0.6%)
 - 토양오염우려지역의 적극적인 조사필요성 대두

3. 실천계획

□ 토양측정망 운영체계 개선

- 지역측정망 운영체계를 토양오염실태 조사체계로 개편
 - 오염사고지역, 민원발생지역 등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체계로 개편하여 오염토양 색출강화
- 전국망은 토지용도별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전국토의 배경농도 모니터링 강화
- 토양오염 조사체계 개선에 따른 세부지침 마련

단위사업명	4-4-2-③ 환경오염측정망의 정비·내실화(수질측정망의 정비)		
작성기관	환경부(수질정책과)	협조기관	시·도 및 수공,농기공등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수질(자동포함)측정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체계화 함으로써 주요상수원 지역 등의 수질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전국의 하천 및 호소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하여 수질보전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 특히, 자동측정망은 주요상수원 및 취약지역에 수질자동측정소를 확대설치함으로써 향후 오염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도 등의 원활한 시행과 수질오염사고의 신속한 대처하고 상시 수질감시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경보체계에 활용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거 수질보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코자 시·도 및 수공, 농기공 등 26개 기관에서 '00.12월말 현재 총 1,574개소의 수질측정망을 운영중
- 전국 4대강 수계의 주요상수원 및 취약지역 등의 수질오염사고의 신속대처 및 경보체계에 활용코자 수질자동측정소를 '95~'00까지 총 20개소를 설치·운영중

【 문제점 】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질자동측정망수로는 향후 효과적인 수질보전 정책수립추진 곤란 및 공공수역 등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사고의 조기 발견과 각 유역의 수질변화와 오염원 추적이 어렵고 향후 추진계획인 총량규제 및 비점오염원 관리 등 정책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측정소 수가 부족한 실정임
 - 수질자동측정망의 경우 1995년도부터 4대강유역에 설치된 기존 측정망은 대부분 오염사고 감시용과 일부 상수원 수질감시용으로 설치된 것이나 한강수계의 경우 본류에 2곳, 북한강수계(하천연장: 2,540km)에 1곳, 남한강수계(하천연장: 4,063km) 3곳 밖에 되지 않아 수질상시 감시체계의 효과적인 운영 곤란
 - ※ 일본은 전국에 263개소 설치, 아이찌(나고야)현 장내천의 경우 10~20km 간격으로 26개소 설치운영, 프랑스는 공공용수역의 수질자동측정을 일본과 동일하게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본류 및 하천에 설치(정수장 상류 5km 지점)하여 예경보체제로 활용(Warning Station)

3. 실천계획

- 수질측정망 조사지점수를 연차적으로 확대·운영하여 주요상수원 및 취약지역 등의 수질오염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 및 공공수역의 수질모니터링 체계 강화
 - 수질자동측정망('00 : 20개소 → '06 : 57개소)
 - ※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및 수계별 수질자동측정망 확대설치 타당성조사용역 추진결과에 따라 연차별로 6개소씩 확충 예정
 - 수질(수동)측정망도(연차별로 20~30개 지점 확충) 예정 확충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질자동측정망 확충	35,478	2,628	3,942	5,256	6,570	7,884	9,198	

4-5 환경기준 및 제도의 정비

단위사업명	4-5-1 환경기준 및 제도의 선진화		
작성기관	환경부(수질정책과, 대기정책과, 수도정책과, 폐기물정책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생활환경 관련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환경권 보호

2. 현황 및 문제점

- 쾌적한 환경질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생활환경 관련 기준이 주요 선진국 또는 국제적 권고기준에 미흡
 -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은 47개로 미국(87개), WHO(122개) 등에 비하여 적음
 - 생활소음, 악취 및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선진화된 기준 및 제도의 도입 필요성 증가

3. 실천계획

-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확대
 - 미량 유해물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내 수계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 등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 2000년 47개 → 2001년 55개 → 2005년 85개

- 폐수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물질 확대 지정
 - 하·폐수 종말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확대 및 분류식 관거설치 지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적용

- 생활소음 및 악취 규제기준 마련
 - 제작차 배출가스 및 연료품질기준을 미국·유럽 규제수준으로 강화
 - ‘악취물질 발생원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규제대상 악취물질 확대 등 제도개선

- 폐기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기반 구축
 - 폐가전제품, 타이어 등 주요 품목에 대하여 회수·처리에 관한 자발적 협약 체결

단위사업명	4-5-2 생활환경 오염행위 지도·단속 효율화		
작성기관	환경부(산업폐수과)	협조기관	행정자치부
사업기간	2001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팔당호 등 주요상수원 수질의 효율적 감시를 위한 감시·단속체제 강화
- 반공익적 상수원 오염사범 근절을 위한 확고한 기반 조성
- 상수원 수질의 안정성 및 지속적 개선도모
- 상수원의 물이용 가치를 확대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상수원 수질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원화 되어 있던 상수원 수질감시기능을 일원화하여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임시기구로 '97년부터 한강 등 4대강 환경감시대를 설치·운영
 - 한강환경감시대('97.10.1), 낙동강·금강·영산강환경감시대('98.2.4)
- 그동안 환경감시대는 임시기구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강력한 단속조치로 상수원 수질오염행위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단속기구로 인식
 - 환경감시대 적발률은 15.1%로서 전국 평균적발률 6.0%의 2.5배

【 문제점 】

- 환경감시대는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3개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정규 임시기구로서 적정인력 확보 곤란
 - 미 파견인력이 48명으로 전체(166명)의 29% 차지 : 중앙 21명, 시·도 27명

- 환경감시대는 조직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미약
 - 국무총리훈령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비정규 임시기구

3. 실천계획

- 환경감시대 조직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
 - 한강 및 낙동강특별법 제·개정안에 환경감시조직 설치근거 마련 (2000 정기국회 제출)
 - 추진중인 금강 및 영산강수계특별법 제정시 환경감시조직 설치근거 마련

- . 환경감시대 조직·기능 강화
 - 한강 등 4대강 수질보전대책추진과 연계하여 환경감시대 조직 정규화 또는 별도정원 확보추진
 - 한강 등 4대강 상수원의 직·간접오염원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5. 환경과학기술의 발전

5-1 환경과학기술의 육성

단위사업명	5-1-1 환경분야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작성기관	환경부(환경기술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미래 유망 환경기술 중점 개발
 -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Eco-Technopia21)」 추진
 - 선도기술개발사업(G-7)의 경험과 기술역량을 확대·발전시켜 10년 내 환경기술선진국 돌입 목표
 - 국내·외 환경기술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선진국과 격차가 적은 유망기술 등 20개 내외의 중점기술 개발
 - 환경분야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추진
 - 폐기물 재활용기술을 중점 개발하여 2010년까지 폐플라스틱 등 산업폐기물 재활용률을 현재 20%에서 70% 이상으로 제고
- 환경기술의 선진화 및 실용화를 위하여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
 - 범정부적 종합계획을 수립, 환경기술 발전 중장기 비전과 실천방안 마련
- 우수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 우수 환경기술 확인을 위한 정부 검증제 확대
 - 최신 환경기술 관련정보의 수집·관리 및 교류를 위한 「환경기술정보센터」 설치·운영
 -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한 성공불제 도입 검토
- 지역별 대학·연구기관 합동으로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지역별 환경특화기술 개발을 지원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미래 유망 환경기술 중점 개발

○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G-7) 추진

- '92~'99년까지 8년간 2,783억원(정부 1,370, 민간 1,413)을 투자, 배연탈황·탈질기술 등 26개 중점연구분야에 294개 세부과제 추진

○ 「차세대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21)」 추진

- 「차세대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21)」 계획(안) 수립(2000. 5)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 정부 19개 부처 179개 연구개발사업 중 “A” 등급으로 확정(2000.7)
- 2001년도 예산 500억원 확보(2000.12)

□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 환경기술개발 통합계획의 수립·추진체계 정비(2000.2.3)

- 환경부에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가 동 계획에 따라 소관분야의 개발계획을 수립·추진
- 동 계획의 심의 조정기구로 「환경기술심의위원회」 설치·운영(2001.1.11)

□ 우수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 환경 신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환경기술을 국가가 검증하는 「환경기술 평가제도」 법제화(2000.2.3)

- 서류심사에 의한 「환경신기술 지정」 과 실증시험을 거쳐 인증하는 「환경기술 검증」 제도 시행(2000.8)

- 환경부훈령 제446호 「공공시설의환경기술적용을위한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공공환경기초시설 입찰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2000. 9)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의 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구축에 의한 정보서비스실시(2000. 4)
- 환경시장, 환경인력정보 등 총12만건의 정보 제공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운영

- 울산·여수('98)에 이어 2000년도에 강원, 경기(3개소), 대구, 인천 등 8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10개소 운영

【 문제점 】

□ 하수처리장 등 공공환경기초시설 발주시 기술공모나 턴키방식에 의한 입찰보다 일반경쟁입찰을 선호하고 있어 신기술보급촉진에 애로

- 환경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그 기술에 대한 현장활용 실태 파악 등 사후관리 미흡
- 성공불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지침 등 제도적 장치 미비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재정자립 미비 및 예산확보의 애로

- 연구개발사업이외의 별도의 수익 사업 없음
- 국고 예산편성시 지역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지역센터 확대지정 및 장기적 예산지원 불투명

3. 실천계획

□ 「차세대핵심기술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사업추진계획확정 및 운영지침 제정(2001.1)

- 사업공고 및 사업팀 선정(2001.2~4)
-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2001.5~계속)

-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 추진
 - 개발계획 수립 추진방안 마련(2001.1)
 -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부처별 자료 요청 및 취합(2001.2~3)
 - 개발계획(안)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2001.4~6)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확정(2001.7)
 - 관계부처 통보 및 시행(2001.9)

- 환경신기술 보급 촉진
 - 환경신기술 보급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홍보강화
 -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대한 신기술적용 실태파악 및 종합분석(2001.1~4)
 - 환경기술 평가업체 현장활용 실태조사(2001.6~9)
 -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실시(2001. 10)
 - 성공불제 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 예산편성 방법, 대상신기술의 범위, 대상사업, 대상사업 선정방법 등 지침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2001.1~5)
 - 대상사업 선정 및 시범사업 추진(2001.6 ~ 12)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정·운영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환경현안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 실시(2001.1)
 -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생산공정 및 방지시설 개선에 관한 기술진단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환경홈닥터제」 시행(2001.6)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개발	1,000,000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50,000
환경신기술 개발· 보급 촉진	54,000	4,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지역환경기술개발 센터	34,500	2,500	5,000	8,000	7,000	7,000	5,000

단위사업명	5-1-2 환경산업의 육성		
작성기관	환경부(환경경제과)	협조기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환경산업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3년 까지 발전기반을 구축
 - 환경부는 반기별로 소관부처별 『환경산업 발전전략』 추진상황을 종합, 「환경산업육성기획단」에서 점검·평가
- 『환경산업 발전전략』 추진성과 평가를 토대로 향후 환경산업 활성화 계획(2004~2010) 수립

2. 현황 및 문제점

- 전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산업(ET)이 정보통신(IT)·바이오산업(BT)과 함께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부상
 -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90년대 들어 수출전략산업으로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박차
- 우리나라도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WIN-WIN 전략으로 환경산업을 적극 발전시킬 필요
 - 아직은 국내 환경산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환경기술개발 수준 미흡하나, 환경시장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성장잠재력은 매우 큰 산업

3. 실천계획

- 2001~2003년 동안 소관부처별로 5개 중점분야 54개 환경산업 발전시책 추진
 - 유망 환경산업체 발굴 및 중점 발전
 - 환경벤처기업 투자조합 설립 및 전용기금(Fund) 조성
 - 환경시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건설 전문업종 신설, 입찰시 가점부여 등 입찰제도 개선 등
 - 21세기 환경수요에 부응한 환경기술 개발·보급 촉진
 -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Eco-Technopia 21)」 추진
 - 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우수 환경신기술 정부인증제 및 환경개선 산업화자금 지원 확대, 환경신기술에 대한 성공불제 확대 추진 등
 - 국내 환경시장 수요 창출
 - 환경관리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5~10년 단위로 예고
 -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 환경친화적 생산·건축·소비문화 확산 유도
 - 환경산업 발전기반 조성
 - 환경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컨설팅업 제도화
 - 환경관리의 정보화 촉진과 환경산업 기초통계 체계화 등
 -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 확대
 - 한·중·일 국제 환경산업라운드테이블 개최(매년)
 - 중국 북경에 「한국환경산업·기술 상설전시관」 설치·운영
 - 민·관 공동 「환경산업수출협력단」 운영 등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환경산업 수출 기반 구축	4,550	550	600	700	800	900	1,000

5-2 과학기술의 환경위해성 관리

단위사업명	5-2-1-① 신기술개발에 따른 환경위해성 평가체계 구축(신규 화학물질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환경위해성 관리)		
작성기관	환경부(화학물질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신규로 개발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사전평가하는 방안 강구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강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해성심사 발전계획을 수립, 사용량 및 용도에 따른 심사수준의 차별화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마련
- “내분비계장애물질”등에 대한 환경위해성평가체계 마련
 - 내분비계장애물질 중·장기연구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분비계장애물질 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체계 마련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의 사전평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이후 매년 200여종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
 - 기본적으로 제출되는 유해성관련 자료가 급성독성, 유전독성 및 분해성 등 3항목
-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련 현황
 - DDT, PCB, 비스페놀 A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한다는 우려에 대하여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위해성 등 관리대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99.7 내분비계장애물질 중·장기(10개년) 연구사업계획을 수립

【 문제점 】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심사가 독성검색 수준으로 평가에 한계
 - 사용량 및 용도가 상이한 경우에도 제출자료와 심사방법이 동일한
- 신규화학물질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제도운영에 장애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위해성 규명에 장기간 소요
 - 아직까지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위해성 규명을 위해 장기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여 조기 규제방안 수립 곤란

3. 실천계획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의 사전평가
 - 사용량, 용도에 따른 심사수준 차별화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위해성심사를 독성검색 중심에서 초기 위해성 평가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구축
- 내분비계장애물질 등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체계 마련
 - 중·장기 연구사업의 수행 및 연구·조사에 대한 국제활동에 동참
 -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검색법이 확립되면 위해성평가기법을 마련하여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기반 마련
 - 위해성이 확인되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4. 투자계획(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0까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기반연구	150.1	31.6	26	18.5	21	19	18	16
오염실태 및 영향조사	430	43	30	80	80	80	71	46
위해성평가 관리	169.6	22	11	11	21	23.1	30	51.5

단위사업명	5-2-1-② 신기술개발에 따른 환경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유전자변형해양생물체 등 안전관리)		
작성기관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협조기관	기획예산처 등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유전자변형해양생물체로부터 국민건강과 해양생태계의 균형확보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 유전자변형해양생물체의 위해성평가 및 심사, 관리, 비상조치 등 개발에서 유통까지 통합관리 방안 마련
 - 관리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및 위해성평가 기술확보
 - 실험실 안전지침, 위해성 평가지침, 취급관리지침 등 위해성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준칙 수립 및 독자적 안전확보기술 개발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관한 바이오안전성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채택(2000. 1)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인간 및 환경에의 위해성방지·관리 필요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현황
 - 국내 : '97년 슈퍼미꾸라지 개발하고 산업화를 위한 연구추진 중
 - 국외 :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여 무지개송어, 연어 등 일부 종에 대하여 성공하였으며, 산업화를 위하여 준비중

【 문제점 】

- 최근 생물산업 선진국(미국, 캐나다 등)의 유전자변형 연어 개발로 해양부문에 있어서도 생물산업의 발전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및 위해성 평가기술 확보 필요

3. 실천계획

- 안전관리 추진체계 정립
 - 위해성 심사기구 및 해양생명공학자문단 구성
 -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운영 등

- 부문별 안전관리 대책
 - 위해성 평가지침 작성
 - 관리단계별 안전관리지침 마련
 - 유전자변형생물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과 위해성 평가기술 확보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유전자변형해양생물체의 안전관리	9,043	43	500	1,000	1,000	2,000	4,500

단위사업명	5-2-2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강화		
작성기관	환경부 (화학물질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성심사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만성독성, 발암성 등 추가)
 - 기존화학물질의 초기위해성평가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배출량 보고제 (TRI) 확대 시행
 -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석유화학, 정제업 등 7개 업종에 우선 적용하고('99년 시행) 단계적으로 확대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단계
 - 국내에서 유통중인 36,000여종의 화학물질 대부분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로 유통
 - 유통량이 많고 안전성 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한 물질중 연간 30여 물질씩 국가예산으로 안전성시험을 하여 유해성을 확인
 - 연간 30여 물질씩 '87부터 2000년까지 444개 물질의 안전성시험 수행
- 환경배출량보고제도(TRI)
 -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보고제도(Toxics Release Inventory)는 유해화학물질이 환경중으로 누출되는 양을 기업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스스로 저감시킴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제도임

- '96년 OECD가입시 동 제도의 도입을 약속, 80여물질 23개업종에 대해 시행중

【 문제점 】

- 안전성시험은 급성독성 등 기초적인 자료의 확인으로 위해성이 잘파악되지 않음
- 환경배출량보고제도(TRI)
 - 종업원 100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사방법 및 조사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있으나 배출량의 3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유통, 가정, 농업 및 중소기업체 등은 조사체계가 수립되지 아니함

3. 실천계획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심사의 확대
 - 독성확인 단계인 기존화학물질 안전성시험을 초기의해성 평가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구축
 - 독성 등 유해성자료 생산책임을 화학물질 생산, 수입자에게 단계적으로 의무부여
- 환경배출량보고제도(TRI) 확대 시행
 - 조사대상사업장을 23개업종 종업원 100인이상에서 50인이상으로 확대
 -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현재 80종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 기반구축을 위한 산정지침 프로그램 개발

단위사업명	5-2-3 환경위해성정보의 유통관리 강화		
작성기관	환경부(화학물질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신중물질에 대한 제조 및 사용량, 환경위해성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위해성 정보가 효율적으로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활용한 위험 교신체계 구축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화학물질 관련업무가 13개법률 6개부처에 분산되어 각법률의 목적에 따라 유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에 「화학물질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됨

【 문제점 】

- 화학물질 유통단계별로 당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아니하여 적정관리가 어려움
- 화학물질은 취급의 특수성으로 사고시 관련 대응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 피해의 확산 등 문제가 많으나 이에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아니함

3. 실천계획

- 환경위해성정보 등 D/B 구축
 - 화학물질정보센터의 활성화
 - 산업계의 유통단계별 유해성 정보제공의 의무화
 -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및 정보전달 방법 등을 법제화
- 위해성정보 등 위험교신체계 구축
 - 사고대비 관리대상물질선정, D/B화 및 자료의 제공
 - 사업자 등에 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의무를 부여

6. 지구환경보전에 적극 참여

6-1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단위사업명	6-1-1- ①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국제환경협약 등에 능동적 대처)		
작성기관	환경부(지구환경담당관실) 외교통상부(환경협력과)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	협조기관	산업자원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환경외교 강화 및 국내 이행체계 마련
-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환경 연계 동향 및 선진국의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환경규제 압력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체계 강화
-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참여, 에너지 절약 등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 수립·추진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97.11, 일본 교토)에서 선진국들은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교토의정서 채택)하고, 세부 운영방안이 2001년 속개되는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예정임
 - Annex-I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2012년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해당되고, OECD 국가
여서 미국, EU 등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를 요청받음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에너
지 소비증가율도 '90~'99년간 연 8.6%로서 주요 OECD 국가
평균 1.6%에 비하여 매우 높음
 - ※ 온실가스배출량은 '97년 세계 9위(IMF시기인 '98년 세계 11위)를 차지
- '95.1월 WTO 체제가 출범한 후, '98.5월 제2차 WTO 각료회
의('98.5, 제네바)에서는 UR에서 다루지 않았던 분야(투자, 경쟁정
책, 무역원활화 등)을 포괄하는 뉴라운드를 시작하기로 결정
 - '99.11,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차기 무
역자유화 협상의 범위, 방식, 일정 등을 논의하였으나 이해당
사국간의 입장차이로 합의 실패
 - 뉴라운드 협상출범과는 별도로 2000.1부터 개시된 서비스협상
과 관련, 환경서비스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환경마크제 등
무역 관련 조치가 다양해질 전망

【 문제점 】

-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하여 '98.4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
여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범정부대책기구」
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산업계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
비전 및 대응전략 등 종합 대응능력 및 부처간 업무 조정능력이
미흡
 - 범정부 대책기구 외에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회 “기
후변화협약 특별위원회”에서도 기후변화협약 관련업무 담당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법령(지
구온난화방지대책법(가칭)) 제정이 주관부처 및 제정시기 등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고, 지구온난화 대응대책의 점검 및
평가, 능력형성, 기후변화 조사 등 대응능력 미흡

- 환경-무역 연계논의와 관련, 관련 실·국, 민간 및 업계 등의 관심 및 이해 노력 부족
 -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 미흡하며 연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예산 반영 미비

3. 실천계획

- 체계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수립, 추진
 - 국회내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공조 하여 기후변화협약 대응 관련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
 - 현행 범정부대책기구의 기능 및 역할 재점검, 환경부내 「기후변화협약 대책팀」 구성·운영
 - 「지구온난화방지 종합계획」 수립 및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변화 조사 등을 위한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의 제정 추진
 -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 요구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
 - 2001년에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안에 대한 국제회의 주최(외교통상부 주관, 9월초 서울 개최예정)
 - 우리에게 적합한 참여방안 모색 및 국제사회에 대한 개도국 참여문제에 대한 건설적 기여의지 표명
 - 국내 온실가스 저감방안,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 및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의 지속적 추진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국민운동 전개, 국민·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신속한 정보 전파 등
-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능동적 이행
 - 생물다양성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습지보전협약(람사협약) 등의 국내 이행대책 마련

□ 환경-무역 연계 논의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 WTO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의 효과적 대응

- 환경부 관련 실·국, 연구기관, 학계, 환경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환경서비스협상대책반' 구성, 운영

○ WTO 뉴라운드협상 출범에 대비한 사전준비 철저

- 제4차 WTO 각료회의(2001.11) 환경분야 대책 수립 및 학계, 산업계, NGO 등이 참여하는 '환경-무역 연계 대책협의회' 운영 활성화

○ 환경-무역 연계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홍보사업 추진

- 환경 관련 다자간 무역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의 체계적 수행
- 국가별 환경규제 현황 및 유망시장 동향 책자 발간 등 홍보사업 추진

□ 2010년까지 해양에너지 870천kw 개발

- 조력(2000~2010), 조류(2000~2010), 파력 및 해양온도차 에너지(2000~2006) 개발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수립(환경부)	21,500	500	1,000	1,500	1,500	2,000	15,000	
환경·무역 연계대책 조사연구사업(환경부)	447	47	100	100	100	100		
해양에너지 개발 (해양수산부)	997,000	500	1,500	11,000	11,000	11,000	992,000	

단위사업명	6-1-1-②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APEC 해양 환경훈련교육센터 설립)		
작성기관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협조기관	외교통상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APEC 해양환경훈련·교육센터(AMETEC) 설립 및 국내유치를 통한 국가간·지역간 공조체제 확립
 - APEC 역내 효율적인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회원국의 인적 자원의 능력배양 도모
 - 국제기구의 국내유치를 통한 해양행정의 국제화, 21C 해양환경 선진 국가로서 아국의 위상 제고

※ AMETEC : APEC Marine Environmental Training & Education Center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APEC 해양환경훈련교육센터 설립
 - 제9차 APEC 해양자원보전(MRC) 회의('96, 태국) 및 APEC Ocean Conference('98, 하와이)에서 AMETEC 설립 제안
 - ※ APEC MR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Marine Resource Conservation
 - 제12차 APEC MRC 회의('99, 호주)에서 2000년 APEC 협력사업 제안 및 승인(APEC 기금 \$40,000 지원)
 - 제13차 APEC MRC 회의(2000, 페루)에서 2001년 APEC 협력사업(AMETEC 설립) 제안 및 승인(APEC 기금 \$50,000 확보)

【 문제점 】

- AMETEC 설립 및 유치 추진을 위한 아국 분담분 예산확보가 미흡
 - 2000년도 APEC 협력사업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한국국제협력단의 협조로 정상 추진
 - 향후 연차별 지속적인 사업예산 확보가 시급

3. 실천계획

- AMETEC 설립에 관한 Task Force 구성·운영을 통한 국내유치 실무작업 진행
 - 2001년 APEC 지원사업으로 실시

- AMETEC 설립 정상운영 전까지 사전 시범교육사업 지속적 실시
 -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생 초청사업과 연계 추진
 - 해양오염 분석을 위한 선상훈련 등 실험실습 및 강의

- AMETEC 설립 및 정상운영
 - 국제기구의 국내유치에 따른 아국 분담분 국내예산 확보
 - APEC MRC 회의에서 동 센터 설립 및 국내유치 승인 확보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AMETEC 설립 및 운영	10,000	60	500	1,000	2,000	2,000	4,440	

단위사업명	6-1-2 국제환경동향에 대한 정보망 구축		
작성기관	환경부(해외협력담당관실)	협조기관	외교통상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급변하는 국제 환경이슈에 대한 신속한 국내 전파와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OECD, UNEP 등의 국제기구와 동북아 및 주요국가의 환경정책과 기술개발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정보 수집·관리체계를 구축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현재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에 대한 환경정보 수집은 주로 국제기구에 파견된 파견관과 해외공관에서 보내주는 정보 정도임
 - OECD 사무국 및 대표부에 2인, UNEP 사무국 및 기술·산업경제국에 2인, UN 대표부에 1인, 케냐대사관 1인, 아시아·유럽환경기술센터(AEETC) 1인, 총 7명이 파견중

【 문제점 】

- 지구온난화, 환경·무역연계 등 지구적이고 국제적 차원의 환경 이슈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에 해외환경관의 파견이 시급하나
 - 우리나라의 해외환경관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숫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타부처와 비교시 활동수준 미흡
- 또한 현재 해외파견관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도 미흡한 실정

3. 실천계획

□ 해외 파견관의 확대 방안 검토

- 우선, 환경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미국, 중국과 주요 현안 협력 사업이 있는 World Bank, EU 등 국제기구에 전문 환경관의 파견 추진

□ 해외 근무자에 대한 활동강화 방안 마련

- 국제기구등에 근무중인 해외파견관에 대하여 국제적인 환경 이슈와 동향정보를 파악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토록 의무화
 - 또한 장기 유학중인 해외교육자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교육국가의 환경정책 등에 대한 자료를 보고토록 함
- 해외파견관에 대한 환경외교관이라는 인식 정책간담회 개최
- 환경정책에 대한 상호이해 제고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중·일 환경정보 네트워크 구축(www.temm.org)

6-2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단위사업명	6-2-1-① 동북아 등 역내 환경협력 증진(동북아 환경외교 강화)		
작성기관	환경부(지구환경담당관실) 외교통상부(환경협력과)	협조기관	해양수산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활성화하고, 산성비·황사·해양오염 등 월경성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공동조사 및 정보교류 등 환경협력 증진
- 동남아 국가와 환경협력협정 체결 등 국가간 환경협력기반을 조성하고, 환경산업 및 기술분야의 협력증진방안 마련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활성화 및 환경협력 증진
 - 제2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참가(2000.2, 북경)
 - 한·중·일 환경정보 네트워크 구축, 환경산업라운드테이블 공동개최 등 9개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
 - 비공식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개최(2000.9, 일본)
 - TEMM 프로젝트 추진일정 등 합의
- 동남아 국가와의 환경협력 추진
 - 제1차 한·베 환경협력 고위급 회의 개최(2000.5, 서울)
 - 환경기술 및 산업분야에서의 협력, 양해각서의 체결 등을 위한 각료급회의 개최 등 협력방안 논의

- 제1차 한·베 환경장관회의 개최(2000.8, 하노이)
 - 한·베 환경장관회의 및 한·베 환경협력약정 체결
 - 한·베 환경산업·기술협력 세미나 개최

【 문제점 】

- 다양한 환경협력체간에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조정 기능 부재
- 동남아 국가와의 초기 환경협력 단계에서 활발한 환경협력을 위한 예산 확보 미흡

3. 실천계획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활성화 및 환경협력 증진
 - 제2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합의사업 추진
 - 환경산업·기술 교류를 통한 지역 협력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제1차 한·중·일 환경산업라운드테이블 개최(2001.6월, 서울)
 - 황사저감을 위한 중국 서부 생태환경복원 시범사업 착수
 - 공동 홈페이지(www.temm.org) 운영을 통해 정보교류체제 구축
 - 제3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참가(2001 상반기, 일본)
 -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기본방향 및 협력원칙 설정, 협력사업 추진현황 검토, 한·중·일 정상회의 후속조치 추진방안 및 신규사업 발굴 등
 - 3차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 참가(2001.1, 일본)
 -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조사사업 추진
 - 한·중·일 3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조사사업 추진
 - 측정, 모델링 분야 2단계 사업추진(2000.9~2002.8월)

- 공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측정 및 비교분석, 모델링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등
-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 구축사업 추진
- 동북아 환경협력채널을 활용한 협력의 추진
 - 제10차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개최(2001.10, 인천)
- 동남아 국가와의 환경협력 추진
 - 한·말레이시아 환경장관회의 개최(2001년 상반기, 말레이시아)
 - 상반기중 한·말련 환경장관회의를 개최, 환경협력약정 체결 추진
 - 장관회의시 환경산업체 대표들과 함께 방문, 환경산업·기술협력 세미나 개최
 - ⇒ 베트남과 함께 대개도국 환경산업진출 교두보로 활용
 - 한·베 환경장관회의 후속조치 추진
 - 제1차 한·베 환경장관회의(2000.8)시 합의한 인적교류, 하이퐁시 생태도시사업 등 한·베 환경장관회의 후속조치 추진
 - 한·베 환경협력 실무회의 개최(2001년 상반기, 베트남) 후속사업 추진 일정 및 협력방안 마련
 - 동남아 환경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등 교류사업 확대 추진
 - 한·아세안 특별협력사업(동남아 열대지역 산림생태계 복원사업, 2001.6~2005.6, 총 245만불)을 활용, 동남아 환경공무원 정책 연수 프로그램 확대 추진(5년간 총 23만불, 2001 10만불)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중·일 환경협력	2,800	700	900	1,200	-	-	-	

단위사업명	6-2-1-② 동북아 등 역내 환경협력 증진(동북아 해양환경 협력 증진)		
작성기관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협조기관	외교통상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북서태평양 인접국가간 협력증진
 - 북서태평양 해역 인접국가간 협력강화를 통한 이 지역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도모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 Nowthwest Pacific Action Plan)
 - 목 적 : 북서태평양의 보전을 위한 연안국가간의 협력
 - 사업기간 : 1995년부터 계속
 - 참여국가 :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 한·중 협력사업

협력사업명	목적 및 내용	사업기간	추진기관
한·중 황해환경 공동조사	황해오염현상의 공동연구를 통한 한·중간 해양환경 협력기반 구축	1997.~	국립수산진흥원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황해퇴적물 이동 현상연구	퇴적물의 기원, 이동, 퇴적 및 오염현상 파악	1998.~ 2010.	해양연구소 (중국 국가해양국)
해양(황해) 오염 저감대책 연구	황해 연안오염의 현황파악 및 해양 환경평가 기술개발	1999.~ 2004.	해양연구소 (중국 국가해양국)
황해 광역 해양 생태계 연구	황해 생태계 및 수산자원 현황조사 분석으로 생태계 균형유지방안 모색	2001.~ 2005.	-

- 두만강 지역 환경보전 관련 전략행동 계획(UNDP) 사업
 - 추진내용 : 지구환경금융(GEF)에 지역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두만강지역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사업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00 ~ 2002년
 - 참여국가 :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고

【 문제점 】

-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 사무국 유치 확정지연
 - 중국 등 기타 회원국과의 사전 협력미비로 사무국 유치 확정이 2001.2월로 지연
- 제4차 황해환경공동조사 지연
 - 중국 연구자에 대한 여권발급 지연 등으로 올해 추진할 계획이었던 제4차 황해환경공동조사 지연

3. 실천계획

-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
 - 해양오염방제센터 등 4개 국가별 지역활동센터 운영 및 공동사업 집행(계속)
 - NOWPAP 사무국 유치 계속 추진
- 제4, 5차 황해환경 공동조사 : 2001 상반기, 하반기 추진
-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연구(황해 현장조사) : 2001. 6 ~ 2001.7
- 해양(황해)오염저감 대책 연구 : 2001.5
- 두만강지역 환경보전 관련 전략행동계획사업 관계자 회의 : 2001 상반기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합 계	37,058	8,568	9,650	6,050	6,090	4,550	2,150
NOWPAP (아국출연사업비)	6,720 (560만\$)	720 (60만\$)	1,200 (100만\$)	1,200 (100만\$)	1,200 (100만\$)	1,200 (100만\$)	1,200 (100만\$)
황해환경공동조사	1,168	168	200	200	200	200	200
황해퇴적물이동 현상연구	4,070	320	750	750	750	750	750
해양(황해)오염 저감대책연구	1,100	160	300	300	340	-	-
황해 광역 해양 생태계 연구	16,800 (1,400만\$)	3,600 (300만\$)	3,600 (300만\$)	3,600 (300만\$)	3,600 (300만\$)	2,400 (200만\$)	-
두만강 환경보전관련 전략행동계획사업	7,200 (600만\$)	3,600 (300만\$)	3,600 (300만\$)	-	-	-	-

※ NOWPAP 관련 아국출연금 사업비는 GEF지원 등 향후 사업계획 추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두만강 사업 총사업비 : 7,207,800 \$ (1\$ ≙ 1,200원)

※ 황해광역 해양생태계 연구 : 1,400만 \$

단위사업명	6-2-2 남북한 환경협력 강화		
작성기관	환경부(정책총괄과), 통일부	협조기관	외교통상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균형잡힌 한반도 환경보전과 통일비용 절감
 - 환경인프라 구축 등 북한에 대한 환경관련 지원과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한반도 생태통합의 기반 마련

2. 현황 및 문제점

- 북한은 경제침체와 환경악화가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으므로 개발위주의 경제사업 추진은 자칫 북한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장애
 - ※ 환경분야의 통일비용은 전체비용의 10% 선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통독후 동독 환경개선에 막대한 비용 투입
- 환경협력은 비정치적 분야로써 양측의 ‘positive sum’ 창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간의 직접적인 협력은 물론 생태계 학술조사,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협력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3. 실천계획

-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환경친화성 확보 추진
 - 구체적인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개별적 접근

- 각 사업의 입지 단계에서 사업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중점영향 평가 개념을 활용하여 환경성 검토 시행
-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사업에 대하여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검토 절차와 방법 적용

□ 남북환경협력사업 추진

- 국제기구 등 다자간 협력체제를 통한 남북한 협력 추구 및 비무장 지대, 백두대간 생태계 공동 조사등 학술차원의 협력에서부터 단계적 추진
 - 우선적으로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접경지역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남북환경협력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가는 노력 경주
 - 동북아내 다자간 환경협력체를 통한 남북한 협력 추구 및 GEF 사업에 북한의 참여 촉구
 - NEASPEC 제7차 회의 : 2001.5/6월 중국
 - NOWPAP 제7차 정부간 회의 : 2001.11/12월, 러시아
 - “두만강보전 환경전략계획 수립사업”과 “황해광역생태계 조사사업”에 북한의 참여 촉구
-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따라 남북 당국간의 직접적인 환경협력 추진

7. 녹색정부체계 구현

7-1 국가환경정책 운영체계의 혁신

단위사업명	7-1-1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작성기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대통령 자문기구 정부, 산업계, 시민·환경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 개발과 환경보전 관련 정책의 사전조율 및 국제환경규제에 전략적으로 대응
 - ※ 기대효과 :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정책을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정책시행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대응방안에 활용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6946호, 2000.8.5)에 의거하여 2000.9.20 공식 출범
 -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12개 부처의 장관 등 13명 당연직위원과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등 각계인사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 2000.9.26일 제1차 정기회의 의결에 따라 6개 분과위원회 설치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위원과 실무위원(학계·산업계·시민단체 전문가 및 관계부처 국장) 15명 이내로 분과위원 위촉, 구성
 - ※ 6개 분과위원회 : 국토보전, 수자원, 생태·보건, 에너지대책, 산업과환경, 국제·지역협력 등

【 문제점 】

- 없음

3. 실천계획

- 위원회의 중심적 과제로 국정분야별 정책수립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2002년까지 수립
- 2001년도 당면과제로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정부 주요 정책 및 제도를 중점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6개 분과 16개 과제)
 -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이용체계 개편방향, 지속가능한 수도권 택지보급방안 등을 중점 검토,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이용 및 개발을 도모
 - 이수, 치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물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을 우선과제로 검토
 - 비무장지대의 보전방안, 유해물질 저감대책, 유전자 조작식품 관리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여 각종 개발로부터 생태계의 균형과 미래세대의 필요, 생명안전을 보장
 -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화방안, 에너지수급정책 등 지속가능한 국가 에너지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자원보전, 탄산가스 감축, 에너지정의에 기여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한 검토, 기업환경회계제도의 도입방안 등을 집중 검토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내외적 흐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제21 이행상황을 종합점검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을 마련
- 정부정책 수행과정에서 여론화되는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토의를 거쳐 긴급과제로 선정하여 검토 추진

단위사업명	7-1-2 녹색 국민총생산 및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작성기관	환경부(환경경제과, 지구환경과)	협조기관	환경부
사업기간	2000~2010	사업구분	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경제와 환경정책의 조화정도를 검증할 수 있는 통합지표로 활용할 「국민환경계정」의 국내 도입·적용방안 강구
- 국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
 -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2002년 세계지속개발정상 회의(Rio+10) 대비, 92년 이후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 평가에 활용
 - 지속가능발전 지수(Index) 작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1993년 UN통계국(UNSD)이 환경요인을 국민계정에 반영하는 통합 환경경제계정체계(SEEA)를 각 국에 권고
 - 최근 캐나다, 프랑스 등 10여개 국가에서 본 계정 도입을 위한 폭넓은 연구와 시범적용중
 - 우리나라의 경우 '95년부터 한국은행에서 환경계정 작성의 기초단계인 환경오염방지지출(PCA) 통계를 추계하는데 그치고 있음
 - '95년 한국환경기술개발원에서 통합환경경제계정을 이용, Green GDP 작성 시도

- 2000년 하반기중 OECD 지속가능지표를 바탕으로 UNCSD, 미국 및 영국 등의 지표들중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지표항목을 선별, 지속가능지표 개발(20개 범주 162개 세부지표, 15개 범주, 43개 핵심지표)
 - 현재 한국적 실정에 맞는 구체적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수행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0.8~2001.8)

【 문제점 】

- 아직까지도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의 개념 및 매뉴얼 등이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 '99년 UN통계국에서 SEEA의 매뉴얼을 작성, 현재 런던그룹과 공동으로 수정작업 진행중
 - 본 계정작성을 위하여는 우선 모든 경제활동중 환경보전활동을 식별하여 지출계정을 작성하고, 산업별 오염물질 배출량 및 저감 비용 통계, 자연자원 시산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들 과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기술적 어려움을 안고 있음
- OECD 지속가능지표의 경우 총 33개 지표 199개 세부지표를 권고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 수준에 맞게 지표항목을 늘려 나가고 금번에 개발된 지표의 질적·양적 수준도 보완해 나갈 필요

3. 실천계획

- 통합환경경제계정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 계속 및 단계적 도입방안 강구
 - 환경과 자연자원의 기초통계자료 확보(관계부처별 역할분담 및 협조)
 - 오염물질배출에 따른 물적 환경투입·산출표 작성 및 자연자원계정 시산
 - 녹색국민총생산 시범계정 작성, 본격 도입여부 검토 및 제도화

□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활용

- 2001. 8월까지 한국적 실정에 맞는 지표 개발
- Rio+10 대비, 92년 리우회의 이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 평가(2001년중)
- 지속가능발전지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지수 개발 추진(2003년) 등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녹색국민총생산	2,000	100	100	200	200	400	1,000
지속가능지표 개발	600	-	-	100	-	-	500

7-2 환경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추진

단위사업명	7-2-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능력 강화		
작성기관	환경부(정책총괄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자치단체의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실시
 - 자치단체의 환경관리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지방의제21 추진을 통한 지역환경능력 제고
 - 전국대회,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지방의제21 추진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관리 유도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중앙부처별로 각각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업무를 통합·운영 하기로 확정(국무조정실, 2000.2월)
 - 2000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지침」에 의거, 중앙부처 합동(10개 부처)으로 자치단체 종합평가를 처음 실시
 - 환경관리 분야는 4개 분야 주요시책 26개 지표에 대한 평가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총48억원 교부(최우수지자체 2억, 우수지자체 1억)
- 환경친화적인 지역관리를 위한 지방의제21 추진
 - 지역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방의제21 수립·실천 확대 및 추진기구간 정보교류를 위한 전국협의회를 구성·운영중

【 문제점 】

- 환경분야 평가항목수가 적어 복지분야와 통합실시로 환경친화적인 지역관리 유도에는 다소 미흡
 - 환경분야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의 확대 필요
- 수립된 지방의제21의 내용이 형식적이며 선언적이고 실천 미흡
 - 지방의제21 실천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

3. 실천계획

- 평가지표의 확대를 통한 환경분야 평가 독립
 - 기존의 4개 시책(환경관리 역량, 대기, 수질, 폐기물관리 분야)에 대한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고 평가분야 세분화 및 평가지표의 추가 발굴
 - ⇒ 환경분야 평가가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
-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환경예산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뿐만 아니라 우리부에서 지자체에 보조해 주는 국고보조금 및 양여금 우선지원
- 지방의제21 수립확대 및 내실화
 - 지방의제21 수립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워크숍, 전국대회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의제추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
 - 우수 사례를 발굴·보급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표창실시를 통하여 실천 분위기 확산
 - 의제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을 개발·평가를 통하여 지방의제21 추진의 내실화 유도

단위사업명	7-2-2 지방 환경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작성기관	환경부(정책총괄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주민참여 및 민자유치를 통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자유치를 통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국민들에게 환경오염 현황 등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여론조사 실시 등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중
 -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역내 환경상태 등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민원 및 인터넷 여론조사 실시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반영을 위한 노력중이나 아직 미흡
 -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의제21 실천사업으로 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 운영중

3. 실천계획

- 환경행정의 에코-디지털화로 국민참여 확대
 -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원 시스템의 확립, 여론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확립
 - 수질·대기 오염도 정보의 실시간 제공 등 환경정보시스템 및 학생·주부 등 수요자 계층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이버 환경교실 개설

- 지방의제21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증진
 - 지역구성원들이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하는 지방의제21 추진 내실화를 통하여 지방행정과정에 주민 참여를 증진
 - 의제 추진현황에 대한 종합평가 등의 경우에 지역주민의 지방행정 참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

단위사업명	7-2-3 계획적 지역환경관리와 환경감사제 활용		
작성기관	환경부(정책총괄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쾌적한 환경조성계획 수립 및 지역환경관리 이행사항의 주기적 평가
 -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의제21 수립 및 추진지원
 - 환경감사제도의 확립을 통한 지역환경관리 이행사항의 주기적 평가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 쾌적한 지역환경조성을 위해 지방의제21을 수립·시행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의 추진 미흡
 - 2001.1월 현재 248개 자치단체중 193개 지자체에서 추진중
 - 수립된 지방의제21의 대부분이 선언적인 행동지침 수준이며 실천사업의 주체인 주민 등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발굴·추진 필요
- 지역 환경관리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점검체계 구축 필요
 - 자치단체의 환경감사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자체에 보급하였으나 지자체에서는 또 다른 업무로 인식하여 실시 기피

3. 실천계획

- 쾌적한 지역환경관리를 위한 지방의제21의 활성화 추진
 - 워크샵, 전국대회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지방의제21 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의제21 수립 확대를 적극 지원

-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실천 분위기 확산
 - 의제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을 개발·평가를 통하여 지방의제21 추진의 내실화 유도
- 환경감사제도 확립을 통한 환경관리 이행사항의 주기적인 평가
- 지역환경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전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 실시 유도
 - 지역 환경관리 이행사항의 주기적인 평가지원을 위해 환경감사제도 등을 자치단체 종합평가지 평가항목으로 반영

단위사업명	7-2-4 지역환경분쟁의 사전예방 및 해결체제 강화		
작성기관	환경부(정책총괄과)	협조기관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구분	예산/비예산

1. 실천계획의 목표

-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지자체 상호 협력체제 강화
 - 환경기초시설 입지를 둘러싼 지역환경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 환경기초시설 공동설치 및 교환사용 등 환경정책시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간 협력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 지방화와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 및 분쟁 심화
 - 넘비현상, 상·하류 지역간 물이용문제 등 지역간 갈등 첨예화
 - 2001.1월 현재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관련 넘비 발생현황 조사결과 79건이며 폐기물분야가 전체의 68%를 차지함

3. 실천계획

- 지역환경분쟁 최소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의 적극 활용 및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 환경기초시설 입지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입지를 결정하고 유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
 - 지자체간 분쟁발생시 적극 개입하여 최단기간 내에 합리적인 해결 유도

- 자치단체간 환경기초시설 공동설치 및 상호교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넘비 해결 우수사례를 발굴·포상 실시
- 환경기초시설의 공동설치 및 상호교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넘비 해
 결 우수사례를 발굴·포상 실시
 -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지 넘비 해결능력(사례)을 평가항목으로 반영

※ 붙임 : 관계부처별 중점 추진과제(안)

관계부처별 세부 실행과제

부 문	중 점 실 천 과 제	관 계 부 처
(부문 1) 환경윤리 정착 및 환경교육 강화	1-1 환경윤리 정착 1-1-1 자연·생명존중의 환경윤리 정착 1-1-1-① 야생 동식물 보호 1-1-1-② 산림생태계 보전 1-1-2 환경정의의 구현	환경부 산림청 환경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1-2 시민 참여에 의한 환경공동체 구축 1-2-1 환경행정의 투명성 제고 1-2-2 시민참여의 환경운동 활성화 1-2-2-①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활성화 1-2-2-② 해양정화운동 활성화 1-2-3 민간단체의 환경운동 지원 1-2-3-①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 1-2-3-② 해양환경보전운동	환경부, 행정자치부(지자체) 환경부, 행정자치부(지자체)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지자체) 환경부 해양수산부
	1-3 평생 환경교육제도의 확립 1-3-1 학교 환경교육의 내실화 1-3-1-① 학교 환경교육체계 구축 1-3-1-② 환경연수 및 시범학교 운영 활성화 1-3-2 사회 환경교육의 확대 1-3-2-① 현장체험 환경교육 활성화 1-3-2-② 시민참여 해양보전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환경부, 교육인적자원부 해양수산부, 교육인적자원부
(부문 2) 경제·산업 의 녹색화	2-1 산업활동의 환경친화성 제고 2-1-1 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체계 정착·발전 2-1-1-① 환경회계 및 환경성적표지제도 도입 2-1-1-② ISO 14001시리즈 확산 2-1-2 산업계 자율환경관리 확대 2-1-3 환경친화적 영농체계 구축	환경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농림부, 행정자치부(지자체)
	2-2 환경친화적 가격 및 조세체계 구축 2-2-1 환경친화적 자원 가격체계 구축 2-2-1-① 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 평가 2-2-1-② 에너지 가격 적정화 2-2-2 환경친화적 조세제도 도입 및 오염 유발형 보조금 폐지	환경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 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부 문	중 점 실 천 과 제	관 계 부 처
(부문 3) 환경친화적 · 계획적인 국토관리	3-3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현 3-3-1 접경지역 환경보전대책 3-3-1-① 접경지역 자연생태계 보전 3-3-1-② 접경지역 산림보전 3-3-2 백두대간 복원·관리대책 3-3-2-① 자연생태계 복원·관리 3-3-2-② 산림 복원·관리	환경부, 통일부 산림청, 통일부 환경부, 통일부 산림청, 통일부
	3-4 연안역 환경관리체계 강화 3-4-1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관리 3-4-2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수립·추진 3-4-3 연안 친수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	해양수산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지자체)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지자체)
	(부문 4) 기초생활 환경개선 기반확립	4-1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4-1-1 전국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의 지속 추진 4-1-2 오염원 관리체계의 확립
4-2 깨끗한 공기질 확보 4-2-1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4-2-2 도시·공단지역의 대기질 중점관리		환경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등 환경부
4-3 폐기물 발생억제를 통한 감량화 4-3-1 생활폐기물 감량화 기반 확립 4-3-2 폐기물 감량·재활용체계 개선		환경부 환경부
4-4 환경 인프라의 정비·확충 4-4-1 환경기초시설의 대대적인 확충 4-4-1-①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의 확충 4-4-1-② 분뇨처리시설의 확충 4-4-1-③ 소각시설 및 위생매립시설의 확충 4-4-1-④ 폐수처리시설의 확충 4-4-2 환경오염 측정망의 정비·내실화 4-4-2-① 대기·소음측정망의 정비 4-4-2-② 토양측정망의 정비 4-4-2-③ 수질측정망의 정비		환경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4-5 환경기준 및 제도의 정비 4-5-1 환경기준 및 제도의 선진화 4-5-2 생활환경 오염행위 지도·단속 효율화		환경부 환경부

부 문	중 점 실 천 과 제	관 계 부 처
(부문 5) 환경과학 기술의 발전	5-1 환경과학기술의 육성 5-1-1 환경분야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5-1-2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5-2 과학기술의 환경위해성 관리 5-2-1 신기술 개발에 따른 환경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 5-2-1-① 신규화학물질 및 내분비계 장애 물질 환경위해성 관리 5-2-1-② 유전자변형해양생물체 등 안전관리 5-2-2 유해 화학물질의 관리 강화 5-2-3 환경위해성 정보의 유통관리 강화	환경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환경부
(부문 6) 지구환경 보전에 적극 참여	6-1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6-1-1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6-1-1-① 국제환경협약 등에 능동적 대처 6-1-1-② APEC 해양환경훈련교육센터 설립 6-1-2 국제 환경동향에 대한 정보망 구축	환경부, 외교통상부, 해양 수산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6-2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6-2-1 동북아 등 역내 환경협력 증진 6-2-1-① 동북아 환경외교 강화 6-2-1-② 동북아 해양환경 협력 증진 6-2-2 남북한 환경협력 강화	환경부,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부문 7) 녹색정부 체계 구현	7-1 국가 환경정책 운영체계의 혁신 7-1-1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7-1-2 녹색 국민총생산 및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환경부, 기획예산처
	7-2 환경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추진 7-2-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능력 강화 7-2-2 지방환경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7-2-3 계획적 지역환경관리와 환경감사제 활용 7-2-4 지역환경분쟁의 사전예방 및 해결체계 강화	환경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행정자치부(지자체) 환경부, 행정자치부(지자체) 환경부